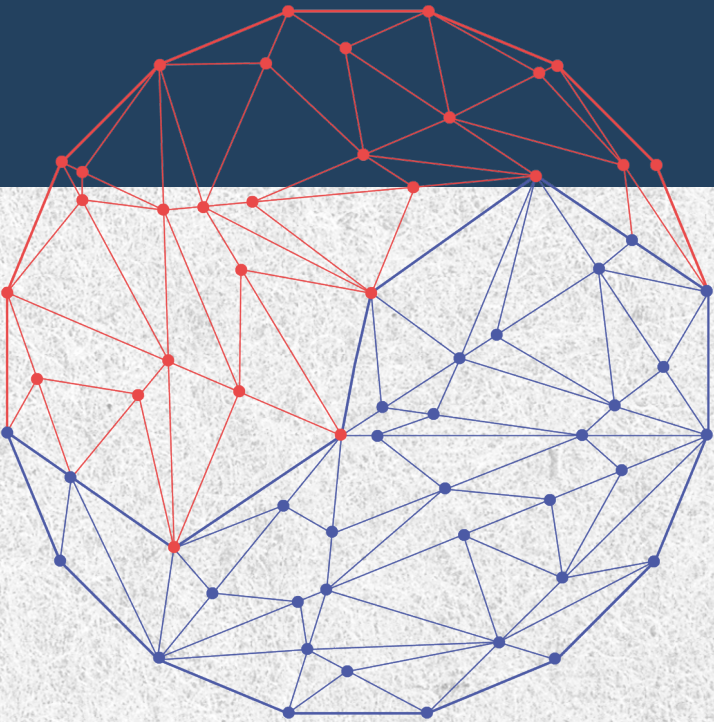


2019 역사학회 학술대회

20세기 초 세계사의 굴절과 3·1운동

일시 : 2019년 8월 23일(금) 10:30 ~ 18:00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3층 2세미나실
주최 : 역사학회
후원 : 한국연구재단 · 서울교육대학교



사단
법인 歷史學會

2019 역사학회 학술대회
20세기 초 세계사의 굴절과 3·1운동

2019. 8

사단
법인 歷史學會

사단
법인 歷史學會

이 발표논문집은 2019년도 정부 자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2019 역사학회 학술대회

20세기 초 세계사의 굴절과 3·1운동

일시 : 2019년 8월 23일(금) 10:30 ~ 18:00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3층 2세미나실

주최 : 역사학회

후원 : 한국연구재단 · 서울교육대학교

모시는 글

역사학회에서는 최근에 들어 매년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아래와 같이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세기 초 세계사의 굴절과 3·1운동”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금번 학술대회에서는 3·1 운동을 20세기 초 전 세계적인 민족 운동의 고양이란 맥락 속에서 고찰하고자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 세계 질서의 재편, 민족 자결 주의를 위시한 새로운 사조의 제창과 확산 등이, 세계 각지의 민족 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에 대한 재조명을 지향합니다. 나아가 이 시기 각국 내지 각 권역의 민족 운동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의 민족 운동사에서 3·1 운동이 차지하는 위상을 규명하려 합니다.

근래 우리나라는 물론이려니와 동아시아 내지 아시아 각국에서 역사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학문의 한 분야를 넘어서 국력의 한 지표가 되었으며, 내부적으로 국민과 여론을 통합하는 중요한 현안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의 3·1 운동 관련 학술대회가 역사학계의 화합과 위상을 과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역사학계 동도 제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8월 23일

역사학회 회장 이근명

학술대회 프로그램

개 회 사

10:30 - 10:40

이근명(역사학회 회장·한국외대)

1부 발표

10:40 - 12:40

사회 : 강선주(경인교대)

【기조발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의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의
민족해방운동**

지수걸(공주대)

제 1차 세계대전 말 유럽의 국제정치와 민족자결주의

노경덕(이화여대)

토론: 이주영(울산과학기술원)

이집트의 1919혁명과 와프드당

송경근(명지대)

토론: 홍미정(단국대)

탈식민 운동으로서의 멕시코 혁명

박구병(아주대)

토론: 김운경(서울대)

휴 식 (점심)

12:40 - 14:00

2부 발표

14:00 - 15:30

사회 : 신유아(인천대)

동아시아 「국민국가 패러다임」 생성·진화의 동시성

전인갑(서강대)

토론: 이병인(교원대)

3·1운동을 전후한 1910년대 식민지조선을 둘러싼 일본의

정치과정 연구

김종식(아주대)

토론: 이형식(고려대)

식민지 자본주의의 전개와 3·1운동

조명근(영남대)

토론: 조형열(연세대)

제8회 역사학회 논문상 시상식

15:30 - 15:50

3부 종합토론

16:00 - 18:00

사회 : 이지원(대림대)

토론 : 이주영(울산과학기술원), 홍미정(단국대), 김윤경(서울대)

이병인(교원대), 이형식(고려대), 조형열(연세대)

목 차

【기조발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의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의 민족해방운동	9
---	---

지수걸(공주대)

제 1차 세계대전 말 유럽의 국제정치와 민족자결주의	31
------------------------------------	----

노경덕(이화여대) / 토론: 이주영(울산과학기술원)

이집트의 1919혁명과 와프드당	47
-------------------------	----

송경근(명지대) / 토론: 홍미정(단국대)

탈식민 운동으로서의 멕시코 혁명	61
-------------------------	----

박구병(아주대) / 토론: 김윤경(서울대)

동아시아 「국민국가 패러다임」 생성·진화의 동시성	75
-----------------------------------	----

전인갑(서강대) / 토론: 이병인(교원대)

3·1운동을 전후한 1910년대 식민지조선을 둘러싼 일본의 정치과정 연구	91
--	----

김종식(아주대) / 토론: 이형식(고려대)

식민지 자본주의의 전개와 3·1운동	109
---------------------------	-----

조명근(영남대) / 토론: 조형열(연세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의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의 민족해방운동

지 수 결 (공주대)

머리말

- I. 첫 번째 고조기 운동과 국제정세
활용론(用外勢論)
- II. 상해임시정부 운동과 '임시정부 정
통론'
- III.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비식민화
현상'과 민족해방운동

맺음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의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의 민족해방운동

지 수 결 (공주대)

머리말

이번 학술대회의 전체 주제가 「20세기 초 세계사의 굴절과 3·1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 난 감했다. 계획서 상의 발제 주제가 전체 주제와 동떨어진 「19세기 민회전통과 3·1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위 글에서 발제자는 E. P. 톰슨 류의 이른바 ‘정치문화론’의 관점에서 3·1운동의 성격과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하고자 했는데, 그 요지는 3·1운동 시기의 민중 동향을 이해하려면 19세기 이른바 ‘민란(民亂)의 시대’, 특히 ‘1894년 사건’을 통해 확산된(내면화된) ‘민회 전통’ 등의 정치문화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3·1운동 100주년을 즈음하여 출간된 한국역사연구회의 『3·1운동 100년(전5권)』, 특히 제3권에 실려 있는 홍종욱의 머리말(「권력과 정치」), 그리고 「3·1운동과 비식민화」¹⁾라는 논문을 읽어본 뒤 생각을 바꾸었다.

30년 전 한국역사연구회와 역사문제연구소는 한겨레신문사와 공동으로 3·1운동 70주년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때의 성과를 모은 것이 『3·1 민족해방운동 연구』(청년사, 1989)이다. 위 책의 「총론」에서 발제자는, ‘3·1운동의 엄정한 가르침’으로서, “민족해방운동에 있어서의 진정한 주체는 노동계급을 핵심으로 한 민중뿐이라는 것”, “민중의 역량은 확고한 조직과 과학적 이론으로서만 발휘된다는 것”, “제국주의와의 전면적 비타협적인 투쟁만이 궁극적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 등을 강조했다.

발제자를 포함하여 위 책의 필자들은 대부분 석사학위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30대 초반의 연구자들이었다.²⁾ 그때 조선과학자동맹이 ‘3·1절 기념투쟁’의 일환으로 편찬한 『조선해방과 3·1운동』(청년사, 1946)³⁾을 윤독을 하면서, “전석담 김한주 같은 이들도 위 책을 집필하기 위해 우리처럼 합숙을 했을 것”이라 말하며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다.⁴⁾ 당시는, 공동 연구(학습)는 물론이고 대중용 글쓰기나 강연도 조직원으로서의 ‘의무’ (?)였다.

1) 홍종욱, 「머리말: 권력과 정치」, 「3·1운동과 비식민화」,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 기획위원회 엮음, 『(3·1운동 100주년 총서) 3·1운동 100년 - 3 권력과 정치』(Humanist, 2019).

2) 필자가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오늘날의 교훈」(11-37쪽)이라는 제목으로 위 책의 총론을 집필했으나 이는 필자의 글이 아니라 공동연구의 결과물이다. 특히 「총론」의 ‘3·1운동의 교훈」(33-36쪽) 부분은 김철의 초고를 필자가 수정 가필한 것이다.

3) 조선과학자동맹은 이 책을 다시 『조선해방사(삼일운동편)』(문우인서관, 1946)라는 이름으로 재판을 발행했다. 당시 조선과학자동맹은 일제하의 민족해방운동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총서’를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과학자동맹은 『과학전선』(청년사, 1946년 2월 창간)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문화독본』(문우인서관, 1946년 7월)이라는 저작을 간행하기도 했다.

4) 한국역사연구회(1988년 창립)의 초기 조직인 망원한국사연구실(1984년 창립)을 조직하면서, 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조선과학자동맹’의 조직 위상이나 역할을 조사하는 작업을 진행시킨 적도 있었다. ‘과학의 운동화’, ‘운동의 과학화’와 관련한 당시의 논의는 김동춘, 「한국사회에서의 지식인의 위상과 학술운동」, 비판사회학회 편, 『경제와 사회』 1(1988) 참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의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의 민족해방운동

「20세기 초 세계사의 굴절과 3·1운동」이라는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볼 때, 『3·1 민족해방운동 연구』는 보잘 것 없는 저작임이 분명하다. 위 책은 3·1운동의 배경으로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세계정세」(41-76쪽)를 다루었는데, 앞서 언급한 조선과학자동맹의 저작처럼(김한주, 「3·1운동 전후의 국제관계」), 레닌의 『제국주의론』(1916)이나 『코민테른 자료집(전6권)』(大月書店, 1978)에 보이는 국제정세 인식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에 불과했다.⁵⁾ 1910년대의 지배정책이나 민중운동을 다룬 4편의 글도 영성하기는 매한가지였다. 당시는 몇몇 대학도서관에 소장된 일제시기 자료나 국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한 각종 자료집 등을 통해, 장님 파발 매듯 듣성듣성 사건의 자초지종을 재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관련 자료나 연구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많아졌다. 특히 올해 2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사편찬위원회가 선보인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는 역사 연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⁶⁾ 정병욱은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와 사료비판」이라는 글에서, “삼일운동 연구는 ‘삼일DB’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 말했는데, 이것이 허언이 아니라는 사실은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의 쇼케이스 행사(「백년만의 귀환: 3·1운동 시위의 기록」)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3년여에 걸쳐 3·1운동 관련 자료에서 추출한 21,407건의 개별정보를 토대로 2,464건의 개별사건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작년에 발표된 신호승의 『20세기 초 국제정세 변동과 한인무장 독립운동』(2018년 연세대학교사학과 박사학위논문)도 연구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호승은 당시의 국제정세를 재구성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발행된 24종의 영문판 신문과 잡지, 180여권의 영문판 저작과 56권의 일문판 저작, 13권의 중문판 저작 등을 두루 활용하여 20세기 초 국제정세 변동과 한인무장 독립운동의 상관성을 규명하였다. 신호승은 위 논문에서, 1910년 강제 합병 전후시기의 국제정세, 제1차 세계대전 직후 파리평화회의(Paris Peace Conference: 1919년 1월~1919년 6월)나 국제연맹 결성 시점(1920년 1월)의 국제정세, 워싱턴회의(Washington Conference: 1921년 11월~1922년 6월) 이후에 형성된 이른바 워싱턴체제 성립시기의 국제정세 등이 한인무장 독립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조 발제를 위해, 「20세기 초 세계사의 굴절과 3·1운동」이라는 전체주제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성과⁷⁾를 두루 검토하면서, 그동안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3·1운동을 이해했다는 반성을 많이 했다. 3·1운동의 배경이나 전개양상, 성격과 의미 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연히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시기의 국제정세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의 국제정세 변화와 3·1운동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성과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부족하다. 예를 들면, 『3·1운동 100년(전5권)』에도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논문이 없다.⁸⁾ 역사교육연구회가 『글로벌 시각에서 본 3·1

5) 조민의 위 글이 당시의 국제정세 변화를 정리할 때 인용한 저작은 N.Sivachyoy, E.Yazkov, 『History of the USA Since World War I』(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6), N. Gordon Levin, JR, 『Woodrow Wilson and World Politics』(Oxford Univ., Press, 1968), 또는 우동수 역음, 『세계현대사 - 제국주의와 파시즘』(청아출판사, 1987), 野澤豊의 지음(박영민 옮김), 『아시아민족운동사』(백산서당, 1989) 등이었다.

6)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문제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편, 『(국사편찬위원회 회보) 역사의 창』 48호(2019)에 실려 있는 류준범, 정병욱, 서일수 글 참조. 권윤경은 「새로운 문필공화국을 향하여 - 18세기 프랑스사 연구와 디지털인문학의 사례들」(『역사학보』 제240집, 2018)에서 프랑스 혁명사 연구와 관련한 연구환경 변화를 자세히 소개한 바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우리 학계 내부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7) 정용욱, 「3·1운동사 연구의 최근 동향과 방향성」, 『역사와 현실』 제110호(2018. 12) 참조.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출간된 저작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성과는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기획위원회가 역음은 『3·1운동 100년(전5권)』(Humanist, 2019), 그리고 권보드레의 『3월 1일의 밤』(돌베개, 2019), 박찬승,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다산초당, 2019) 등이다.

8) 3·1운동을 전후한 시기 다양한 층위의 공간과 3·1운동의 연관성을 다룬 『3·1운동 100년(전5권)』의 제4

운동과 그 교육』(2019년 5월)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개최한 학술대회도 일본, 중국, 구미 등의 교과서에서 3·1운동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문제삼았을 뿐이다. 본 발제의 첫 번째 목적은 최근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하여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시기 국제정세의 변화가 3·1운동, 더 나아가 우리의 민족해방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시론적인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3·1운동 100년(전5권)』의 제3권(권력과 정치)에 수록된 홍종욱의 「3·1운동과 비식민화」에 대한 발제자의 생각을 거칠게나마 밝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연구사적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제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념총서의 기획위원이기도 했던 홍종욱은 제3권 권력과 정치의 머리말에서, 자기 논문의 요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발제자 재정리).

▶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제국-식민지 질서가 흔들리면서 이른바 비식민화가 진행되었다.”
“3·1운동 전후 시기 식민자와 피식민자 모두 19세기적 식민통치의 불가능성을 깨달았다.”

▶ “3·1운동 이후 식민지 조선의 상황은 비식민화(decolonization)의 과정이었다.”,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치는 비식민화의 한국적 발현이었다.” “3·1운동이 열어젖힌 공간 위에서 독립, 자치, 동화라는 비식민화의 세가지 방향이 각축을 벌였다.”

▶ 3·1운동은 “비식민화 시대인 20세기를 열어젖힌 한국 근현대(사의) 최대 사건”이자, “근대의 종점이자 현대의 기점”이다.

이용재는 「식민제국의 해체와 제3세계의 대두」(‘탈식민화’와 ‘민족해방’ 사이)⁹⁾에서, ▲ “탈식민화와 민족해방은 동일한 역사현상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는 용어(설명 혹은 분석개념)라는 점 ▲ “유럽의 식민제국은 ‘탈식민화’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반면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국들은 ‘민족해방’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했다”는 점 ▲ “탈식민화의 추동력을 종주국의 정책 변화에서만 찾는” 경우 “식민지인들의 독립을 향한 열정과 주체적인 역량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강조한 바 있다.¹⁰⁾ 이런 견지에서 보면, 홍종욱의 논문은 변혁주체 민중론에 기초한 『3·1 민족해방운동 연구』와는 그 결을 달리하는 연구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식민지 제국의 해체와 변용을 다양한 세력 사이의 갈등과 타협 과정으로 파악”해야 한다(홍종욱, 앞의 논문, 300쪽)거나, “한국의 식민화나 비식민화 과정도 세계사적 맥락에서 검토해야 한다”(302쪽)는 문제제기¹¹⁾는 ‘다른 길’, ‘다른 가능성’을 찾는데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발제자도 큰 의의는 없다. 발제자는 여전히 ‘변혁주체 민중론’¹²⁾을 선호하는 편이나, 이런 지적들을 유념하면서 제1차

권(공간과 사회)에는, ‘3·1운동을 외부 세계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려는 논문’들이 여러 편 실려 있으나 당시의 국제정세 변화가 3·1운동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는 없다.

9) 송충기, 김남섭 외 『세계화 시대의 서양 현대사』(아카넷, 2009), 255-294쪽.

10) 이용재, 앞의 책, 258쪽 참조. “탈식민화가 유럽 종주국이 식민제국의 건설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해체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있었으며, 따라서 제국의 해체는 종주국의 식민정책 변화의 일환일 따름이라는 해석을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다면, 민족해방은 식민지에서의 민족주의운동과 원주민의 주체적인 해방투쟁이 식민 세력을 내쫓고 제국을 붕괴시킨 원동력이었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 요컨대 전자는 식민세력의 철수(pull out)에 초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식민세력의 축출(push out)을 강조한다”(Springhall, J., Decolonization Since 1945, the collapse of European Overseas Empires, Palgrave, 2001, 3쪽)

11) 이런 문제의식의 중요성은 박지향의 『제국주의 - 신화와 현실』(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0)에서도 확인된다. 박지향은 탈식민화와 식민지 저항운동의 상관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식민지에서의 반항이 물론 제국의 해체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고는 해도 중심부와 국제정치상 영향력들이 힘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탈식민화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심부나 국제정치적 변화들이 존재하였다 해도 궁극적 요인은 식민지 저항운동이었다. 결국 제국의 해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심부와 주변부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한 것이다.”(앞의 책, 43쪽)

12) 발제자는 『31 민족해방운동 연구』에서 거칠게 주장했듯이, 여전히 민족해방운동사적 관점에서 일제시대(정치)사를 서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발제자의 관점은 누구나 비판하는 ‘지배와 저항’, ‘민족과 반민족’, 또는 ‘식민지=악, 근대=선’이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역사인식과는 무관하다. 발제자는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정세 변화와 3·1운동, 더 나아가서는 일제시기부터 해방공간에 이르는 시기의 정치사를 反求諸己의 관점에서 재구성해 보고자 했다.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아래의 발제에서는 1919년과 1920년 사이에 전개된 국내외의 독립선언과 만세시위, 상해 임시정부운동과 만주 독립군 투쟁 등을 ‘첫 번째 고조기 운동’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위의 운동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성, 특히 이 운동들은 모두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시기의 국제정세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이자 운동”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한국사 교과서는 물론이고 일제시기 독립운동 개설서들도 대부분 첫번째 고조기 운동을 각기 분리하여 설명하거나, 심지어 3·1운동의 결과(성과)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식으로 선후관계나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각각의 운동이 가지는 성격이나 의미를 따지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한국사 교과서 등 ‘상해임시정부 정통론(법통론)’을 강조하는 서술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3·1운동의 결과(성과)로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¹³⁾

물론 1945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이 ‘대한민국’이라는 國號와 ‘민국’이라는 年號를 채택한 것은 상상 국가이자 미래 국가인 ‘조국’의 실체성이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역사적 사건임이 분명하다.¹⁴⁾ 하지만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은 3·1운동과 함께 기획된 것이었으며, 설립의 목적도 실질적인 정부(정권기관이나 망명정부)¹⁵⁾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대표성이나 공식성을 가진 외교독립운동의 주체(민족대표, 대표기관)를 형성하기 위한 변통(變通)의 산물일 뿐이었다.

I. 첫 번째 고조기 운동과 국제정세 활용론(用外勢論)

■ 개항 이후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열강간의 빅딜(big-deal)을 무수히 경험한 한국의 민족운동 주체들은 한말 국권회복운동이나 일제하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제정세의 변화나 주변 열강간의 분쟁이나 전쟁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의 첫 번째 고조기에 전개된 국내외의 독립선언과 만세시위운동, 상해 임시정

2009년 11월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연구반’이 주도한 내부 토론회에서, 「‘변혁주체 민중론’,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라는 글을 발표했다. 그 글에서 발제자는, “민중들의 다양한 탈주와 저항 행위 가운데서, 변혁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찾아내야 한다는 주장은 낡은 ‘가설’도 ‘달린 해석’도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발제자가 생각하는 ‘변혁주체 민중론’은 흔히 말하는 ‘경제결정론’보다는 맹자의 성선론처럼 변혁주체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낙관이나 믿음, 또는 일종의 ‘정언명령((定言命命, Categorical Imperative)’에 가깝다.

- 13) 최병택, 「3·1운동 관련 교과서 서술의 변천 분석」, 역사교육연구회 춘계학술대회, 『글로벌 시각에서 본 3·1운동과 그 교육』(2019. 5) 참조. 박찬승도,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 1919』(다산초당, 2019)에서, 만세시위 이후 민족운동 주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또 장기적인 싸움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그 ‘구심점’으로 임시정부를 조직했다고 기술하였으나(앞의 책, 283쪽), 상해(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결코 ‘장기적인 싸움의 구심’ (영도기관?)일 수 없었으며, 또 일부의 시기를 제외하면 실제로 그런 역할을 수행한 사실도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
- 14) 일제하에서 ‘祖國論’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이때 형성된 조국론이 일제하의 민족해방운동이나 해방후 통일민족국가 수립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역사논쟁은 ‘배틀(battle)’이 아니다 -건국절 논쟁의 주요 쟁점과 교육적 활용방안」, 『역사와 역사교육』 제32호(2016년 11월)의 제2장 「건국절 논쟁과 ’정통론‘ 혹은 ’조국론’의 상관성(33쪽-36쪽)」을 참조할 것.
- 15) 홍종욱은 위 논문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대한민국(상해) 임시정부를 ‘망명정부’라 호명했으나(위 논문, 308쪽) 이는 착오라 여겨진다.

부운동과 만주 독립군운동 등도 공통적으로 당시의 국제정세 변화를 배경으로 한 민족 독립운동이었다. 이런 특성을 몰각하는 경우, 각 운동의 전개양상이나 성격 등에 이해가 불가능하거나 왜곡될 여지가 많다.

3·1절 100주년을 여는 새벽, 『한겨레신문』은 1면 톱으로 북미간의 ‘빅딜’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만감이 교차한 것은 발제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개항 이후 조선왕조가 중화적 지배 질서를 벗어나 ‘만국공법’ 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¹⁶⁾ 일본은 19세기 말 주변 열강들과의 다양한 딜, 즉 1894년의 시모노세키조약(청일전쟁)과 1904년의 포오츠머드조약(러일전쟁), 그리고 영일동맹(1902년, 1905년)과 테프트-가쓰라 밀약(Taft-Katsara Agreement: 1905) 등을 통해 조선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1910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한 이유는, 흔히 말하듯이, “조선은 일본 열도를 향한 칼 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대륙 진출의 다리가 될 수도 있다”(강만길)는 생각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1890년 山縣有朋 總理大臣이 행한 시정방침 연설에 보이는 ‘주권선·이익선’ 개념은 이런 인식에 바탕한 일본의 국방 노선이자 전략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한반도를 ‘딜’하는 과정에서 주변 열강들은 조선을 ‘공동 관리’하거나 ‘분할 지배’하는 방안을 두루 검토하였다는 사실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이 내놓은 위임통치 방안이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가 모스크바에서 합의한 신탁통치(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방안도 크게 보면, 이 같은 딜의 연장선상에 있는 주변 열강들의 조선문제 처리 방식이었다.

개항 이후 이러한 거래와 협잡을 무수히 경험한 한국의 민족운동 주체들은 한말 국권회복운동이나 일제하의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주변 열강간의 갈등이나 분쟁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민중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주막담총』¹⁷⁾ 1912년판에 보이는 “요즘 청나라 내란 상황을 알고 싶어서 『매일신보』 또는 외국신문과 조선신문들을 구독하는 사람이 많아졌다”¹⁸⁾는 대목은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가령, 1915년판 『주막담총』에는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담화’가 여기저기 보이는데, 이는 민중 레벨까지 국제정세와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민중적 차원의 이해(재해석?)’가 浮設·訛傳·巷說 등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었음을 보여준

16) 당시의 국제법(만국공법) 질서에 따르면 조선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경과하면서 청국의 藩屬(Vassal State), 혹은 半主之國(Semi sovereign)에서 일본의 보호국(Protectorate)으로 국제법상의 위상이 바뀌었다. 1910년 ‘합방조약’에 따라 다시 일본의 식민지(Colony)로 전락하게 된 것이었다. 유바다의 논문에 따르면, 보호국화 이후 일본 정부는 당시의 국제법이나 국제정세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人的同君論(Personal Union), 物的同君聯合(Real Union), 國之合(Incorporat), 聯邦(Federal), 合邦(Untied States)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다고 한다. 유바다의 논문에 보이는, “국제법 질서가 중화세계를 석권한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서구 세계에서 흔히 제국이라 불리는 종주국(Suzerain)과 봉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進貢國(Tributary State), 封臣國(Vassal State), 屬國(Dependent State), 半主之國(Semi-sovereign State) 등 다양한 지위의 국가들이 존재했는데, 이들도 주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법 질서 하에서 보통의 주권국가(Sovereign State)들과 공존하고 있었다”고 한다. 유바다,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12), 377쪽 참조.

17) 『酒幕談叢』(국회도서관 소장 자료)은 공주현병대 본부와 충청남도 경국부가 1911년 가을부터 1914년 말까지 관할구역 내의 주막이나 장터에서 수집한 담화나 풍설을 번역 편찬한 일종의 ‘염탐 활동 보고서’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제는 줄고, 「‘주막담총’의 사료적 가치와 읽기 방법」,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공주를 주막에서 엿듣다 -주막담총 1910년대 일제의 비밀 사찰기』(2017. 11)를 참조할 것.

18) 「1911년 11월 중 공주경찰서 관내 각 주막에서 수집된 담화」, 『주막담총』, 1912년판, 460쪽. “청나라에서는 혁명군과 관군이 연일 교전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날지 몰라도 풍설을 듣자하니 南京의 有志인 紳士들이 주창하여 오늘날의 문명세계에 걸맞는 共和政府를 조직하려 한다고 말함」(『주막담총』, 1912년판, 공주 경찰서 관내, 450쪽).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의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의 민족해방운동

다. 위 자료에 따르면, 1914년 8월 일본이 대독 선전포고를 하였다는 소식, 특히 1915년 1월 중국에 이른바 ‘21개조 요구’를 관철시켰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자 조선 내에는 ‘일본은 세계가 인정하는 강국(世界の王國だ)’이라는 인식이 아래와 같이 확산되고 있었다고 한다.

* 조선이 일본에 併呑되지 않았더라도 이번 世界戰爭에서 어떤 국가에게든 점령당했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보니 일본에게 병합되어 다행이다. 靑島 함락은 支那人도 놀라워한다니 일본은 세계적인 왕국이다.(1915년판, 공주경찰서 관내 공주군, 157-158쪽)

* 독일이라는 나라는 매우 강한 국가이나 듣기에 이번에 일본이 靑島라고 하는 獨逸嶺을 공격하여 이를 함락했다고 한다. 실로 일본은 강한 국가이다. 우리들도 한번 일본병으로 전쟁에 나가보고 싶다 (1915년판, 온천리 헌병파견소 관내, 아산군, 201쪽)

* 일본은 매우 교활하다. 이번에 독일이 점령한 청도를 공격하여 빼앗은 뒤 만주와 교환을 하려 하고 있다.(1915년판, 조치원 헌병분견소 관내, 189쪽)

물론 위의 인용은 일반 민중들의 담화(육성)라기보다는 헌병 경찰의 욕망이 반영된 ‘조작된 담화’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인들이 제1차 세계대전 소식, 특히 러시아나 미국과 일본 관계의 변화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박찬승의 저작 등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식민지화 이후 민족운동의 주체들은 『每日申報』, 『大阪朝日新聞』 등을 통해 당시의 국제정세 변화를 제한적이거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3·1운동 초기 일부 민중들은 ‘이미 독립되었다’거나 ‘곧 독립이 될 것’이라는 소문을 믿고 시위 활동에 참여하였다. 가령, 권보드레는 『3월 1일의 밤 -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돌베개, 2019)의 첫 장(「선언: 현재가 된 미래」)에서 이런 ‘담화’들을 전통시대의 讖言(정감록)과 같은 일종의 ‘예언적 소문(prophetic rumor)’으로 이해하였다(위의 책, 31쪽). 하지만 뒤집어 보면 이런 사실은 당시 민중들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정세, 즉 “정의와 인도에 기초한 신문명의 서광”, 혹은 ‘비식민화’의 기미나 조짐을 어느정도 눈치채고(낙관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¹⁹⁾

3·1운동이 한창이던 1919년 3월과 4월 『매일신보』는 「휴전 강화」, 또는 「구미 시사」, 「중국 소식」 등의 고정란을 설치한 뒤, 베르샤이유회의 소식 등 전후 체제의 재편과 관련한 소식²⁰⁾을 매일 매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3월 7일경부터는 3면에 「각지 소요 사건」, 「소요사건의 後報」 등의 고정란을 통해 각지의 시위 소식을 기사화하였다. 박찬승 등의 연구들에 따르면,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를 주도한 이들이나, 임시정부운동이나 독립군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매일신보』를 비롯한 언론매체, 혹은 유학생들이나 선교사, 또는 국외 교민사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 당시의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의 국제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민족운동 주체들이 보인 가장 큰 관심은 보인 것은 단연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14개조 원칙’, 그 가운데서도 이른바 ‘민족자결(self-determinayion)의 원칙’이었다.²¹⁾

19) 권보드레는 위의 책에서, 면사무소에 ‘대한독립운동준비사무소’라는 간판을 달고 태극기를 게양했다거나 (평북 순천군 신장면 사례),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접수하고 자치단을 조직한 뒤 20여일, 혹은 10일간 자치 업무를 보았다(평북 선천군 운중면 신미도, 의주군 옥상면 사례)는 사실 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19세기 말의 정치문화, 특히 민회전통이나 의병전통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있을 수 있는 ‘사태’라 여겨진다.

20) 파리강화회의는 1919년 1월 18일부터 시작되었으나 독일이 연합국에 항복하는 1918년 11월 11일 무렵부터 『매일신보』는 「강화문제」 등의 고정란을 설치한 뒤 지속적으로 파리강화회의의 소식 등 전후 질서 재편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21) “5조. 자유롭고 편견 없이, 또 절대 공평하게 조정된 식민지 주민의 주장은, 앞으로 자격이 주어질 정부

사정이 이러하자 민족운동 주체들은 베르샤이유 회의 등에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인의 독립의지와 역량을 알리는 활동을 본격화했다. 문제는 한민족(조선인)의 독립이 민족 구성원 모두의 의사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할 것인가? ”였다. 1919년과 1920년에 전개된, 거족적인 독립선언과 만세시위,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운동과 만주 독립군운동의 가장 큰 목표도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 ▲ 한국의 민족운동 주체들이 베르샤이유회의(1919.1-1919.6), 약소민족동맹회의(1918.12) 등에 민족대표를 파견한 것 ▲ 상해임시정부가 1919년 9월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1920년 벽두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한 것 ▲ 워싱턴에서 열린 태평양회의(1921.11-1922.2), 비슷한 시기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피압박민족회의 등에 ‘대표’를 파견한 것 등은 당시의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민족운동 주체들의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대응이었다.

첫 번째 고조기 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역시 거족적인 독립선언과 만세시위였다. 왜냐하면 민중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없었다면, 임시정부운동이나 독립군 운동은 몇몇 활동가들의 ‘騷擾’로 치부될 여지가 컸기 때문이다. 민중들은 만세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3·1운동의 원인과 배경, 특히 민중 참여 문제를 설명할 때, 흔히 ‘무단통치(무단적 억압과 수탈)’ 등 각종 식민지 지배 모순 등을 강조하거나, 심지어는 시위의 자연발생성(즉 자성)을 강조하는 경향조차 있었다.²²⁾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으나 보다 중요한 요인은 당시의 국제정세 인식, 즉 민족독립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신념)였다고 해야 옳을 듯 싶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민중들 가운데는 ‘이미 독립이 되었다’는 부정확한 소식이나 정보를 믿고 있던 이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베르샤이유회의가 열리고 국제연맹이 창설되는 상황이야말로 독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는 인식은 지식인이나 민중들이나 마찬가지였다.

■ 당시의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 하지만 1919년 4월에 설립된 상해 임시정부는 실질적인 정권기관이나 망명정부가 아니었다. 상해임시정부는 3·1운동의 결과(성과)가 아니라 대중적인 선언과 시위를 통해 표출된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와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임시적으로 구성한 ‘가정부(假政府)’였을 뿐이다.

첫 번째 고조기의 운동들은, 그 형태나 내용은 다르나 크게 보면, 베르샤이유회담이나 국제연맹 결성 등 일련의 국제정세 변화와 연동하며, 동시적으로 전개된 일종의 ‘외교 독립운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론’에 기초하여 일제하의 민족운동사를 서술하고 있는 저작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3·1운동의 결과나 성과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다. 1919년 3월 상해 조계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국제사회에 독립선언과 만세시위 사실을 알리고자 했을 때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최고기관을 정부 형태로 할 것인가, 정당 형태로 할 것인가를 고심했다. 이런 사례는 상해임시정부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은 외교독립운동을 위해서는 민족운동 정당보다는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의 주장과 동등한 무게를 가져야 한다. 특히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주권 문제 같은 것을 결정할 때에는 엄격히 이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프랭크 볼드윈, 「윌슨, 민족자결주의, 3·1운동」, 동아일보사 편,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1969)

22) 자연발생성이나 즉자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19세기 이른바 민란의 시대(민회의 시대)를 경과하며 형성된 정치문화, 특히 민회전통이나 의병전통을 무시하는 견해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다른 지면을 통해 시도하고자 한다.

물론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과 대한민국 선포라는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외교독립운동의 산물로만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일면적인 해석일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한 주체들은 단순히 파리나 워싱턴에 파견할 주체(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대표)를 구성하기 위해 임시정부를 구성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임시의정원이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2조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이를 통치함”, 제7조의 “인류의 문화 및 화평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의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10조의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등의 조항은 이를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특히 이른바 ‘漢城政府 奉戴論’을 앞세우며 통합 임시정부를 구성한 1919년 9월경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권기관, 혹은 망명정부로서의 위상(법통성)을 더욱더 강화하고 강조하기 시작했다. 임시정부를 둘러싼 권력투쟁과 내분이 더욱더 치열해진 것도 당연히 이 무렵부터였다.²³⁾

1919년 4월 11일 새벽 임시의정원이 대한민국의 설립을 결의하고 선포한 것은 3·1운동을 통해 드러난 민중들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한 상상 속의 국가, 즉 조국(祖國)의 실재성(intersubjectivity: 일종의 상호주관적 실재성)과 정체성을 국내외에 선언하고 선포한 역사적 사건임이 분명하다.²⁴⁾ 예를 들면, 한인애국단원이었던 이봉창과 윤봉길은 그들의 「선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한민국’ 13년(1931년)과 14년(1932년) 각기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장렬한 의열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위 선언문에 보이는 대한민국은 현실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애국가에도 등장하듯이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존재했고 존재해야 할 상상 속 국가, 즉 조국(祖國)이었다.²⁵⁾

이런 관점에서 보면, “3·1운동의 결과, 혹은 정신을 계승하여 과거 국가이자 미래 국가인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설명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3·1운동의 결과(성과)로서 상해 임시정부라는 정권기관(혹은 망명정부)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1운동 이전 시기부터 여러 지역의 독립운동 세력은 각기 임시정부의 설립을 모색하거나 도모했는데, 그 목적도 실제의 국가나 정권기관을 만드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진 외교독립운동의 추진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요컨대, 파리강화회의에 장덕수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신한청년당²⁶⁾은 물론이고,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미주, 노령 상해, 한성 등지에 조직된 모든 임시정부들도 하나같은 목표는 (외교)독립운동의 중심기관을 만드는 것이었지 정권기관, 혹은 망명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었다.

상해 임시정부가 1920년 벽두에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하고, 나아가 전시 국제법(헤이그 협약)

23) 이와 관련한 개략적인 정리는 박찬승의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 제7장 「대한민국의 탄생」(284-343쪽)을 참조할 것.

24) 발제자는 앞의 「역사논쟁은 ‘배틀(battle)’이 아니다 -건국절 논쟁의 주요 쟁점과 교육적 활용방안」에서 현실국가(대한민국)와 상상국가(조국)의 건국일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 현재의 애국가는 현실국가인 대한민국의 찬가가 아니라 일종의 ‘조국 찬가’라는 점, 건국절 문제는 사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는 점 등을 강조한 바 있다.

25) 발제자는 건국절 논쟁과 관련한 글에서 ‘상상 속 국가인 조국’의 건국일과 ‘현실 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하는 단일민족국가론이나 조국론은 대단히 위험한 이데올로기이나, 위의 「선서문」에 보이는 조국처럼 일제하에서는 민족독립운동의 구심이나 동력을 만드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는 점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줄고, 「시론: 건국절 논쟁의 지형 바꾸기」, 『내일을 여는 역사』 1916년 가을호, 21-22쪽 참조.

26) 정병준, 「3·1운동의 기폭제 -여운형이 크레인에게 보낸 편지 및 청원서」, 『역사비평』 119, 2017년 여름호. 1918년 11월 무렵부터 신한청년당 결성, 당시 중국을 방문한 월슨대통령 비공식 특사 찰스 크레인 면담, 월슨의 14개조 평화안 설명 청취, 청원서 작성, 파리강화회의의 장덕수를 대표로 파견했다. 이때부터 여운형 등은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보다는 당조직론을 강조하였는데, 그 이유는 통일적이며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데는 정부조직보다 당 조직이 유용하다는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에 부합하는 형태로 ‘대한민국 육군’을 창설한 이유도 크게 보면, 미일간의 전쟁 가능성, 특히 전시 국제법에 부합하는 형태로 전쟁에 참여하여 열강(국제연맹)들로부터 독립(비식민화?)을 약속 받거나 동맹국(교전단체)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신호승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미국과 일본은 야프 섬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서로 침예하게 대립했는데, 미국의 한인사회가 발행했던 『신한민보』나 『자유한국』 등도 이런 정황들을 근거로 미일간의 개전 가능성을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²⁷⁾

청산리 봉오동 전투는 꽤거이자 승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1920년 말부터 1921년초까지 진행된 이른바 경신참변(간도참변)²⁸⁾이나 자유시참변²⁹⁾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 3대가는 의외로 컸다. 뿐만 아니라 미일간의 군사적 갈등 관계가 워싱턴회의(이른바 워싱턴체제의 형성)를 계기로 일시 봉합되면서, 국제정세를 활용하여 독립을 쟁취한다는 전략은 무용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되고 말았다. 첫 번째 고조기 이후 만주지역의 독립군 세력이 임시정부와는 무관하게 삼부(三府) 형태로 재편되거나 당군(黨軍) 형태로 전화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II. 상해임시정부 운동과 ‘임시정부 정통론’

■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시기의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국외(상해)에 임시정부를 수립한 뒤 이를 매개로 외교독립운동을 수행한다는 전략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1922년 6월 이른바 ‘워싱턴체제’가 성립되는 시점에 이르면서 이런 전략은 국제정세는 물론이고 국내외의 정치상황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변화했다. 특히 1923년 6월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는 시점에 이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세력)는 민족운동의 디딤돌 역할보다는 오히려 걸림돌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상해 임시정부 정통론(법통론)’은 첫 번째 고조기 운동은 물론이고 이후의 민족해방운동사까지도 전체적으로 왜곡하는 대표적인 ‘역사 조작(manipulation)’이다.

○ 1919년 4월에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는 설립 초기부터 파리강화회의를 대상으로 한 외교활동에 주력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1919년 6월 파리강화회의가 종료되자 국제연맹(1920년 1월 창립), 특히 미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활동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상해 임시정

27) 「야프 문제에 대한 미일 충돌」, 『신한민보』, 1921. 3. 24; 「야프에 대한 미일 충돌, 한인은 어찌할까?」, 『신한민보』, 1921. 4. 14. 야프(Yap) 섬은 서태평양의 작은 섬이나 미국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한다. 강화회의 과정에서 야프 섬의 영유권 문제가 국제연맹의 감독하에 일정 기간 ‘위임통치’를 한 후 일본이 영유하는 쪽으로 결정되자 미국(특히 한인사회) 내에는 미일 개전의 가능성(당위성, 필연성?)을 논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신호승, 앞의 논문, 136쪽) 하지만 1922년 6월에 폐막된 워싱턴회의(해군 군비 제한 협약)를 통해 미일간의 군사적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되었다.

28) 청산리 봉오동 전투 이후 일본은 1920년 이른바 ‘琿春事件’을 조작한 뒤 군대를 파견하여 서너달 동안 조선인 마을을 불태우고 한인들을 집단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과장된 것이기는 하나 한 기록에 따르면, 1920년 10월과 11월 두 달 사이에만 약 3,600여 명이 학살당하였고, 150여 명이 검거되었으며, 가옥 3,500여 채, 학교 60여 개소, 교회 20여 개소 및 양곡 6만여 석이 소각되었다고 한다.

29) 일본군의 토벌을 피해 러시아령 자유시(후하시)로 이동한 독립군(대한독립군단 등)이 러시아 적군에 의해 무장이 해제되고 학살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만주지역의 독립군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이 사건 이후 만주지역으로 돌아온 독립군 세력은 각자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1924년, 1925년 사이 참의부(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駐滿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 이른바 ‘삼부(三府)체제’를 형성했다. 삼부는 이전의 독립군 부대와 달리 단순한 ‘군사기구’가 아니라 일종의 ‘자치기구’이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의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의 민족해방운동

부가 1920년 1월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한 것도 이런 배경 가운데서였다. 하지만 워싱턴회의(1921.11-1922.6)에서 태평양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되자³⁰⁾ 상해의 임시정부나 만주의 독립군 부대들은 그간의 국제정세 활용론을 크게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1923년 1월에 시작되어 1923년 6월에 끝난 국민대표회의는 워싱턴체제 성립 이후 급격하게 변화한 국제정세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를 논하는 자리였다. 한국사 교과서와 개설서들은 국민대표회의에서 벌어졌다는 이른바 ‘개조파-창조파 논쟁’을 모두 임시정부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정부를 창조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할 대목은, 향후 민족독립운동의 지도기관을 임시정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족운동 정당(民族大黨)으로 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다. 가령, 당시 창조파 세력은 『국민위원회공보』 제1호를 통해 ‘한(韓) 정부’의 수립과 동시에 ‘한국독립당’의 조직을 주창했는데(「한국독립당 조직안」) 이는 발제자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노경채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한(韓)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와는 달리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펴기 위한 방안으로서 ‘당적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24년 2월 22일에 열린 국민위원회에서 「한국독립당 조직안」을 결의”하였다고 한다.³¹⁾ 하지만 국민대표회의 이후, 즉 개조파와 창조파 세력이 상해 임시정부를 떠난 이후 실권(정권?)을 장악한 이른바 ‘임정 옹호파’ 세력은 거꾸로 임시정부의 정권기관(망명정부)적인 성격을 오히려 더욱 배타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³²⁾ ‘상해 임시정부 정통론이나 법통론’이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1920년대 중반경부터 국내외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활성화되자 상해 임시정부(옹호파, 고수파) 세력도 여기에 일정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민족운동 정당, 그것도 가급적 단일당을 중심으로(지도기관)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민족운동 전선의 합의 때문이었다. 민족단일당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상해 임시정부 세력이 1930년 1월 한국독립당을 결성한 것도 이런 추세에 대한 대응이었다.³³⁾ 하지만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세력은 한국독립당을 매개로한 정치활동보다는 한민애국단을 매개로한 의열투쟁 등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윤대원이 「임시정부 법통론의 역사적 연원과 의미」³⁴⁾에서 구체적으로 밝혔듯이, 임시정부 세력은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는 비상한 상황에서도 당원 조직을 국내로 확대하거나 좌우익 정당 간의 정치적 연대를 도모하는 활동보다는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옹호하는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상해 임시정부 정통론(법통론)’은 일제하의 물론이고 해방 이후 정국에서도 정치적 연대와 타협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예를 들면 중국국민당 정부의 중재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30) 1922년 6월에 성립된 이른바 워싱턴 체제(The Washington System)는 1931년 만주사변(연맹의 개입과 일본의 연맹 탈퇴)이 일어날 때까지 근 10년간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질서를 여러모로 규정했다.

31) 노경채, 「국의 민족운동의 노선과 이념의 변화과정」, 『31 민족해방운동 연구』, 507쪽 참조. 당시 창조파 세력은 「한국독립당조직안」(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976, 513쪽)을 통해 ‘자립적 공화국의 건설’, ‘평화, 타협, 외교 노선 배제’, ‘경제상의 해방’ 등을 표방했다고 한다.

32) 윤대원, 「왜 당이 아니라 정부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74호(2019. 3) 정당인가 정부인가, 자문, 윤대원은 판단 유보했다. 하지만 발제자는, 1919년 상황에서는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옳았으나 워싱턴체제가 성립된 이후는 임시정부가 민족운동 정당을 중심으로 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해 가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33) 노경채, 『한국독립당 연구』(신서원, 1996) 참조. 김구 등 임시정부 고수파가 한국독립당을 결성한 것도 크게 보면 ‘以黨治國論’에 기초한 인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실천은 시종일관 임시정부정통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34) 윤대원, 「임시정부 법통론의 역사적 연원과 의미」, 『역사교육』 110호, 2009, 참조.

(김구 및 한국국민당 중심)와 조선민족전선연맹(김원봉 및 민족혁명당 중심)의 통합 논의가 한창 일때도 가장 큰 골치거리인 역시 임시정부 문제였다. 이때 한국국민당측은 임시정부 해체론에 맞서, “임시정부로서 최고 권력기관으로 삼아 군정, 외교 등은 모두 정부 관할”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임시정부는 3·1운동때 전국대표가 대표자대회를 통해 성립한 정부’라는 점, 즉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강조했다(윤대원, 앞의 논문, 129쪽). 하지만, ▲ “임시정부는 역사가 오래되고, 또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한국독립운동의 총영도기관이므로, 임시정부를 파괴하려는 자는 그 목적이 한국 독립운동의 대업을 파괴하는데 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³⁵⁾은 한마디로 말하면 ‘연대’는 고사하고 ‘정치’ 그 자체마저도 부정하는 행위였다. 조소앙이 기초했다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초안)」(1941)의 제1장 총강 5항에 보이는 아래와 같은 대목들은 상해임시정부 법통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역사인식을 극명히 보여준다.

同年(1919년) 4월 11일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10조를 창조 발표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서 이족 전제를 전복하고, 5,000년 군주정치의 구각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며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일의 착수이었다. 우리는 대중의 꺾방울로 창조한 신국가 형식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함에 공동혈전할 것임.

일찍이 노경채는 「국의 민족운동 노선과 이념의 변화과정」에서 첫 번째 고조기 이후 민족운동을 주도해간 조직(지도기관, 영도기관)으로 민족운동 정당, 특히 민족단일당을 주목했다. 이는 당시 민족운동 전선의 일반적 경향이자 일종의 대세(大勢)였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1920년대 중반 이후 국내외에서 전개된 민족유일당 운동은 첫 번째 고조기의 임시정부운동이나 독립군 운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중국 국민당의 이당치국론(以黨治國論)이나 국공합작론(國共合作論), 또는 코민테른의 전위당론(前衛黨論)이나 통일전선론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민족해방운동이었다.

■ 국민대표회의 이후 한국의 민족(독립, 혹은 해방)운동을 주도한 조직은 상해 임시정부나 만주의 독립군 부대가 아니라 한국독립당이나 조선공산당 등과 같은 민족(독립·해방)운동 정당(party)이나 사상단체, 또는 신간회나 삼총(三總: 조선청년총동맹, 조선농민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과 같은 국내의 사회단체나 조합들이었다. 특히 1930년대 초반 두 번째 고조기 운동을 주도한 것은 첫 번째 고조기와는 다르게 임시정부나 독립군이 아니라 국내외의 정당(당재건 준비조직)과 정치단체(비밀결사), 특히 국내에 조직된 혁명적 대중조직들이었다.

3·1운동 직후 사이토 총독이 표방한 이른바 ‘문화정치’는 대중운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문화정치 공간에서 우후죽순처럼 형성된 사상단체와 대중단체들은 저마다의 사상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여러 형태와 내용의 민족운동이나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청년들은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 농민들을 조직화하고 의식화하는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경찰집계에 따르면 1920년 251개였던 청년단체는 1929년 말 1,433개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청년총동맹(1924년 창립)에 가입한 단체는 203개였다. 당시 민중들은 지역별, 혹은 직업별로 조합(union)을 결성한 뒤 집단적인 쟁의(爭議) 활동과 더불어 여러 사회운동 단체들과의 연대활동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1924년에 창립된 조선노

35) 한상도, 「대한민국임시정부 II」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240-241.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의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의 민족해방운동

동충동맹은 1927년 조선농민총동맹과 조선노동총동맹으로 분립되었는데, 양 단체는 조선청년총동맹과 함께(三總) 국내의 대중운동을 지도하고 주도하였다. 일제의 경찰조사(『최근 조선의 치안상황』, 1933년판)에 따르면, 1931년 현재 농민단체는 1,759개, 노동단체는 511개였다.

1925년 4월에 조직된 조선공산당은 국내에 뿌리를 내린(중앙-도-군 조직) 최초의 민족운동 정당이었다. 조선공산당은 창립 이후 네 차례에 걸쳐 5백여명 이상의 활동가가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28년경까지 국내에서 각종 대중운동을 지도하였다. 1926년 6월 순종의 인산일을 기해 발생한 6·10만세운동(1926년), 1927년경부터 전국 각지에 확산된 신간지회 설립운동, 1929년 말부터 1930년 봄학기에 걸쳐 전국적으로 확산된 광주학생운동 등도 조선공산당, 또는 그 영향하의 청년·학생들이 주도한 항일투쟁이었다. 4차례의 검거사건으로 인하여 1928년 말 조직이 와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지역과 민중에 뿌리내린 전위당을 재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정치조직(비밀결사)을 결성한 뒤,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나 반제동맹운동 등을 주도하였다.

1930년대 초반이 민족운동의 두 번째 고조기였다는 사실은 일제의 사상사건 통계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1931년 4월부터 1932년 3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상범은 10,507명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 관련자들이었다. 일제시기(1926-1943)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자(총 24,441명)를 가장 많이 위반자를 배출한 곳은 인구와 정치자원이 밀집된 서울·경기가 아니라 1930년대 초반에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나 노동조합운동이 활발했던 함경도, 경상도, 전라도 등이었다. 일제시기의 조선인 ‘사상범’의 숫자는 대략 10만명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방 이후 인민위원회운동 등 통일민족국가 수립운동을 주도한 것도 이들 집단과 조직이었다.³⁶⁾

○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1922년 6월 워싱턴체제가 성립된 이후, 특히 1923년 6월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 조선의 민족해방(독립)운동을 주도해간 조직(지도기관, 영도기관)은 임시정부가 아니라 국내외의 정당 사회단체들이었다. 이는 1920년대의 ‘문화정치’ 시기는 물론 1930년대 초반에 조성된 두 번째 고조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중국 관내나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정당이나 무장조직들도 국내외의 민족해방운동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집단이 일제하의 민족해방운동을 영도했다거나 지도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해방 이후 통일민족국가 수립운동의 못자리 역할을 수행했던 이른바 전국 각지의 ‘민주부락’은 임시정부나 만주항일투쟁 집단의 지도(영도)와는 무관하게 19세기 ‘민회의 시대’나, 일제하의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스스로 꾸준히 민주주의혁명 역량을 키워온 마을들이었다.³⁷⁾

■ 분단 이후 남북한은 ‘상해임시정부 정통론’이나 ‘만주항일무장투쟁 정통론’에 기초한 자국사를 가르쳤다. 물론 자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는 국가의 기본 임무이자 책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배타적 정통성을 강조하는 경우 공동체의 생존과 관련한 ‘다른 길이나 가능성’에 대한 역사적 상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자국사 전개의 다른 길, 다른 가능성

36)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 -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역사비평사, 1993); 「일제하의 농민운동」, 한길사 편, 『한국사 15: 일제하 민족해방의 전개(1)』(1994); 「1930년대 국내 대중운동」, 韓國獨立運動史研究所 編, 『韓國獨立運動史事典 (總論篇 下卷)』(1996) 등 참조.

37) 지수걸, 「한국전쟁과 군 단위 지방정치」, 부경역사연구소, 『지역과 역사』 제27호 (2010. 10), 위 글에서 발제자는 일제시기부터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 이른바 ‘민주부락(소비에트부락)’의 형성과 소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역사적 상상력을 배가시키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정통론적인 역사인식 자체를 버려야 한다.

올해 4월 12일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등 ‘역사 삼단체’는 「국가정통론의 동원과 역사전쟁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가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대목은 이른바 ‘뉴라이트 진영’이 제기한 ‘1948년 건국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상해임시정부 정통론에 기초한 이른바 ‘1919년 건국설’이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는 정치 현실이었다. 위 학술대회의 자료집에 보이는, ▲ “현실의 불평등과 억압을 호도하기 위해 민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를 만드는 국가 기획에 역사가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취지문) ▲ “역사논쟁이 과잉정치화되면서 역사논쟁이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 사회의 역사인식 수준이 더 협소해지고 더 단순해지고 있다”(홍석률) ▲ 임시정부 정통론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단선적 계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것과 충돌·경쟁하는 다면적·다층적 과거를 역사 바깥으로 배제하고 유폐하는” 일종의 정치폭력(임종명)이라는 지적 등은 현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고언이다.

발제자가 「건국절 논쟁의 지형 바꾸기」³⁸⁾에서도 강조했듯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언제로 해야 할 것인가는 사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다. 달리 말하면, 1948년 8월 15일은 정부가 수립된 날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일 수도 있고, 분단정부(국가)가 수립된 날일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임시의정원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국이라는 연호를 제정한 4월 11일을 건국일로 하자는 주장이 틀렸다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해임시정부 정통론(법통론)에 기초하여 1919년 건국설을 제기한다거나, 임시정부를 일제시기 민족운동의 총지도기관(영도기관)으로 과장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정치적 관점이나 역사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뉴라이트 집단의 건국절 논쟁,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즈음하여 상해임시정부 정통론이 더욱 기세를 떨치고 있으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론은 사실 수준에서건, 정치 수준에서건 비판과 성찰이 필요한 역사인식이다. 앞서도 강조했듯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국이라는 연호를 채택함으로써 상호주관적 실재로서의 조국, 즉 대한민국의 실체성을 내외에 각인시킨 것은 당시의 정세에도 부합하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민족해방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임시정부(세력)가 독립운동의 디딤돌 역할만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때는 치명적인 걸림돌 역할마저도 수행했다.

2013년 8월 9일 유엔총회에 제출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조사관의 보고서」는 각국의 ‘역사 조작(Manipulation in textbooks)’ 사례로서, ▲ 다양한 역사적 상상을 불가능하게 하는 역사결정론을 강요하거나, 의심의 여지를 원천봉쇄하거나, 선입견을 유도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 ▲ 국가와 민족의 신화적 과거나 정통성을 창안(invention)하기 위해 특정한 사실을 강조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등을 강조한 바 있다.³⁹⁾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해임시정부 정통론이나 1948년 건국론은 명백한 역사조작 행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행위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운동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역사인식이다. 자국사 전개의 다른 길, 다른 가능성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상력을 배가시키려면 다른 무엇보다 먼

38) 지수걸, 「(시론) 건국절 논쟁의 지형 바꾸기」, 『내일을 여는 역사』 2016년 가을호(통권 64호); 「역사논쟁은 ‘배틀(battle)’이 아니다 -건국절 논쟁의 주요 쟁점과 교육적 활용방안」, 『역사와 역사교육』 제32호(2016년 11월), 참조.

39) 이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한중, 「유엔의 역사교과서 권고안」, 『역사교과서 국정화, 왜 문제인가』, 책과 함께, 2015)를 참조할 것.

저 정통론적인 역사인식 자체를 버려야 한다.

III.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비식민화 현상’과 민족해방운동

■ 홍종욱은 『3·1운동 100년(전5권)』 제3권(권력과 정치)의 머리말에서 기획의 의도 가운데 하나로, “한국의 식민화와 비식민화가 지닌 세계사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음미함으로써 일본 통치기 권력과 정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위의 글에 보이는 ▲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시기 민족자결 등 비식민화(decolonization) 경향이 강화되면서 식민지와 피식민자 모두 19세기적 식민통치의 불가능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주장, 또는 ▲ 3·1운동 이후 문화정치 공간에서 독립, 자치(식민지 의회 설립), 동화(참정권 획득)라는 비식민화의 세가지 방향이 서로 각축을 벌였다는 주장 등은 기존의 개설서나 교과서와도 다른 일종의 파격이다. 특히 “자결(self-determination)의 과정을 거친다면 자치나 동화도 식민제도 철폐의 종착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일제의 지배정책은 물론이고 일제하의 민족해방운동사도 새롭게 정리해야 마땅하다.

홍종욱은 「3·1운동과 비식민화」라는 글에서 19세기가 ‘제국의 시대’라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20세기는 ‘비식민화(decolonization)의 시대’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⁴⁰⁾ 홍종욱은 그 근거로 레닌의 「평화에 관한 포고」,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원칙, 독일 식민지 처리와 관련한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제도의 도입, 한국·중국·인도·아일랜드 등지의 독립운동이나 자치운동 등과 더불어 일본 내의 정당정치 발달과 식민지 문제와 관련한 인식변화 등을 거론하였다.⁴²⁾ 홍종욱의 논문에 따르면, 국제연맹 위임통치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일본의 민속학자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야나기타는 1922년에 집필한 「국제연맹의 발달」이라는 글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영토를 병합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할 수 없게 되었으며, 표면상으로나마 토민(土民)의 안녕, 행복을 목적으로 통치해야 하게 되었다”(홍종욱, 앞의 논문, 301-302쪽 재인용)고 실트했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제기를 수용하는 경우, 전체 민족운동사 속에서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전개된 참정권운동이나 자치운동을 배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민족운동사 정리방식임이 분명하다.⁴³⁾ 왜냐하면 3·1운동 이후 한국 민족주의운동의 주류는 해외에서 임시정부나 독립군운동을

40) 홍종욱에 따르면, 1920-30년대는 여전히 식민지 지배가 존재하는 시대였으나 동시대적으로는 식민자와 피식민자 모두 19세기적 식민통치의 지속 불가능성을 깨닫고 이미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비식민(decolonization)화란 이런 상황을 드러내기 위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41)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mandate 즉 위임통치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인 영국·프랑스·일본 등이 독일·터키의 식민지 및 여기에 준하는 영토(위임통치령)에 대해서 국제연맹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통치”를 말한다. 국제연맹의 설립과 위임통치제도의 도입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스스로 식민지 획득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위였다는 홍종욱의 주장을 수용하는 경우, 이승만이 제기한 ‘국제연맹 위임통치 주장’도 새로운 평가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홍종욱의 연구에 따르면, 1920년 3월 미국 의회가 아일랜드 독립지지안을 가결할 때, 한국 독립지지안도 상정되어 찬성 34, 반대 46, 기권 16표로 부결되었다고 한다(홍종욱, 앞의 논문, 304쪽).

42) 홍종욱에 따르면, 1920년 3월 미국 의회가 아일랜드 독립지지안을 가결할 때, 한국 독립지지안도 상정되어 찬성 34, 반대 46, 기권 16표로 부결되었다고 한다(홍종욱, 앞의 논문, 304쪽).

주도한 비타협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국내에서 실력양성운동 등을 주도한 것은 이른바 타협적 민족주의자 혹은 민족개량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⁴⁴⁾ 첫 번째 고조기 운동 이후 한국의 ‘현실 민족주의’는 급격하게 타협적 민족주의, 혹은 민족개량주의적인 성격을 강화하였다. 이광수의 「민족개조론」(1922. 5)이나 최현배의 『조선민족경생의 도』(1926년 『동아일보』에 66회 연재) 등은 이런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홍종욱은 위 논문에서 김명동의 바게닝(bargaining) 개념⁴⁵⁾을 언급하면서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의식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식민자는 무소불위의 경직된 지배자로 표상되기 쉽고, 이와 짝을 이루며 피식민자의 ‘절개의식’⁴⁶⁾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재단하기에 이른다. 조선인이 지녔던 절개의식은 역사적 사실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실제 벌어진 역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 식민자 역시 국제 정세를 의식하면서 저항을 두려워하는 존재였다(앞의 논문, 311쪽).

위와 같은 문제의식은 관련 연구성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박지향의 『제국주의 - 신화와 현실』 등에 보이는 ‘협력(collaboration)과 저항 이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⁴⁷⁾ 박지향은 한 좌담회에서 ‘협력론’을 언급하며, “선생님께서 방금 김성수, 이광수를 민족주의자들로 말씀하셨는데, 요즘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웃음)”⁴⁸⁾라고 말하며 한국사 연구자 일반을 조롱했는데, 발제자는 1995년에 발표한 한 글에서 “한국 현실 민족주의의 주류는 이광수나 최현배 류의 민족개량주의다”라고 발언했으나 큰일은 없었다.⁴⁹⁾ 발제자가 ‘협력론’이나 ‘조합주의론’에 대해 비판적인 관

43) 홍종욱에 따르면, 1960년 UN총회는 「식민 지역 및 인민에 독립을 부여하는 선언」을 채택하면서 ‘비식민화의 길’로서 독립, 자치, 동화의 길 등을 거론했는데, 이는 자결(self-determination)의 과정을 거치면 자치와 동화도 비식민화, 즉 식민제도 철폐의 한 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한다(홍종욱, 앞의 논문, 300쪽).

44) 지수걸, 「1930년대 초반 朝鮮의 現實 民族主義와 마르크스-레닌주의 - 滿洲(同胞)問題에 대한 認識을 중심으로」, 同德女子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編, 『人文科學研究』 창간호 (1995. 3) 참조. 이 글에서 발제자는 1930년대 초반의 정치공간에서 한국의 현실 민족주의가 어떤 정치적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다루었다. 발제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 민족주의의 주류는 임시정부 세력 등 국외 독립운동 집단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내에서 실력양성론이나 당면이익옹호론, 또는 조선학진흥운동이나 한글운동을 실천했던 이들의 민족주의라 생각한다.

45) 김동명,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 -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경인문화사, 2006, 68쪽 참조).

46) ‘절개의식’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비역사적인 것이다. 19세기 이른바 ‘민회의 시대’에 내면화된 정치문화, 특히 민회전통과 의병전통을 감안하면, 유교적 ‘의리론’이나 ‘명분론’이라는 말하는 것이 더 옳아 보인다. 19세기 민중들은 민회운동과 의병운동을 주도하면서 당시의 국가나 유생들과 ‘무엇이 義理인가’, ‘어떻게 해야 보국안민이 가능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다투었다. 1894년 사건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민회운동이자 의거 혹은 의병운동이었다.

47) 앞의 『제국주의 - 신화와 현실』의 「6장, 협력, 협력자」(113-144쪽) 참조. 이 책에 따르면 “협력(collaboration)은 식민제국과 식민지 사회의 집단이나 계급 간의 이해관계의 접근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동체 전체의 희생을 감행하기도 하는 연관관계를 의미한다”고 한다.

48) 「해방 전후사의 새로운 지평」(좌담 사회 박지향), 박지향·김철·김일영·이영훈 엮음,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책세상, 2006), 630쪽.

49) 흔히 이광수와 최현배의 민족주의를 타협, 비타협으로 구분하기도 하나 발제자의 생각은 다르다. 발제자는 「일제시기 브나로드운동, 재평가해야」, 『역사비평』 9호 (1990년 여름호)에서, “최현배의 『조선민족 경생의 도』도 동아일보사의 브나로드운동과 마찬가지로, ‘저자의 순수한 집필의도와는 무관하게’ 일제의 지배이데올로기, 특히 ‘自力更生論’이나 ‘私事化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썼다가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으나 승소했다. 김철은 「갱생(更生)의 도(道) 혹은 미로(迷路) - 최현배의 「朝鮮民族 更生의 道」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제28권(2005)에서, 최현배의 언어내서널리즘과 관련하여 “식민지의 언어 내서널리즘은 제국의 틀 안에서 식민주의자, 또는 다른 민족주의자와의 헤게모니 쟁투를 벌이는 것으로 시종하였다”는 점, “그 과정에서 식민지 권력과 제휴, 협조하거나 동원되는 것은 식

점을 견지해온 이유는 설명력이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민족운동의 두 번째 고조기에 이르면 한국의 현실민족주의는 급격하게 타협적인 성격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만주사변이나 만주국 수립을 전후한 시기 한국의 현실 민족주의는 ‘민족당면이익 옹호’를 앞세우며 일제의 만주침략을 방조하거나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태도나 경향은 1930년대 초반 이봉창 윤봉길 등을 앞세워 의열투쟁을 전개한 한민애국단이나 조중연대론에 기초하여 만주항일무장 투쟁을 전개한 조선인 공산주의자(동북항일연군 세력 포함)들의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노선이자 실천이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만주지역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심지어 ‘한국 민족주의 박멸’을 표방하기도 했다. 1930년대 전반기 민족운동전선은 민족당면이익 옹호론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세력과 조중 민중연대론(프롤레타이라 국제주의)을 주장하던 공산주의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이런 정치관(지형)에 임시정부 세력 등 이른바 비타협 민족주의자들이 끼어들 틈새나 입지는 거의 없었다.

1920년 지방제도 개혁(지방자치제 실시) 과정에서 상당수의 조선인 유력자(특히 지방유지)들이 각종 공직(公職)⁵⁰⁾에 진출하는 등 이른바 ‘군면 단위 관료-유지 지배체제’에 포섭되기 시작했다.⁵¹⁾ 이때부터 일제하의 지방유지(공직자) 집단은 다양한 자치(자문)기구나 공직기구 등을 매개로 자신들의 사적(私的) 이익, 혹은 ‘지역’이나 ‘민족’의 공적(지역적 민족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는데,⁵²⁾ 이들 집단의 대표적인 ‘공적 활동’은 △ 도청, 학교, 세무서 등 관공서 유치 △ 철도와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 자본 유치 △ 수리조합 및 삼림조합 설치 반대 △ 호별세 등 각종 부과금 및 부역 동원 △ 공장 유치 및 시장 설치 허가 등을 둘러싼 민원·진정 활동 등이었다. 어찌보면 이런 사실은 ‘협력 저항이론’의 적실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제하의 유지집단을 협력과 저항의 포괄적 주체(유력자집단, 혹은 엘리트집단)로 상정하는 경우, 일제하의 민족해방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혁신청년집단과 민중들의 정치적 위상이나 역할에 대한 설명이 모호해질 수 밖에 없다.⁵³⁾

지방 유지집단과의 정치적 연대나 타협은 일제시대나 해방 이후의 정치사를 서술할 때 반드시

민지 언어 내셔널리즘의 일상적인 조건이었다”는 점 등을 강조한 바 있다.

50) 요즘에는 흔히 관직과 공직, 관서와 공서를 통칭하나, 일제시기에는 官과 公을 법률적 제도적으로 엄격히 구분했다.

51) 藤村德一이 편찬한 『朝鮮公職者名鑑』(朝鮮圖書刊行會, 1927)은, ‘총독부직원록’과 ‘공직자명감’을 각각 ‘인작록(人爵錄)’과 ‘천작록(天爵錄)’이라 비유하면서, “조선에 있어서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바치는 희생”을 운운하고 있는데, 두 개의 명부는 ‘관료-유지 지배체제’의 골간을 구성하는 이른바 ‘유지(유력자)명부’에 다름 아니었다. 지나친 단순화일지는 모르나 1927년 현재 조선사회는, △ 8만 내외의 식민지 관료집단(조선인 하위 관료가 전체의 절반을 약간 상회했음)과 △ 10만 내외의 유지(공직자)집단, 즉 ‘朝鮮 中流 以上の 略 十萬名 人士’(위의 책, 「서문」, 2쪽)에 의해 지배되던 식민지사회였다. 『조선공직자명감』에는 전국 13도, 12부, 220군, 2,503면의 「도평의회원」, 「부협의회원」, 「각부 학교조합 및 학교평의원」, 「각부 정동총대」, 「군 학교조합」, 「군학교평의회 의원」, 「면협의회원」, 그리고 「상업회의소의원」, 「의용소방조두」, 「농회간부」, 「수산회간부」, 「수리조합간부」, 그리고 「은행」, 「금융조합」, 「금융신탁업」, 「보험회사」, 「전기공업」, 「철도·운송·창고」, 「제조공업」, 「농림수산 및 공업」, 「緒名(허가된) 청부업자 및 재료상」의 명단이 실려 있다.

52) 지수걸, 「(식민지에서 산다는 것 - 생존, 순응, 저항, 지방유지의 식민지적 삶」, 『역사비평』 90호 (2010년 봄); 한상구, 『일제시기 지역주민운동 연구 - 지역 주민대회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등 참조.

53) 지수걸, 「일제하 지방통치 시스템과 군 단위 ‘관료-유지 지배체제’ - 윤희동 저, ‘지배와 자치’에 대한 논평」, 『역사와 현실』 63호(2007. 3); 「일제시기 충남 부여·논산군의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III - 1920·1930년대 ‘식민지적 근대’와 한국인의 대응』(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공동연구총서 12)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근대 이행기 농촌사회 변동과 지방유력자층의 정치사회 활동」, 한국사연구회 편,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제3판 한국사 연구 입문)』(지식산업사, 2008) 등 참조.

주목해야 할 대목임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동아일보와 천도교 신과 집단 등의 주도로 자치운동이 활성화될 때 조선공산당이 1926년 12월 ‘2차당대회’를 통해 ‘자치운동 추진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당시 조선공산당이 ‘민족당 수립’을 위한 연대(포섭)의 대상을 선정할 때, 타협이나 비타협 여부보다는 누가 더 세력이 크고 활동력이 있는가를 더 중시했음을 보여준다.⁵⁴⁾ 당시 조선공산당의 실세였던 정우회가 1926년 11월 선언을 통해, “타협과 항투를 분리시키거나 개량과 혁명을 대립시켜선 안 된다”⁵⁵⁾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곧바로 자치운동 계획을 철회하고 ‘자치주의 견제론’이나 ‘기회주의 배격’ 등을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고조기운동을 주도한 조선 공산주의자들도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일반적 흐름(코민테른의 좌경노선)처럼 민족주의 세력을 주요 타격대상으로 간주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국내의 민족주의 세력은 신간회 해소투쟁 이후 이른바 ‘민족 당면이익 옹호’를 표방하며 표현단체재건운동을 전개하다가 전시총동원체제가 수립될 즈음 대부분 민족운동 전선을 이탈하고 말았다.⁵⁶⁾ 표현단체 재건운동은 신간회 해체 이후 국내의 민족주의자(특히 동아일보계 인사)들이 주도한 지극히 타협적인 민족운동이었다. 하지만 조직 결성에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 지지도 거의 받지 못했다.⁵⁷⁾

“참정권론자나 자치론자나 위임통치론자나 군단위 관료-유지 지배체제에 포섭된 지방유지집단을 타격하거나 배제하거나 고립시키지 않고, 이들 세력이나 집단을 ‘정치적 경합과 연대의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비식민화의 한 흐름’으로 받아들였다면,⁵⁸⁾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정치적 경합과 연대를 통해 그 나름의 정치 역량이나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면, 일제하의 민족운동이나 해방 이후의 통일민족국가 수립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마찬가지로 분열과 대립, 분단과 전쟁으로 귀결되고 말았을까?” 물론 국외에서 임시정부운동이나 독립군운동을 지속한 세력이나 집단, 특히 임시정부 세력(임정 법통론자, 또는 봉대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일 것이다.⁵⁹⁾ 하지만 해방후에 벌어진 분단과 전쟁의 비극을 감안할 때 이런 상상도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발제자가 앞서 국민대표회의 시기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해체 절차가 필요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도 이같은 도발적인 상상 때문이었다. 주지하듯이 『3·1 민족해방운동 연구』는 상해임시정부 정통론(법통론)을 부정하면서, 국민대표회의 이후 상해임시정부가 ‘하나의 독립운동단체로 전략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비식민화 경향이나 해방후 통일민족국가 수립과 관련하여 벌어진 일련의 비극적인 사태를 감안하면, 이런 문제제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⁶⁰⁾ 일제시기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해체 결의와 더불어 민족운동 정당이나 단체간의 경

54) 윤효정, 『신간회 운동 연구』(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43-57쪽 참조. 당시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경계하고 배제한 것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력도 약하고 활동력도 별로 없는 ‘국내외의 비타협 민족주의자’들이었다.

55) 홍종욱, 앞의 논문, 311쪽 재인용. 홍종욱은 이런 관점에서 신간회운동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신간회는 자치론 비판을 내걸었지만, 식민지에서 합법적인 정치활동이 과연 가느안가라는 의문에서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었다.”

56) 지수걸, 「1930년대 초반기(1930~1933) 社會主義者들의 民族改良主義 運動 批判」, 학술단체협의회 편, 『80년대 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서울: 역사비평사, 1988) 참조.

57) 윤덕영, 「1930년대 동아일보 계열의 정세인식 변화와 배경」, 『사학연구』 108(2012) 참조.

58) 홍종욱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청년회에서 활동한 김명식은 조선총독부의 지방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3부(府)이지만 조선에서는 특별히 13부를 두어 먼저 널리 각 지방의 중심지를 비식민지화할 계획은 이미 성공했고, 새로이 40읍을 거의 비식민지화했다”는 주장을 펼친 바가 있었다고 한다.

59) 홍종욱은 별다른 설명 없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망명정부’라 호명했으나(앞의 논문, 308쪽), 이는 착오나 실수라 여겨진다.

60) 박지향은 『제국주의 -현실과 신화-』에서, “제국의 정치적 발전은 협력과 저항의 역동적 균형”이라는 점, “식민지 민족운동의 승리는 항상 지역적, 국제정치적 사건의 전환을 잘 이용함으로써 가능하였다”는 점

합과 연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면... 그러나 현실은 이와 크게 달랐다.

■ 해방 이후 미소의 분할점령 하에서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미소의 합의, 즉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것이었다. 특히 “미소공위와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대표가 모여 조선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것, “임시정부 수립 후 5개년 간 4개국(미영중소)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것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은 어찌보면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식민화의 한 방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삼상회의 안은 미소와 좌우익 세력의 대립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현실화될 수 없었다. 해방후 통일민족국가 수립의 최대 걸림돌은 법통론을 표방하던 상해임시정부와 ‘가능의 정치’에 무능했던 조선공산당(노동당) 세력의 정치적 경직성이었다.

해방 직후 한반도는 미소의 분할 점령 상태 하에 있었다. 따라서 한반도에 새로운 국가나 정부를 수립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미소의 합의, 즉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한국문제와 관련한 합의, 즉 “한국내의 정당사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한국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 뒤 ‘최장 5년 기한의 4대국 신탁통치’를 거쳐 한국을 독립국가화한다”는 합의는 정치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신탁통치(信託統治)란, “유엔의 신탁을 받은 국가가 유엔 총회 및 신탁통치 이사회의 감독을 받아 일정한 지역이 자체적으로 통치 능력을 갖추 때까지 대신 통치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탁통치 제도와 관련한 「국제연합헌장 제77조」(인터넷 문서 참조)의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신탁통치제도는 신탁통치협정에 의하여 이 제도에 두게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범주의 지역에 적용된다.
- 가. 현재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
 - 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적국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지역
 - 다. 시정에 책임을 지는 국가(states responsible for their administration)가 자발적으로 그 제도에 두는 지역

- ② 위의 범주안의 어떠한 지역을 어떠한 조건으로 신탁통치제도에 두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금후의 협정에서 정한다.

위임(mandate)과 신탁(Trusteeship)은 구별해야할 개념이기는 하나, 비식민화 경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비슷한 결을 가진 식민지 문제 처리 방식이었다.⁶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 세력이

등을 강조한 바 있다.(박지향, 앞의 책, 43쪽) 反求諸己의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식민지 민중의 저항운동을 중심으로 민족해방운동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심부와 주변부 상황에 대한 총체적 이해, 또는 협력과 저항에 대한 통일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박지향의 지적은 우리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여겨진다.

61) 이용재, 「식민제국의 해체와 제3세계의 대두」, 『세계화시대의 서양현대사』(아카넷, 2009) 참조. 이용재는 이 글에서 제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까지 비식민화 경향을, 「탈식민화와 민족해방 사이」, 「식민지 해방을 향하여(기로에 선 식민제국, 식민제국의 대응양식)」, 「아시아의 탈식민화」, 「아프리카의 탈식민화」, 「탈식민화 이후」 등의 소제목 아래 요령 있게 정리하였다.

신탁통치, 달리 말하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격렬하게 반발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해방 이후는 물론이고 일제시기부터 임시정부를 일종의 정권기관이나 망명정부로 간주해온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다.

해방 직후 시기 미소와 좌우의 정치적 이해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통일국가(정부) 수립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처음부터 지 난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도 누가 먼저, 언제 어떤 형태로 이를 깨버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청일, 러일전쟁 시기처럼 당시도 주변 열강의 공동관리나 분할지배가 현실화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 등 임시정부 세력은 임시정부 법통론을 비타협적으로 고수함으로써 의도와는 다르게 분단정부의 수립에 기여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그 결과 1946년과 1947년 미소공위가 두차례 소집되었으나 위 합의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 즉 “한국의 민주주의적 정당 및 사회 단체와 협의하여 임시정부 수립안을 마련하는 작업조차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⁶²⁾

해방 후 상해임시정부 세력이나 조선공산당 세력이 좀더 유연하게 통일 민족국가 수립문제에 접근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국민대표회의 때 상해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해체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최대한 양보하여 중경임시정부를 구성할 때 임정 법통론을 고집하지 않고 좀더 다양한 정치세력을 규합하여 새로운 임시정부를 구성했다면, 그리고 문화정치 공간에서 국내외의 민족운동 세력이 해방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실세(이승만 등 독촉세력이나 김성수 등의 한민당 세력 등등)들과 함께 정치적 경합과 연대의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면... 해방 이후의 정치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제대로 기념하려면 과거에 대한 비판적 성찰 가운데 이런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맺음말

1919년과 1920년은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의 첫 번째 고조기였다. 이 시기에 전개된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만주 독립군 운동 등은 일제시대사는 물론이고 민족해방운동사의 분수령적인 사건이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첫번째 고조기의 운동들을 통해 ‘대한 국민’은 자신의 독립 의지와 역량을 세계만방(국제사회)에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일제하의 ‘민족해방운동’이나 해방 이후의 ‘자주적 통일민족국가수립운동’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 (방법으로)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카이로회담이나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의도 이런 배경 가운데서 형성된 것이었다.

민족대표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첫 번째 고조기 운동의 구심(지도기관)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건국절 논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3·1운동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따지는 작업은 결코 녹녹치 않다. 가령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거나,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다”라는 서술은 여러 가지 억측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인과관계 설정은 첫 번째 고조기 운동과 국제정세 변화의 관련성, 특히 고조기 운동의 성격과 의미를 드러내는 서술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1919년 3월

62) 미소공위와 좌우합작운동 실패 이후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여, 유엔 총회에서 한국총선 및 정부 수립 후 양군 철퇴안(1947년 11월)이 가결되었으나, 소련과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유엔 소총회 남한만의 총선거안(48년 2월)을 가결시켰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의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의 민족해방운동

부터 4월 초순 경까지 진행된 독립선언과 만세시위 활동, 그리고 임시정부를 매개로 한 다양한 외교독립운동은 원인과 결과로 따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동시성, 연관성을 가진 사건으로 이해해야 그 성격과 의미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른바 ‘비식민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식민지 민족 내부에서도 동화, 자치, 독립운동 등이 활성화되었다.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제도도 이런 경향을 반영하여 안출된 것이었다. 이런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회의에 민족(국민)대표를 파견하거나 국제연맹이나 각국 정부에 독립청원서나 건의서 등을 보내는 활동을 전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워싱턴체제가 성립된 이후 민족운동의 지도기관은 임시정부가 아니라 정당 사회단체가 되어야 옳았다. 1923년의 국민대표회의, 1920년대의 민족단일당운동이나 정당설립운동 등은 이런 추세를 반영한 운동들이었다. 1930년대 초반 두 번째 고조기 운동이나 해방 이후 인민위원운동 등 통일민족국가 수립운동을 주도한 것도 1920년대 ‘문화정치’ 공간에서 성장 발전한 정당이나 사회단체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임시정부는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오히려 정권기관(망명정부)적인 성격을 강화하였다. 국내외의 민족운동 과정에서 상해임시정부 해체론이 끊임없이 대두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일제시기부터 임시정부 법통론을 고수하며 좌우연합이나 통일전선운동을 끊임없이 방해했다. 국민대표회의 이후 임시정부는 민족운동의 디딤돌 역할보다는 각 정당이나 정치단체 간의 정치적 경합과 연대의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임시정부 세력도 1930년 한국독립당을 결성하였으나 국내의 정치나 운동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

첫 번째 고조기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주류는 민족개량주의자, 혹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었다. 하지만 국내외의 비타협 민족주의 세력과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현상이나 세력을 무시하며 경직된 전략노선을 실천하였다. 신간회의 설립이나 해소투쟁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비타협민족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은 이들과 경합하고 연대하기 보다는 타격하고 고립시키는 일에 몰두할 뿐이었다. 다양한 정당이나 정치결사를 조직한뒤 서로 정치적 경합과 연대의 경험을 축적해야만 해야 옳았다. 해방 이후 미소의 분할점령 하에서 나타난 정치지형이나 힘관계 등을 감안하면 이런 생각이 더욱 간절해질 따름이다.

3·1운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 『3·1운동 100년(전5권)』의 「총론」도 강조하고 있듯이 당연히 지배와 저항, 민족과 반민족 등의 이분법적인 역사인식은 물론이고 남북한의 배타적 정통론도 극복해야 한다. 건국절 논쟁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론도 마찬가지이다. 앞서도 강조했듯이 건국일을 확정하는 문제는 사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다. 굳이 반드시 ‘건국절’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과거 역사를 짐이 아니라 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전환시키려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유연한 역사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 스스로가 다양한 역사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다른 길은 없었는가?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역사 필연론이나 법칙론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사 교육과정은 오래전부터 ‘한국사와 세계사의 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학계는 그런 교재를 편찬할만한 역량이 없다. 통합을 강조하며 편찬한 교과서들도 그저 「당시의 세계」 정도의 한담을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연구성과도 많지 않고, 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다. 뜬금없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한국사와 세계사의 관련성을 깊고 넓게 탐구하는 학풍을 조성하려면 동·서양사, 한국사(학과, 학회지, 학계)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학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 1차 세계대전 말 유럽의 국제정치와 민족자결주의

노 경 덕 (이화여대)

- I. 서론
- II. 유럽 좌파 진영의 민족자결주의론 논쟁
- III. 브레스트-리토프스크 회담과 민족자결주의
- IV. 결론

제 1차 세계대전 말 유럽의 국제정치와 민족자결주의

노 경 덕 (이화여대)

I. 서론

20세기 현대사에서 1918년 1월 발표된 미국 대통령 윌슨의 14개조 평화원칙 연설만큼 큰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온 연설도 없을 것이다. 특히, 민족자결주의지지 의사를 밝혔던 제 5조는 열강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상태에 놓여있던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해 보였다. 다음 달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라는 명확한 표현까지 삽입한 연설을 통해 그 뜻을 다시 한번 표명했을 때, 제국주의 시대의 끝은 멀지 않은 것 같았다. 그로부터 1년 후 제 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파리 강화회의를 거치면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식민지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촉발하는 등 세계적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다. 미국 역사가 마넬라(E. Manela)의 표현에 의하면 당시의 세계 정치는 ‘윌슨의 순간’이었다.¹⁾

이런 역사를 반영하듯,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윌슨으로부터 시작해서 윌슨에서 끝난다고 할 만큼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연히 많은 학자들은 민족자결주의 대두의 문제를 미국사 내부의 문제로 환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선, 일군의 미국사가들에게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론은 그의 이상주의적 정치사상의 산물이었다. 그들에 의하면, 프린스턴 대학의 정치학자 윌슨의 사고에는 약소민족의 해방과 민주주의의 세계화라는 이상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이상은 기존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쇠락을 야기했던 제 1차 세계대전이라는 국제정치적 기회 속에서 발현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그 즉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정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 세계적 탈식민화 과정의 지적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²⁾ 한편 이런 이상주의적 해석 대신, 윌슨이 현실주의적 고려, 특히 미국의 세계 대전 직접 참전을 앞두고 유럽의 전황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전략적 고려 속에서

1) Erez Manela, *The Wilsonian Moment: Self-Determination and the International Origins of Anticolonial Na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 이상주의적 해석은 냉전 초기에 미국 학계의 주류 해석을 이루다가 1960년대 이후 쇠퇴한 뒤,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미국 민주주의 수출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던 정치적 배경 속에서 부활했다. 대표적으로 Daniel Patrick Moynihan, *Pandaemonium: Ethnicity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Tony Smith, *America's Miss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wide Struggle for Democracy in the Twentieth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Derek Heater, *National Self-Determination: Woodrow Wilson and His Legac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4); Lloyd E. Ambrosius, *Wilsonianism, Woodrow Wilson and His Legacy in American Foreign Relations* (London: Palgrave, 2002); Thomas J. Knock, *To End All Wars: Woodrow Wilson and the Quest for a New World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Alan Dawley, *Changing the World: American Progressives in War and Revolu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한편 윌슨은 실패한 이상주의자로 묘사했던 현실주의 외교관 키신저의 평가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Henry Kissinger, *Diplomacy* (New York: Simon & Schuster, 1994).

민족자결주의론을 펼쳤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국제정치 이론 중 현실주의에 영향을 받은 이 해석에 따르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곧 적국으로 전선에서 미군과 마주치게 될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선전 도구였다. 다민족으로 구성되고 여러 약소민족을 포함한 이들 제국에게 민족자결주의 제창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실주의적 해석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처음부터 식민지 해방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오로지 이는 미군의 승세와 유럽 적국의 약화라는 현실정치의 목적을 가진 것에 불과했고, 따라서 이후에 대두되었던 반식민지 운동 및 탈식민화 과정과는 중요한 연계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³⁾ 필자의 생각에, 이 두 해석은 모두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상주의적 입장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론 탄생의 국제적 맥락을 전면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민족자결주의론이 유럽에서는 이미 1900년 직후에 정치적 화두 중 하나였다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을 기억해도 그렇다. 한편 현실주의적 설명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론 제기를 국제적 맥락과 관련지어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 상황을 순전히 전황으로만 한정하여 곧 거대한 세계사적 현상이 될 민족자결주의를 전술적 방책의 하나로만 축소해 버린다는 단점을 가진다.

본고는 이상주의 입장의 해석과는 달리 민족자결주의론의 대두를 미국 정치의 전통보다는 국제적 맥락, 특히 당시 유럽의 정치 지평 속에서 찾으려 한다. 또한 현실주의자들과는 달리 그 정치의 지평을 제 1차 세계대전의 전황에 한정하기 보다는 평화 모색, 러시아 혁명, 종전 등의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과 맞물려 진화했던 유럽 정치인들의 담론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전략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론을 당시의 맥락에 위치시켜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고는 민족자결주의론이 19세기 말부터 반제국주의 노선을 펼쳤던 유럽의 좌파 진영에서 먼저 제기되었다는 점과 그들의 논의가 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이후 더 뜨거운 논쟁의 대상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보임으로써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주장의 맥락화 작업을 시작한다. 다음으로 본고는 민족자결주의 담론이 종전 논의를 촉발했던 1917년 러시아 2월 혁명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한다. 필자의 발견에 따르면, 당시 민족자결주의는 유럽 전쟁의 종전 문제 속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었지만, 그 만큼 점점 그것의 반제국주의적 보편적 대의는 희석되고 오로지 전후 유럽 내의 영토 조정 문제를 다루는 원칙으로 한정되었다. 그 해 말 볼셰비키가 사회주의 혁명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 협상을 통해 민족자결주의의 보편적 대의에 다시금 힘을 실어보려 했지만, 그 희석화 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등장했던 윌슨의 잘 알려진 14개조 연설은 자연히 반제국주의 대의 제시보다는 전후 서양 열강의 영토와 이권 처리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3) 윌슨을 현실주의자로 묘사했던 원조는 그 유명한 조지 케넌이었다. George Kennan, *American Diplomacy, 1900-195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본격적인 현실주의적 해석은 반 크로포트 상을 수상했던 레빈의 저작과 마이어의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N. Gordon Levin Jr., *Woodrow Wilson and World Politics: America's Response to War and Revolu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Arno Mayer, *Political Origins of the New Diplomacy, 1917-1918* (New York: Vintage Books, 1970); John A. Thompson, *Woodrow Wilson* (London: Longman, 2002).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더 나아가 윌슨의 외교를 사실상의 제국주의로 규정하는 흐름으로는 William Appleman Williams, *The Tragedy of American Diplomacy* (New York, 1959), Lloyd C. Gardner, *Safe for Democracy: The Anglo-American Response to Revolution, 1913-192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II. 유럽 좌파 진영의 민족자결주의론 논쟁

유럽에서 민족자결주의가 처음으로 공론화되었던 것은 유럽 사회주의자들의 국제 조직인 제 2차 인터내셔널의 제 2회 대회인 1896년 런던 대회에서 부터였다. 이 대회는 민족자결을 소수 민족이 타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라 규정하며, 이에 대한 보편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 같은 인터내셔널의 결정은 그들의 ‘스승’ 마르크스의 유지를 사실상 따랐던 것으로, 그는 일찍이 ‘개별적 민족자결(*Selbstbestimmung*) 과정으로서의 자유’를 지지한 바 있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타민족의 지배를 받는 소수민족이나 식민지인들 역시 프롤레타리아의 경우와 같이 정치적 압제에 시달리는 것이라는 도덕주의적 인식에 기초했던 것으로, 마르크스는 전자의 해방과 후자의 그것을 분리시켜 사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런던 대회는 종속국과 식민지의 독립, 또는 독립 투쟁이 지배 국가, 특히 제국주의 열강의 약화와 쇠퇴 가져올 수 있다는 사회주의자 입장에서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민족자결주의를 지지했다. 따라서 당시 유럽 사회주의자들의 민족자결주의 개념은 단순한 민족주의 발현 이상의 의미를 가진 반제국주의 투쟁이라는 보편적 함의를 강하게 담고 있는 것이었다.

민족자결주의가 보편적인 반제국주의 담론으로 출발하기는 했지만, 20세기 초 유럽의 지평에서 그것은 유럽 내 강대국과 약소국의 문제, 또는 다민족 제국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집중되었다. 런던 대회 이후 민족자결주의를 주요한 정치 의제로 내세웠던 좌파 집단이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종속 국가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또는 다민족 제국 소속의 사회주의자들이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특히, 1898년 창당된 러시아 마르크스주의 정당 러시아사회민주주의노동당의 경우 여타 유럽의 마르크스주의 정당보다 민족자결의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바라보았다. 당시 러시아 제국을 구성하는 총인구 1억 7천만 중에 절반 이상의 숫자가 이른바 대러시아인이 아닌 소수민족(폴란드인 상당수도 이에 포함되었다)으로 분류될 수 있었을 만큼 러시아 제국 내에 민족문제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던 러시아사회민주주의노동당의 제 1차 당 대회 이후, 사실상 실질적인 첫 번째 당 대회라 할 수 있었던 1903년의 제 2차 당 대회(여기에는 폴란드 대표도 참석하였다)는 민족자결의 정치적 권리 지지를 그들의 강령 제 9조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사실상 동유럽 제국 내 피지배 민족 문제를 겨냥한 것이었다.⁴⁾

민족자결주의 논의가 유럽 내부의 문제로 그 초점이 한정되는 과정에서, 좌파 진영 안에서는 이에 대한 지지의 적실성을 두고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폴란드 출신 독일 사민당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런던 대회 직후부터 민족자결주의 지지 결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줄곧 고수했다. 그의 판단에 의하면, 당시 유럽 제국 내 종속국들의 민족자결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혁명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 특히 그의 ‘조국’ 폴란드를 예에 근거했던 룩셈부르크 주장은 역사유물론의 이론적 가르침을 냉정하게 강조하며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도덕주의적 공감과는 거리를 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그에 의하면, 폴란드 독립이 러시아 제국에 타격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사회주의 혁명에 도움이 된다는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판단은 그저 환상일 뿐이다. 러시아 제국은 이미 자본주의 단계로 들어섰다. 역사유물론의 발전 법칙을 따른다면, 그들의 쇠퇴는 폴란드 독립과 같은 정치적 계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심화로부터 초래될 것이다.⁵⁾ 또한, 민족자결주의로 인한 러시아 제국의 해체는 미래에 있을 폴란드의 사회

4) William J. Davidshofer, *Marxism and the Leninist Revolutionary Model* (London: Palgrave, 2014), p. 105.

5) Rosa Luxemburg, “The Polish Question at the International Congress in London,” in *the National Question: Selected Writings*, ed., Horace B. Davi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6).

주의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폴란드는 현재 러시아 제국의 자본에 종속된 상태이고, 그 상태로 폴란드에서는 자본주의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민족자결주의를 통해 폴란드가 독립한다면, 그 과정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같은 독립은 도덕적으로 정당하겠지만, 냉정하게 역사유물론의 시각에서 보자면 자본주의와 산업생산으로의 진보가 멈추어진 것이기도 하다. 향후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은 자본주의와 산업생산 발전을 전제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현재 폴란드의 독립은 역사유물론 발전 법칙 실현의 과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폴란드의 프롤레타리아에게 험난한 이중적 짐을 던져주기도 한다. 즉, 유럽의 막강한 3개 제국과 투쟁을 벌여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폴란드 부르주아가 가진 물질 토대, 즉 미약한 자본주의와 산업생산의 환경 속에서 생존해야 한다.⁶⁾ 마지막으로, 폴란드 문제를 민족자결주의로 푸는 것, 즉 그의 표현에 의하면 ‘사회-애국주의적 해결’은 개별 국가들의 민족 노선을 부각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현재의 정치적 현실에 대해 일관적인 투쟁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인터내셔널은 불가피하게 개별 국가의 현실과 조건에 맞게 탄생한 각국 사회주의 정당들이 국제적으로 연합한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룩셈부르크가 보기에, 이 연합에 중요한 것은 이 개별 사회주의 정당들이 노동자의 민족성이라는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민족자결주의의 독려는 바로 이러한 함정으로 사회주의 정당들을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⁷⁾

이 같은 룩셈부르크의 반민족자결주의 주장은 그가 그의 주저 『자본축적』을 완성하고 난 이후였던 1913년 더욱 정교해졌다. 제국주의의 기원을 이론적으로 설파했던 이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을 집필하면서 룩셈부르크는 국제 정치 문제에 더욱 주목할 수 있었고, 이는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보다 치밀한 이론적인 비판으로 발전되었다. 룩셈부르크는 익명으로 전쟁 중 스위스에서 출간했던 『유니우스 팜플렛』에서 현재의 세계화된 자본주의, 즉 제국주의 질서에서 일국의 독립 전쟁 수행은 ‘실현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국주의 질서 속에, 일국은 ‘근대 [제국주의] 세계 정치와 외교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 하나의 작은 바퀴’일 뿐이다. 그 체계 속에서 일국은 ‘거대한 민족 간 동맹의 일원’에 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민족자결주의 실현은 ‘비현실적’이다.⁸⁾ 민족자결주의는 역사적 상황을 탄다. 그것은 사회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나 가능하다.

러시아의 도전적 논객 레닌이 유럽 좌파 진영 내 민족자결주의의 대표주자로서 떠오른 것은 이 같은 룩셈부르크의 주장을 격렬하게 반박하면서 부터였다. 레닌은 제 1차 세계대전 중 좌파 진영의 반전 운동 움직임 속에서 출간된 ‘민족들의 자결권’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팜플렛,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들의 자결권’이라는 보다 정치화된 문건을 통해, 룩셈부르크와 그의 추종자들과는 다른 민족자결주의 관념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지지의 적실성을 강변했다.⁹⁾ 그 과정에서 레닌은 민족자결주의를 다시금 제 2인터내셔널 런던 대회의 보편적인 반제국주의 담론으로 확장하려 했다. 룩셈부르크 등이 민족자결주의 문제를 주로 유럽, 특히 폴란드 등의 동유럽의 틀에서 바라보았던 것과는 달리, 레닌은 이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현실, 즉 해외 식민지 문제까지 포함시키며 그것의 반제국주의적 대의를 명확히 하려 했던 것이다.

레닌의 민족자결주의 옹호는 크게 두 가지 층위에서 논의되었다. 첫 번째 층위에서 레닌은 민족자결주의 지지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며 따라서 항상 적실한 것이라는 ‘보

6) Deborah Whitehall, "A Rival History of Self-Determination,"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7, no. 3 (2016), p. 727.

7) Rosa Luxemburg, "The Polish Question at the International Congress in London."

8) Rosa Luxemburg, *The Junius Pamphlet*, Chapter 7.

9) Ленин В. И. О праве наций на самоопределение //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ом 25, с. 255–320;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революция и право наций на самоопределение //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ом 27, с. 252–266.

편주의' 주장을 내세웠다. 그에 의하면, 민족자결주의 지지는 현재 유럽 좌파가 가져야 할 대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민족자결주의의 민주주의적 성격 때문이다. 특정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예컨대 사회주의적 개혁이 시작된다고 해도 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진화할 수 없다. 또한, 민족 간의 지배예속 상태에서는 결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상태는 특정 민족주의, 또는 특정 지배 민족의 특권, 특히 민족 부르주아에 대한 지지를 부추기기에, 프롤레타리아 계급도 민족 간의 위계에 따라 서열화되기 쉽다. 당연히 이러한 위계는 국제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진전을 막는다.¹⁰⁾ 따라서 세계는 개별 민족으로 구성되는 독립 국가 단위로 분리되는 것이 당위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자결주의는 민족의 정치적 분리 독립, 더 구체적으로 민족국가 수립의 이념이다. 레닌은 이 형태 이외의 그 어떤 다른 민족자결주의론, 이를테면 일부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문화적 자치 등의 대안은 인정하지 않는다.¹¹⁾

이러한 보편적인 차원에서 민족자결주의 옹호는 사실 레닌의 논리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레닌은 자신의 민족자결주의 옹호 논리를 구체적 역사적 상황이라는 층위 속에서 찾는데 훨씬 더 집중했으며, 이를 그와 룩셈부르크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레닌이 보기에, 룩셈부르크의 민족자결주의 논의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고려라는 핵심 요소를 결여한 채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논리에만 빠져있다. 레닌은 룩셈부르크가 특수한 역사적 국면에서는 민족자결주의, 즉 독립 민족국가 수립 노력이 진보적 기능을 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의 발전의 특정한 국면에서 한 민족을 단위로 국가(그리고 그 안에서 기능하는 민족 부르주아지)는 국내 시장 통합과 자본 축적 확대라는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역사유물론의 원칙을 따르자면, 이 같은 현상은 자본주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진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적 분리 독립, 즉 민족국가 건설 시도를 의미하는 민족자결주의는 특정 역사 발전 단계에서는 역사 진보를 믿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 민족주의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지지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조건에서만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마다 다른 시점에 찾아올 수 있다. 레닌에 의하면, 룩셈부르크는 이와 같은 개별 국가들의 구체적인 특수성을 경시한 채 민족자결주의를 추상적이고 일반론적 수준에서만 논의했고, 그 결과 특정한 역사 발전단계에서 민족자결주의가 수행하는 기능, 즉 자본주의를 성숙케 하는 그것의 경제적 기능을 무시하게 되었다. 룩셈부르크는 민족자결주의를 오직 제국주의의 정치 현실을 통해서만 바라보며, 이의 '실현불가능성'만을 강조했다고 레닌은 주장한다.¹²⁾

레닌은 자신의 민족자결주의 옹호가 민족주의에 대한 맹목적 지지가 아니라는 점과, 또한 단순한 도덕주의적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두 가지로 분류해 그것의 역사적 기능을 따로 논했다. 그는 민족국가 건설 추구라는 민족자결주의의 진보성과 대비해 '봉건적' 민족주의라는 범주를 내세운다. 후자는 러시아 제국의 대러시아주의와 같은 민족주의, 즉 압제 민족의 특권을 유지하려 하는 민족 감정을 말하며, 이는 특정 시점에서 동일 언어로 된 국내 시장 단일화와 그로 인한 자본주의 발전을 매개하는 진보적 민족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피지배 민족과,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전 단계에서 부르주아 체제를 아직 건설하지 못한 이들의 민족주의, 이를테면 폴란드나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 또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주의는 지지받아야 마땅할

10) Ленин В. 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революция, с. 252-3, 256-7.

11) Ленин В. И. О праве наций на самоопределение, 260.

12) Ленин В. И. О праве наций на самоопределение, 258;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революция, 253-4.

것이다.¹³⁾

레닌의 비판 어법이 대부분 그렇듯이, 그의 룩셈부르크 비판도 정교한 이론적 논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까웠다. 레닌의 주장과는 달리, 룩셈부르크의 논의는 앞서 보았듯이 매우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현실에 기초했으며, 동시에 자본의 국제화라는 경제적 현실을 그의 논지 전개에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에게, 현재의 구체적인 역사적 국면은 레닌의 판단과는 달리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적 주장, 즉 민족국가가 자본주의 발전에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이며 이런 국가는 역사유물론의 발전 도상에서 나름의 진보적 기능을 한다는 주장이 부합하는 시대는 이미 아니었다. 그것은 촘촘한 국제 자본의 망과 거대한 동맹 체제 속에서, 민족자결주의라는 도덕주의적 대의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기껏해야 그 국가 민족 부르주아지에 이해에 봉사하게 만드는 역사적 국면일 뿐이다.

사실 레닌은 룩셈부르크의 논의가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경제 기능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수많은 수사적 공격 속에서도, 때때로 레닌은 룩셈부르크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태도도 보이기 때문이다. 레닌이 비판했던 룩셈부르크의 비역사성과 추상성은 후자가 이를 전면적으로 무시했다는 뜻이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그 국가들 간 발전 도상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의미였다. 레닌에 의하면, 룩셈부르크는 개별 국가가 어떤 역사적 시기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역사적 단계를 밟아왔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결국 레닌은 자신과 룩셈부르크와의 차별 지점을 개별 국가의 차이 주목 여부로 규정한 셈이며, 이런 논리는 자연스럽게 민족자결주의의 보편적 적용보다는 국가별 선별적 적용으로 귀결되었다.

민족주의에 눈먼 폴란드의 프티 부르주아에 맞서고자 하는 열정에 폴란드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지나치게 나갔던 것(민족자결주의 반대)은 꽤 이해할 만하다. 어떤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자도 폴란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폴란드 독립에 반대했다 하여 그들을 비판하려 한 적은 없다. 이런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로자 룩셈부르크처럼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강령에 민족자결주의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부정했을 때에만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강조는 필자).¹⁴⁾

이처럼 ‘프티 부르주아 민족주의’가 만연한 폴란드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족자결주의를 지지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러시아와 같은 소수민족 억압 국가에서는 독려되어야 한다는 레닌의 선별론은 사실 그가 쌓아왔던 민족자결주의 옹호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폴란드도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 연대, 그리고 역사 발전에서의 진보성 확보라는 레닌의 민족자결주의 옹호 근거 모두에 부합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내부적 논리 충돌에 크게 개의치는 않았던 것 같다. 모순적이지만 현실적인 정치가이자 이론가였던 그답게, 레닌은 또 다른 논리 제시를 통해 이런 충돌을 넘어섰다. 그는 1915년과 1916년 연이어 발표했던 ‘유럽 연합국을 위한 슬로건에 대하여’와 『제국주의: 자본주의 최후의 단계』에서 불균등 발전이라는 새로운 논리를 제기하며 개별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과 상황의 차이에 주목할 것을 촉구했다.¹⁵⁾

흥미롭게도, 레닌의 불균등 발전 이론은 개별 국가들의 차이 인식에 따른 선별적 정치 전략 선택에만 머무르지는 않았다. 그의 이론은 각국의 불균등한 발전 수준이 세계화된 자본주의, 즉 제국주의에 의해 하나의 체계로 엮어 있다는 인식도 함께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반

13) Ленин В. И. О праве наций на самоопределение, 275.

14) Ленин В. И. О праве наций на самоопределение, 294.

15) Ленин В. И. О лозунге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Европы //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ом 26, с. 351-5.

론적 인식은 민족자결주의를 다시금 보편적 층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 만들었다. 민족자결주의와 그에 바탕을 둔 식민지와 종속국의 독립 운동은 제국주의 체계의 사슬을 끊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레닌은 주장한다. 불균등 발전 이론의 가르침처럼, 개별 국가들이 현재 처한 역사적 단계는 다르고, 그들의 역사적 경험도 다르다. 하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도, 현재 그들은 모두 제국주의 체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가 처한 상황이나 발전 정도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민족자결주의 운동은 반제국주의 혁명 운동이라는 보편적인 중요성을 획득한다. 그것은 룩셈부르크의 진단처럼 단순히 ‘실현불가능’한 운동이 아니라 제국주의 체계를 침식하는 혁명 운동이다. 그리고 레닌의 기대에 따르면, 이것은 연쇄적으로 일어나 세계혁명의 시대를 만들어낼 것이다.¹⁶⁾

이처럼 레닌은 보편적 층위에서 민족자결주의 지지로 출발했다가 이를 특수 층위로 내려 이에 대한 선별적 적용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다시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보편적 독려로 그의 논리를 끝맺음했다. 이 같은 형식 논리적 혼돈은 레닌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의 관심은 더 많은 세계의 프롤레타리아 계급, 지식인, 그리고 식민지인들에게 자신의 결론이 알려져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 1차 대전이 한창이던 당시 그의 반제국주의적 민족자결주의 담론이 사회적 반향을 얻는다는 것은 어려워 보였다. 그와 룩셈부르크의 논쟁으로 요약될 수 있는 유럽 좌파의 민족자결주의 논의는 그 중에서도 급진 계열, 특히 전쟁 반대파들 사이에서만 일어났던 제한된 수준의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유럽의 전쟁,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한 때 유럽 좌파 진영까지도 뒤덮었던 전쟁 지지의 분위기가 그 논의의 확장과 전파를 막는 거대한 장벽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민족자결주의 논의가 보다 더 알려지고 중요한 정치적 의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쟁 지지의 분위기가 드디어 가라앉을 시점, 특히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본격적인 평화 논의가 시작되어 바야흐로 종전 상황을 떠올 수 있게 된 시점에 이르러서였다.

III. 브레스트-리토프스크 회담과 민족자결주의

1917년 3월 러시아 제국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2월 혁명은 장기간의 소모적인 전쟁에 극단적인 피로감을 느끼던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인들에게 종전을 상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비록 혁명 직후 성립한 임시정부는 전쟁 수행 지속을 천명했지만, 러시아인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4월 위기를 겪고 새로이 탄생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자 연정은 종전과 평화 모색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특히 4월 9일 멘셰비키 소속으로 당시 정부에 입각했던 체리첼리는 그 간의 전쟁 노선 및 전쟁 목표에 대한 수정을 시사하며 전면 평화론을 제창했다.

체리첼리의 성명은 협상국 측에서 민족자결주의 담론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공식 문건이었다. “자유 러시아의 목적은 외국 민족들에 대한 지배도 아니며, 그들 민족의 자산에 대한 약탈도 아니며, 외국 영토에 대한 폭력적 점령도 아니다. 그것은 민족들의 자결을 근간으로 한 항구적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러시아 인민은 다른 인민들의 희생시키며 대외적으로 팽창하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노예화하거나 억압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¹⁷⁾ 이 같은 러시아 임시정부의 주장은 당시 교전 당사국들의 외교 라인을 뜨겁게 달궜고, 이들 국가들의 공적 영역과 지식 사회에

16) 위의 책. William J. Davidshofer, pp. 117-8.

17) Arno Mayer, *Political Origins*, p. 75.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그것은 특히 민족자결주의 담론이 유럽의 공적 영역에서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¹⁸⁾

하지만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한 무병합 무배상을 종전과 전후 질서 수립의 원칙으로 삼자고 주창했던 चे리첼리의 성명은 제국주의 일반을 겨냥한 반대 선언이었다기보다는 유럽 전쟁의 종전 문제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었다. 그의 ‘민족들의 자결을 근간으로 한 항구적 평화’ 건설이라는 메시지는 제 1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이 낳은 유럽 지형도의 변동을 해결하자는 의미였다. 즉, 이는 전쟁과 군사 점령으로 달라진 국경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민족의 자결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었지, 19세기 말 이래 진행되어온 제국주의의 전 세계적 확장 침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담고 있는지는 불분명했던 것이다.

이러한 불분명함은 혁명 러시아의 선도적인 주장에 빠른 반응을 보였던 독일 제국 의회의 선언에서도 드러났다. 1917년 7월 독일 의회는 이른바 7월 선언을 채택했다. 발표 직후 독일의 군부를 비롯한 보수파가 크게 반발했던 이 선언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색을 보였던 독일 가톨릭 세력이 일시적으로 의회 내 사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과 전쟁에 대한 회의감을 공감하는 과정에서 발표된 것이었다. 당시 큰 국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훗날 윌슨이 칭송하기도 했던 7월 선언은 러시아의 그것처럼 민족 자결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 민족들의 지속가능한 화해’와 ‘공존’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에 동조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선언의 초점은 역시 चे리첼리의 그것처럼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유럽 문제, 즉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 그리고 정치, 경제 또는 재정적 통합 침해’ 문제의 수습에 놓여 있었다.¹⁹⁾ 다시 말해, 그들의 민족자결주의는 보편적인 반제국주의 담론은 아니었던 것이다. 7월 선언이 물고 온 정치적 동요 속에 새로이 재상이 되었던 미카엘리스가 이 선언을 재해석하며 내린 결론은 이 점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다. 7월 선언은 국제적 ‘동의’와 ‘타협’을 지지했지만, 그 지지는 어디까지나 ‘유럽 대륙과 해외 식민지에 대한 독일 제국의 사할이 달린 이해관계’의 보장을 위함이라는 것이다.²⁰⁾

1917년 이른바 10월 혁명 직후 발표된 레닌과 볼셰비키 정권의 ‘평화포고’는 유럽의 민족자결주의를 유럽 내 전후 문제 해결이라는 특수한 수준을 넘어서 보다 보편적인 수준으로 끌고 가려던 시도였다. 11월 8일, 볼셰비키의 임시 정부 전복이 있었던 다음날 발표되었던 이른바 ‘평화포고’는 무병합, 무배상 원칙에 의한 종전과 구식 비밀 외교의 종식을 선언하는 한편, 전후 신질서 건설 원칙으로 반제국주의적 민족자결주의를 제시하였다. 일견 चे리첼리 선언과 유사한 내용 같았지만, 차이는 명확히 존재했다. 레닌의 평화포고의 경우, 제 1차 세계대전 중의 유럽 지형도의 변화로 문제를 국한시키지 않고 이를 확장했던 것이다. 레닌에 의하면, 유럽의 국가들이 무조건 포기해야 할 병합은 ‘그런 강제적 통합이 일어났던 시점과 관계없는’ 것이다. 달리 말해, 그것은 제 1차 세계대전 중의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대전 이전 제국주의의 영토 병합과 식민지 건설도 분명히 포함될 것이다. 레닌은 식민지 합병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쉽게 판별할 수 있었다. 레닌에 의하면, 그 병합은 ‘특정 민족의 발전의 정도나 후진성과 관계없이’ 그리고 ‘그 민족이 유럽에 속해 있는 것인지, 또는 멀리 떨어

18) Borislav Chernev, “The Brest-Litovsk Moment: Self-Determination Discourse in Eastern Europe before Wilsonianism,” *Diplomacy & Statecraft* 22, no. 3 (2011), p. 372; Idem, *Twilight of Empire: The Brest-Litovsk Conference and the Remaking of East-Central Europe, 1917-1918*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7).

19) Ernst Rudolf Huber ed., *Dokumente zur deutschen Verfassungsgeschichte*, Vol. 2 (Stuttgart: Kohlhammer Verlag, 1961), p. 471.

20) Wolf Dieter Bihl ed., *Deutsche Quellen zur Geschichte des Ersten Weltkrieges*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1), pp. 297-98.

진 해외 국가인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포기되어야 한다. 이처럼 해외 식민지의 독립까지 포함했던 레닌의 보편적 반제국주의 주장은 한편으로 당시 식민 제국의 주역 협상국의 위정자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동시에 협상국 내에서 전쟁에 회의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좌파 지식인을 위시한 일부 여론은 이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기 시작했다.²¹⁾

흥미로운 것은 이 국면에서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강력히 지지했던 집단이 레닌과 볼셰비키 외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예상 밖에도, ‘다민족국가’ 오스트리아-헝가리와 독일 제국의 외교관들이었다. 소비에트 러시아와 본격적인 휴전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이었던 1917년 11월 말,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외무부 수장 체르닌 공은 민족자결주의론이 향후 펼쳐진 정전 협상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한 공식적지지 여부를 독일 측과 협의하기 시작했다. 체르닌의 생각에, 민족자결주의는 과거 러시아 제국 소속의 비러시아 민족들을 새로운 소비에트 국가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특히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처럼 독일 일계가 지배층을 형성하고 고급 민족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지역은 더욱이 민족자결주의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와의 거리를 벌리고 반대로 오스트리아-헝가리와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폴란드의 경우처럼 민족주의가 발달하고 반러시아 감정이 강한 지역들에게도 민족자결주의는 러시아 세력의 약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반면에, 체르닌은 민족자결주의 독려가 자신의 나라, 즉 오스트리아-헝가리와 같은 다민족 제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은 체르닌이 순진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민족자결주의의 신축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일례로, 오스트리아-헝가리는 동맹국이 승리를 거두며 전쟁이 끝난다면, 민족자결주의를 일부 인정하며 현재의 이중 제국을 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의 삼중 제국으로 확장시킬 계획을 이미 논의 중이었다. 또한 제국에 포함된 국가들에 문화적 자치 범위를 늘리는 것 역시 검토 중이었다. 이런 문화적 자치는 앞서 보았듯이 심지어는 오스트리아의 일부 좌파들도 지지했던 모델로서, 체르닌은 이 역시 민족자결주의의 실현 방법 중 하나라 여겼던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 러시아 제국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신생 소비에트 러시아의 세력 확대를 막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오스트리아-헝가리에게 주는 부담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²²⁾

1917년 12월부터 소비에트 러시아와 동맹국 간에 러시아 제국의 서쪽 국경 지역에 위치한 브레스트-리토프스크에서 시작된 정전 협상은 이렇게 민족자결주의를 지지(?)하는 두 세력 간의 만남의 장이 되었다. 당시 볼셰비키의 비밀 외교 폐지와 공개 외교지지 원칙에 따라, 회담에서 제시된 그들의 주장은 곧바로 전 세계에 공개되며 모두가 주목하는 정치 의제로 부상할 수 있었다.²³⁾ 미국의 역사가 아르노 마이어의 표현에 따르면, “민족자결주의가 당시 전시 외교에서 지배적인 관심사가 되었던 것은 브레스트-리토프스크에서의 볼셰비키의 역설(力說) 때문이었다.”²⁴⁾

하지만 소비에트 러시아의 민족자결주의관이 반제국주의와 전 세계의 식민지 해방이라는 보편적 지향점을 가졌던 데에 비해, 동맹국의 입장은 이를 종전 이후 유럽 내 영토 재편 문제로 국한하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 이 두 가지 버전의 민족자결주의는 회담 초기부터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며 드러났다. 휴전 협정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강화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제시되었던 소비에트 러시아의 이른바 요페 6개조는 그들의 보편적 방식의 민족자결주의 이해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대표단 책임자 요페는 레닌의 평화포고의 무배상, 무병합 원칙에 입각한 전면

21) 노경덕, 「러시아 혁명과 민주주의 외교」, 『마르크스주의연구』 48 (2017, 겨울호), pp. 153-5.

22) Borislav Chernev, “The Brest-Litovsk Moment,” p. 372.

23) Richard K. Debo, *Revolution and Survival: the Foreign Policy of Soviet Russia, 1917-8*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9), pp. 49-50.

24) Arno Mayer, p. 293.

강화를 주장함과 동시에 반제국주의적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천명했다. 그는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유럽 지형도의 변화를 수습하는 데에 점령군의 철수와 피점령 민족의 국민투표에 의한 결정, 그리고 소수 민족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하였지만, 마지막 제 6조에서 이 원칙들을 ‘식민지 문제들’에도 적용시킬 것은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²⁵⁾

흥미롭게도 12월 25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외상 체르닌은 “4국 동맹 대표단은 영토의 강제적 취득과 전쟁 배상 없이 즉각적인 전면 강화 동의한다”며 소비에트 러시아의 6개조에 동의할 의사를 밝혔다.²⁶⁾ 요페를 비롯한 볼셰비키 대표단은 그들의 ‘혁명적’ 선언에 대해 동맹국 측이 이렇게까지 흔쾌히 동의를 표명할지 예상하지 못하고, 이를 자신들 외교의 승리로 자축하기까지 했다. 미국 역사가 데보의 표현에 따르면, 볼셰비키 대표단은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²⁷⁾ 하지만 동맹국의 민족자결주의 이해가 볼셰비키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점은 이미 선물을 주는 순간에도 드러나 있었다. 다만 요페 등이 그것을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었다. 사실 볼셰비키 대표단이 동맹국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직후에, 체르닌은 민족자결주의 개념에 대한 그들의 독특한 이해방식을 시사한 바 있었다. 그것은 요페의 6개조 중 제 6조에 대한 동맹국의 부가 설명에서 잘 나타난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제 6조가 정치적 미래에 대해 가지는 해당 민족의 자기 결정권을 식민지에도 적용시킬 것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동맹국은 그럴 의사가 없었다. 그들 주장의 핵심은 ‘전쟁 중 강제 점령 또는 획득된 식민지 영토’는 본국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었다. 그 반환을 위한 해당 식민지인들의 결정이 동맹국이 생각하는 민족자결주의였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독일이 일본 등의 협상국 측에 상실했던 독일 식민지 영토를 반환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했다. 즉,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은 식민지 영토 역시 무배상, 무병합의 원칙에 따라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 원상 복구의 근거를 해당 식민지인들의 ‘자기 결정’, 즉 민족자결에서 찾았던 것이었다.²⁸⁾

민족자결주의를 지지하면서도 제국의 식민지 이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일견 모순적인 동맹국의 주장은 당시의 맥락에서는 심지어 볼셰비키 대표단에게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들은 동맹국의 제 6조 해석에 대해 일체의 비판을 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독일 식민지를 점령한 타 제국 군대는 그 식민지에서 철수해야하고 식민지의 운명은 그 식민지인들이 결정해야한다는 것은 점령 군대의 철수, 무배상 및 무병합, 그리고 즉시적인 전면 강화라는 자신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했다.²⁹⁾ 요페를 비롯한 볼셰비키 대표단은 군대 철수 후 식민지인들이 제국 복귀보다는 독립을 원할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맹국 주장에 대해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독일 등 동맹국은 자신들의 식민지, 특히 독일의 남태평양 식민지의 경우 민족자결의 원칙을 통해 독일 제국에 복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하튼 볼셰비키는 12월 25일의 동맹국의 선언을 전면 강화와 민족자결주의 실현을 위한 청신호로 받아들였다. 다만 동맹국의 이 같은 동의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었다. 체르닌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제안에 대한 최종적 합의를 그들과 개별적으로만 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가 속했던 협상국의 다른 국가들의 동의도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는 노련한 외교관이었던 체르닌의 탁월한 정치 감각의 표현으로써, 브레스트-리토프스크 회담의 지위를 단순한 러시아와 동맹국 간의 협상 수준이 아니라 전면 강화와 민족자결주의라는 보편적 대의를 위한 공간

25) *Proceedings of the Brest-Litovsk Peace Conference: The Peace Negotiations between Russia and the Central Power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18), pp. 39-40.

26) *Proceedings of the Brest-Litovsk Peace Conference*, p. 40.

27) Richard K. Debo, p. 52.

28) *Proceedings of the Brest-Litovsk Peace Conference*, p. 41.

29) *op. cit.*, p. 42.

으로 격상시키면서, 이에 불참한 영국과 프랑스에 도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이었다.³⁰⁾ 러시아의 단독 강화 시도를 비판해 왔던 협상국들 입장에서는 이 회담에서 나오는 민족자결주의 원칙 동의 여부에 적극적으로 화답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체르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협상국의 답은 오지 않았고, 브레스트-리토프스크는 민족자결주의를 지지하는 도덕적인 정치 세력들만의 무대가 된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다.³¹⁾ 이는 협상국 측에게는 도전이었다. 그들은 브레스트-리토프스크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도 최소한 민족자결주의에 지지 의사가 있음을 알려야 했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 수상 로이드 조지는 ‘민족자결주의’와 ‘피지배민들의 동의’라는 개념을 서둘러 천명했다. 이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미국의 응답도 나왔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1918년 1월 초 윌슨의 14개조 연설이었다.

윌슨의 14개조 중 일반적으로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천명했다고 알려진 제 5조는 사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출현했던 것이다. 제 5조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브레스트-리토프스크에서의 소비에트 러시아와 동맹국 측의 민족자결주의론에 답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모든 식민지 이권의 조정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열린 자세로 그리고 완전히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원칙은 주권의 문제와 같은 모든 식민지 문제들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식민지 주민의 이해관계가 식민지 정부의 주장과 동등한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식민지 정부의 법적 권한은 향후에 결정될 것이다.³²⁾

여기서 핵심어는 ‘식민지 이권’의 ‘조정’이었다. 이 이권의 조정에 식민지인들의 입장을 식민지 당국의 주장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는 브레스트-리토프스크에서 독일 등 동맹국이 주장한 수준의 식민지 이권 옹호 논리에 ‘주권의 문제’라는 표현만을 삽입한 것에 불과했다. 그의 연설에서 민족자결에 입각한 제국주의 질서의 종식이라는 보편적인 대의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소비에트 러시아 대표단도 오해했던 독일의 주장, 그리고 이를 반복했던 윌슨의 주장이 레닌이 평화포고에서 표명했던 보편적인 민족자결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레닌의 민족자결주의가 근본적으로 제국주의 질서의 종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면, 독일과 미국의 버전은 식민지 이권의 유지 또는 재조정을 위한 절차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었다.

해가 바뀌어 재개되었던 브레스트-리토프스크 회담에서 동맹국 측과 소비에트 러시아 측의 민족자결주의 해석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비록 소비에트 러시아의 물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서로 간의 합의가 회담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던 1917년 연말과는 달리, 재개된 회담에서 동맹국 측은 보다 분명하게 그들의 민족자결주의 해석을 표명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다시 이 문제를 유럽 내 영토 조정의 문제로 국한했다. 동맹국 측은 특히 과거 러시아 제국의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동유럽 지역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소비에트 러시아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앞서 언급한 요페의 6개조에 따른 소비에트 러시아 측 의견에 따르면, 전쟁 중 들어온 점령 군대는 철수해야 하고, 이들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상태에서 해당 민족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민족자결주의의 실현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한다면, 동맹국 측 군대는 그들이 점령했던 과거 러시아 제국의 모든 영토에서

30) Borislav Chernev, “The Brest-Litovsk Moment,” p. 374.

31) John Wheeler Bennett ed., *Brest-Litovsk: the Forgotten Peace* (London: MacMillan, 1939), pp. 118-122.

32)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18Supp01v01/d5>

철군해야 하며, 그 후 그 지역민들의 국민투표는 이들의 독립 또는 제국 잔존 등의 주권 문제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독일이 보는 시각은 달랐다. 일례로, 과거 러시아 제국 소속 지역들, 이를테면 폴란드 중동부나 에스토니아 등은 그 곳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역사적으로 정당성을 쌓아온 대의체들이 이미 전쟁 도중에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그곳은 현재 소비에트 러시아의 영토라고 간주될 수 없기에, 동맹국 군대가 철수해야만 하는 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국민투표는 동맹국 군대의 존재와 상관없이, 이런 대의체들의 주도 아래 치러질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이들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³³⁾

이 같은 입장 차이 속에, 1918년 1월 새로이 소비에트 러시아의 협상단 대표가 된 트로츠키는 독일 외상 쾰만과 민족자결주의의 정의를 놓고 기나긴 논쟁에 들어갔다. 두 사람 모두에게, 민족자결주의의 정의는 자기 민족의 정치적 의사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화회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 즉 과거 러시아제국에 속했지만 현재에는 동맹국 군대가 상당수 점령하고 있는 지역들의 상황은 이 같은 간단한 정의로 처리되기에는 너무도 복잡했다. 발트 해 국가들의 경우는 사회경제적 지배층과 문화의 주인공들이 독일계이지만, 농촌에는 다수의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인들, 동시에는 유대인과 러시아인들이 섞여 산다. 이들의 여론을 주도하는 지배층은 그 숫자는 소수인 독일계일 것이며, 이들은 동맹국의 문화와 민족에 훨씬 더 강한 친화감을 가진다. 이들은 이미 역사가 깊은 그들의 회의 기관이었던 란타르크(Landtag)라는 대의체를 통해 러시아 제국으로부터의 이탈을 결정한 바 있다. ‘자기 민족의 정치적 의사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결주의는 동맹국의 해석에 따르면 이 경우 란타르크를 중심으로 국민투표를 시행하면 실현되는 셈이다.³⁴⁾

트로츠키는 이 같은 지배 계급을 중심으로 한 대의체가 주도하는 결정은 결코 민족자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이런 대의체가 외국 군대의 지원을 받는 한, 또는 군대 점령 지역에서 출현하는 한 진정한 ‘인민의 의지’가 자유롭게 표출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런 조건에서 발현되는 의지는 ‘외부에서 부과된’ 또는 ‘세습적이고 구체제의 기관에 기초한’ 의지이며, 그 대의체는 ‘통제 수단’에 불과하고 항상 특정 ‘개별’ 계급, 또는 ‘아주 소수 집단’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할 뿐이다. 따라서 군대가 철수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정치적 조직과 집단을 대표할 기관’을 새로이 수립해야 하고, 이를 통해 국민투표를 실행해야 한다.³⁵⁾ 그것은 민중의 뽑은 아래로부터의 대표체, 이를테면 소비에트와 같은 단체를 통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트로츠키의 주장이었다.³⁶⁾

쾰만과 트로츠키의 논쟁에서 수세에 몰렸던 것은 트로츠키 쪽이었다. 그것은 소비에트 러시아와 독일 간의 전황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지만, 트로츠키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덜 현실적으로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쾰만은 트로츠키 주장의 대의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집요하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첫째는 트로츠키가 주장하는 ‘충분한 사회정치적 조직과 집단을 대표할 기관’을 누가 중심이 되어 만들 것이며, 또한 그 대표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의 실제적 방법 문제를 추궁했다. 동유럽 일부 국가에 현존하는 대의체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민주적인 기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트로츠키가 말하는 기관의 민주성을 인정한다 해도 최소한 현존 기관은 민의를 드러내는데 ‘편리한 도구’로서 ‘잠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지는 크다. 이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전직 혁명가 트로츠키는 ‘혁명을 통해서’라

33) *Proceedings of the Brest-Litovsk Peace Conference*, pp. 70-72.

34) *op. cit.*, pp. 77-79.

35) *op. cit.*, pp. 73-76.

36) Borislav Chernev, “The Brest-Litovsk Moment,” p. 376.

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이는 현재 국가 최고위 관료가 공식 외교 회담장에서 할 수 있는 언사는 아니었다.³⁷⁾ 두 번째 켈만의 무기는 우크라이나 문제였다. 이미 1918년 1월 회담 재개 시부터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독일 측의 초청을 받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회담장에 모습을 드러낸 상태였다. 당시 자유주의적 혁명 세력이 장악했던 의회 라다에서 파견된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볼셰비키의 러시아 대표단과 구분되는 독립적 지위를 희망하였다. 비록 회담 현장에서 트로츠키가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독립성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³⁸⁾ 볼셰비키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과거 러시아 제국 소속 국가를 소비에트 러시아와 동맹국 사이 강화 회담의 ‘주체’로 인정할 수는 없었다. 켈만은 이를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러시아 대표단의 모순적 태도로 공격할 수 있었다. ‘혁명 행진’을 위해 키예프로 진군 중인 소비에트 적위대는 ‘외국’ 군대가 아닌가? 볼셰비키가 스스로 주장했듯이, ‘외국’ 군대는 철수해야 하니 적위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야 하고 그 후야 국민투표가 시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우크라이나는 이미 1917년 11월 말에 라다가 중심이 되어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바 있다. 민족자결주의를 지지한다는 볼셰비키는 이 같은 독립 선언을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³⁹⁾ 이에 대한 트로츠키의 대답은 궁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러시아 군대의 철수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해서 논란이 될 수 없으며, 라다는 우크라이나의 충분한 사회정치적 집단과 조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⁴⁰⁾

민족자결주의의 보편과 특수적 이해를 대표하는 트로츠키와 켈만 사이의 이 같은 논쟁은 후대의 학자들에게는 잊혔지만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독일의 군사적 압박과 현실적 대안의 부재 속에, 트로츠키는 민족자결주의의 논쟁에 반제국주의라는 보편적 대의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없었고, 그만큼 그 대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즉, 독일과 러시아 국경 사이민족자결주의의 세부적 적용 문제에 집중되었던 그 논쟁의 초점 탓에, 또는 민족자결주의의 동유럽에서의 적용 문제가 압도했던 당시의 분위기 탓에, 보다 보편적인 문제 즉, 반제국주의와 식민지 해방의 문제는 논의의 대상에서 아예 사라졌던 것이다. 결국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에서의 민족자결주의 논쟁은 이를 유럽의 종전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효과를 만들었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 회담에 의해 민족자결주의의 보편적 대의, 즉 반제국주의가 망각되는 흐름 속에서, 1918년 2월 초 윌슨은 이른바 4개조 연설을 미국 하원에서 행했다. 원래 독일 수상 헤르틀링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외상 체르닌에 대한 답변으로 기획되었던 윌슨의 연설은 민족자결주의 문제를 다시금 유럽만의 문제로 한정하는 역할을 했다. 후대의 학자들이 ‘민족자결주의’라는 표현을 윌슨이 최초로 사용했던 경우로 크게 평가했던 이 연설은 실상, 민족자결주의의 보편적 대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여기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전쟁 당사국들’이 해결해야 하는 전쟁 문제에 속했다. 그는 “민족자결주의는 단순한 미사여구는 아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무시하지 못할 실행에 옮겨야 할 원칙이다”라고 주장하며 이 이념의 강력한 지지자임을 수사적으로 제시하지만, 곧 “그것은 강대국들 사이의 개별적인 상호이해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전쟁 당사국들 모두는 전쟁에 관련된 모두 이슈들의 해결에 참가해야 한다”며 그의 이야기가 현재 ‘유럽의 전쟁 문제’, 또는 ‘유럽의 영토 분쟁’에 국한된 것임을 시사했다. 더 많이 알려진 그의 표현, 즉 ‘해당 주민의 이해관계와 안녕’은 ‘이 전쟁과 관련된 모든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일 뿐이었다. 윌슨의 담론에서 그것은 제국주의 질서의 종식과 결코 연결되지 않았다.⁴¹⁾

37) *op. cit.*, pp. 76-77.

38) *op. cit.*, p. 64.

39) *op. cit.*, p. 68.

40) *op. cit.*, p. 68, 74.

41)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18Supp01v01/d59>

IV. 결론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인공으로 알려진 민족자결주의 담론은 사실은 19세기 말부터 유럽의 좌파 진영이 반제국주의라는 보편적 대의를 주장하며 펼쳤던 정치 강령으로 시작되었다. 이 강령은 토크슨부르크와 레닌 등의 주요 논객들에 의해 중요 의제로 부각되었으며, 유럽 진보 계열의 제 1차 세계대전 반전 운동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보다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민족자결주의가 좌파 지식인, 특히 마르크스주의자라는 좁은 집단을 넘어 사회적인 화두가 되었던 것은 대전의 종식이 실제로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던 1917년 2월 혁명 이후의 일이었다. 그 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직후 개최된 종전 협상 브레스트-리토프스크 회담은 민족자결주의 논의의 정점이 되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브레스트-리토프스크의 협상은 소비에트 러시아와 동맹국 간 민족자결주의 논쟁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독일군의 무력으로 그 결과가 결정되었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소비에트 러시아가 독일에게 상실한 엄청난 영토와 경제 자원만을 주로 언급하거나, 이 지역들이 독일의 괴뢰 국가가 되었다는 정도의 사실만이 가끔 서술할 뿐이다. 실제로 그 해 11월에 독일이 협상국 측에 항복을 선언하면서, 이 조약의 결정들은 완전히 무효화 되기도 했다. 하지만 1918년 1-2월의 맥락에서 볼 때,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은 민족자결주의 해석에 대한 두 가지 방식, 즉 레닌 식의 보다 보편적인 반제국주의와 동맹국 식의 보다 특수한 전후 유럽 영토 처리 원칙 사이의 논쟁의 장이었다. 이 회의에서 자발적(?)으로 배제되었던 협상국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레 민족자결주의에 주도권을 쥔 이 회담에 대해 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미국 대통령 윌슨을 비롯한 협상국 측의 대답은 표면적으로 동맹국의 버전을 비판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지만, 실상 민족자결주의를 유럽의 전후 국경 처리 문제로 국한한다는 점에서는 레닌 식보다는 동맹국에 손을 들어 준 것이었다. 흥미롭게도, 윌슨의 연설부터 1919년 파리 강화회담이 끝나는 시점까지 그의 민족자결주의는 전 세계, 특히 식민지인들에게 보편적 반제국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오인되었고, 그 오해의 기간 동안 전 세계는 ‘윌슨의 순간’에 휩싸이게 되었다. 하지만 식민지인들이 윌슨 주장의 진의를 파악하고, 대신 볼셰비키의 이념을 대안으로 선택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제 1 발표 토론문

노경덕, 「제 1차 세계대전 말 유럽의 국제정치와 민족자결주의」

이 주 영 (울산과학기술원)

『별지 참조』

이집트 1919혁명과 와프드당

송 경 근 (명지대)

- I . 서론
- II . 영국의 이집트 점령과 지배
- III . 제1차 세계대전과 1919혁명의 시작
- IV . 1919혁명의 진행과 결과
- V . 1919혁명 이후의 와프드당의 역할과
한계
- VI . 결론

이집트 1919혁명과 와프드당

송 경 근 (명지대)

I. 서론

이집트는 인류의 최고 고대 문명이 발생한 곳으로 늘 중동지역의 정치,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하여 왔다. 이슬람이 중동을 지배하게 된 후에도 중동 제일의 곡창지대로서 정치, 문화 중심지 역할을 지속하였다. 특히 바그다드가 몽골에 의하여 파괴되고, 이라크가 이슬람세계의 정치,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슬람 문명을 보존 유지하는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속주가 된 후에 일시적으로 쇠퇴하여 인구가 줄고, 경제는 피폐해진 후에 침체의 늪 속을 헤매었다. 그리고 나서 1798년 나폴레옹의 침입의 충격 속에 이집트는 급격히 무함마드 알리와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현대화의 길을 걸으면서 다시 한 번 중동의 정치, 문화 중심지가 된다. 그럼에도 이집트의 정치, 경제적 중요성과 함께 지니는 전략적 위치는 이집트를 세계 각지로 뻗어 나가던 서구의 열강의 세력 각축장이 되어가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863-1879년 동안 세습 총독이었던 이스마일은 이집트를 중동의 프랑스와 같은 나라로 만들려다 이집트의 경제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하게 국가 경영을 하다가 이집트의 국가 재정을 파산 상태로 몰아넣었으며, 이것은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서구 열강들이 이집트 내정을 개입하게 유도했다. 이 중에 영국에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인 인도에 이르는 길목에 위치한 이집트의 전략적 가치는 지대하였으며, 어떤 다른 나라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땅이었다. 서구 열강의 개입은 처음에는 빚을 돌려받기 위한 재정 감독으로 시작되었으나, 그들의 이집트 내정 개입은 이집트 국민의 반발을 일으켰으며, 서구 열강에 저항하는 아흐마드 우라비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내각을 출발시켰다. 아흐마드 우라비 내각은 서구 개입 정책을 거부했으며, 서구 세력을 이집트에서 축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은 영국과 프랑스는 이집트 내정을 무력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국내의 정치적 혼란 속에 군사 개입을 할 수 없었으며, 이런 틈에 영국은 재빨리 단독으로 이집트를 침입하여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었다.

영국은 처음에는 이집트를 단기간 점령 지배하면서 이집트 재정 상태를 호전시킨 후에 이집트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유지시키는 가운데에 군을 철수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그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점령이 필요하게 만들었으며, 이집트의 장기 점령 지배는 그들의 이해와 일치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집트의 종주국인 오스만 터키가 동맹국 편을 들자 이집트의 실질적 지배자인 영국은 오스만터키와 이집트의 주종관계를 단절시키고 이집트를 영국의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점증하는 이집트의 가치를 느끼는 영국은 독립하고자하는 이집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이집트를 영원히 지배 점령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대전이 끝나자 참았던 이집트 국민의 독립 열기는 강하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으며, 1919혁명으로 발전하였다. 이집트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누르고자 했던 영국은 그것의 무모함을 깨닫고 완전하지 않지만 이집트의 독립을 허용하였다.

이 논문은 영국의 이집트 점령으로 시작해서 1919혁명이 종결되는 시대까지 연구하였다. 영국의 이집트 점령과 이집트 민족주의의 재기와 성장, 제1차 세계 대전 속에 이집트와 영국의 통치, 1919혁명과 이집트인의 독립투쟁, 이집트의 독립과 1919혁명의 결과, 1919혁명 이후 이집트사회에서의 와프드당의 역할과 한계를 다룬다. 이런 일련의 연구 과정 속에서 이 논문의 목적인 1919혁명의 성격과 1919혁명 속에서 와프드당의 역할을 규명할 것이다. 동시에 이 논문은 과거의 식민지 국가들이 열강의 식민 통치에 대하여 어떻게 저항하는가의 예를 추출하게 만들 것이며, 중동 현대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1919혁명을 우리의 삼일운동과 비교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집트의 1919혁명에 대한 연구는 아랍국가에서 자신들의 중요한 독립 투쟁이기에 많이 연구가 되어있다. 서구에서도 아랍국가 만큼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많이 소개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는 아랍적입장과 서구적 입장에서 1919혁명을 보았을 뿐 우리의 입장에서 본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집트의 1919혁명과 우리의 삼일운동이 유사한 동기 속에서 시작되었고, 비슷한 과정을 거쳤으나, 결과에서 다른 결과를 얻었기에 많은 연구의 가치가 있음에도 전혀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5-2호(2005)중에 송경근의 이집트 대영 독립투쟁(1914-1922)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집트의 1919혁명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고 다루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1919혁명의 동기와 성격을 연구하여 보는 논문이 될 것이다.

II. 영국의 이집트 점령과 지배

케딕 이스마일의 방만한 국가 운영으로 파탄이 난 이집트 내정에 개입하게 된 영국은 결국 1882년 이집트를 군사점령하게 되었다. 영국의 이집트에 대한 군사적 점령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이집트 경제의 정상화에 필요한 장기간의 시간 요구와 전략적 가치는 영국이 이집트를 장기간 지배하게 만들어갔다.

영국의 지배 속에 이집트의 재정은 양호하여져 갔으며, 사회적 환경과 제도는 많이 현대화되어 갔다. 영국은 그들의 이집트 지배를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이집트의 민족주의 감정이 성장하지 못하게 이집트인의 정치 활동을 극도로 수동적이 되도록 감시했으며, 이집트 사회 지도 계층에게는 그들의 지위와 특권을 인정하여 반영 감정의 중심축을 제거하였다. 결국 이집트는 영국의 주요한 식민지가 되어갔으며, 점차로 영국 경제의 종속물이 되어갔다. 면화 단일 재배에 매달린 결과 이집트 농민들은 국제 시장의 격랑에 시달리게 되었으며(송경근 2005, 한국이슬람학회, 25), 소작농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농업의 상업화, 농부의 토지 이탈, 사회 계층 간의 차이 증가 등은 이집트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 사회가 급격하게 흔들리게 만들었다(Jankowski 2000, 100). 이집트를 지배하기 위하여 이집트 정부 안에 영국인 관리의 수는 점차 늘어갔으며, 외국인에 대한 특혜가 강화되어 갔다. 여기다가 이집트는 영국의 아프리카 진출의 기지가 되어 인적, 물적 자원의 공급지가 되었다(송경근 2010, 67). 이런 외세의 지배는 이집트의 반영 감정을 자극하면서 억눌려 있던 이집트인의 민족주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서 성장하게 만들었다.

우라비 혁명을 겪으면서 극도의 친영주의자가 되었던 타우피끄를 뒤이어 1892년 총독인 케딕의 자리에 오른 압바스 힐미 2세는 독립의 기상이 넘치는 반영주의자였다(Ahmad Husein 1978, 1151). 독립적 기운이 강한 케딕 압바스 힐미는 영국의 내정 간섭을 배제하려 하였으나, 이집트군과 내각이 실제적으로 영국인 감독 하에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를 수가 없었다. 그는 이에

대항하여 그의 지지자들을 국내외에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이집트 민족주의의 재기의 싹이 되었다(송경근 2010, 67).

케딕 압바스 힐미를 지지하는 집단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무스타파 카밀이었다. 그는 국내 외적으로 활동하며 케딕의 반영 의사를 실행하였다(King 1984, 382). 국내에서는 영국의 활동을 비난하고, 해외에서는 식민제국주의에서 영국과 경쟁하는 프랑스의 지지를 받아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도 영국의 이집트 지배가 부당하다고 영국을 비난하였다. 이집트에 대한 종주권을 가지고 있는 오스만 터키는 당연히 그의 외침에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들 각자의 이해관계가 틀렸기에 이집트 한 국가를 위해 통일된 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으며, 그럴 의사도 없었다.

무스타파 카밀은 여러 비밀 단체에서 반영활동을 계속했다(Muhammad Muru 629-630, 2006). 그의 정열적인 반영 민족주의 운동은 많은 추종자를 만들었고, 그를 중심으로 와파니당이 결성되도록 하였다. 그는 민족주의 신문 “알-리와”(“깃발”이라는 뜻)를 발간하였다(Sonbol 125, 2006). 그러나 그의 정열적 반영 민족주의 운동은 관리가 가능한 반영 운동을 원하는 총독 압바스 힐미와 의견 충돌을 만들어냈고, 이 때문에 그 둘은 한동안 결별 상태가 되었다.

1906년 영국군과 이집트 농민 사이에 일어난 충돌 사건인 던샤와이 사건¹⁾에서 영국이 취한 비인도적이며 편파적인 자세는 이집트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다(Ahmed 2003, 18). 이것은 무스타파 카밀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자들이 이루고자 했던 일을 순식간에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무스타파 카밀에게 등을 돌렸던 케딕 압바스 힐미도 적극적으로 그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결국 1882년부터 이집트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총고문관 크로머는 1907년 귀국하고, 훨씬 자유주의적인 엘든 고우스트가 신임 총고문관으로 오게 되었다(Yahya & Naim 1984, 62-63).

무스타파 카밀이 주도하는 반영 민족주의 운동은 이슬람적이었으며, 자말 딘 아프가니가 주창한 범이슬람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는 자말 알 딘 아프가니의 사고가 만든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존재였다(Mustafa Muhammad Ramadan 1998, 323). 그럼에도 그의 정치사상의 이슬람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럽화된 자유주의 지식인이었다(Tibi 1997, 181). 주오스만 터키가 지배하는 시리아에서는 이슬람군주가 지배하는 관계로 이슬람주의는 민족주의가 성장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이교도인 영국이 지배하는 이집트에서는 이슬람주의는 민족주의가 성장하는 데에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무스타파 카밀의 와파니당은 대중지향적이었으며, 이집트를 지배하는 영국을 축출해야할 침입자로 보았으며, 그들의 종주국인 오스만 터키의 군주인 오스만 제국의 술탄을 그들의 군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같은 이집트인이나 종교적으로 틀린 이집트 기독교도 콥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이슬람주의는 그들의 정치적 운동의 바탕은 되었을지언정 그들의 정치적 운동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1926년 하산 알 반나에 의해 이슬람주의 정당인 무슬림형제단이 출현 성장하면서 실현되기 시작한다.

전임자 크로머보다는 자유주의적이었던 고우스트는 조심스러운 정책을 시행하였다. 우선적으로 케딕 압바스 힐미와 보수적인 지주 세력을 포섭하여 자기편으로 만들어갔다. 경제적 불황 속에 흔들리는 영국의 통치를 유지하던 그는 1910년 와파니당 소속 청년에 의하여 중도와 수상 부프르스 갈리가 암살당하자 이를 기회로 와파니당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다(Yunan Libib Rizq 1998, 153-155). 그에 의해 시작된 와파니당에 대한 탄압은 1911년 고우스트의 후임 키치너에 의

1) 1906년 나일 델타 지역의 던샤와이 마을에서 이집트 농민 소유인 비둘기들을 영국군이 무단으로 사냥하면서 시작된 충돌은 영국이 가해자인 영국군 편을 일방적으로 들면서 이집트 농민들을 처벌하자, 이집트 전국이 분노로 들끓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영국인 총고문관 크로머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으며, 이집트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키치너는 강력한 농업개선책과 농민을 보호하는 법을 통하여 이집트 농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와파니당을 중심으로 강경 민족주의 세력 제거에 전력하였다. 영국의 교묘한 탄압과 회유 정책이 어느 정도 위력을 발하면서 반영 민족주의 운동은 잠잠해지게 되었으며,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하던 세력도 변화가 일어나 좀 더 세속지향적이며, 서구지향적인 아흐마드 루트피 알 사이드가 이끄는 움마당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점점 과도하게 이슬람주의 쪽으로 쏠리는 와파니당 중심의 민족주의 세력에 반대하던 콥트와 다수의 온건 무슬림 민족주의 세력은 영국의 탄압으로 약해져가는 와파니당을 떠나서 움마당으로 몰리게 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움마당이 이집트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세력이 되었다(Goldschmidt 2008, 104).

III. 제1차 세계대전과 1919혁명의 시작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영국은 이집트의 종주국인 터키가 그들에 대항하여 독일편에 서자 이집트에 대한 터키의 종주권을 파기하고, 공식적으로 이집트를 영국의 보호국으로 둔다고 선포하였다(Nagasawa 2009, 31). 그들은 반영적인 케딤 압바스 헬미를 폐위시키고, 그의 삼촌이며 온건한 성격의 소유자인 후세인 카밀을 술탄으로 즉위시켰다(Goldsmith 1990, 53). 그리고 영국은 대전 내내 이집트를 계엄령하에 두었다. 민족주의자들은 유배 상태에 있게 되었고, 의회는 해산되었으며, 정당, 정치활동은 금지 되었다. 그러면서 영국은 이것은 비상조치이며, 전쟁이 끝나면 모든 상황은 재검토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이 약속을 지킬 의도가 전혀 없었다(Thompson 2008, 273).

제1세계대전 중에 이집트는 영국이 중동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노동력, 식량, 수송 등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는 중동 주둔 영국군에 가장 중요한 공급기지가 되었다(Annesley 1994, 333). 수백 명의 영국 관리들이 이집트 정부의 주요 공직을 차지하였으며, 수천 명의 영국군들이 이집트의 주요 지역을 점령 지배하였다. 세계 대전으로 인한 대규모의 군수품 수요와 면화 값의 폭등으로 이집트 경제는 전쟁 중임에도 활황 상태를 지속하였고, 이집트 중산층은 엄청난 돈을 벌수가 있었다(송경근 2005, 한국중동학회, 116). 비상계엄을 통한 영국의 강력한 통치와 전쟁 중임에도 경기의 활황 상태로 인하여 평화와 번영의 모습을 보이는 이집트의 모습은 영국인으로 하여금 이집트가 그들의 지배에 반대하여 전후에 독립운동을 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나 부의 증대에 따른 이집트 중산층의 확산은 이집트인의 정치 의식을 날로 높여갔으며, 영국에서 파견된 총고문관이 케딤 압바스 헬미를 폐위시키고, 후세인 카밀을 술탄에 앉히고, 이집트 내각을 무력화시켜 마음대로 이집트 내정을 주무르는 상태는 이집트인들의 반영의식을 급격히 강화시켰다. 한편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제한된 물자로 살아가는 서민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군은 전쟁 수행을 위해 이집트 농민으로부터 수천 마리의 말을 징발해갔고, 2만에 달하는 소작농을 강제로 차출하여 노무대대로 편성하였다(로덴백 2010, 208). 그들은 강제로 가족과 고향을 놔두고 먼 곳을 떠나서, 이교도의 왕을 위해서, 그들의 이슬람 군주인 칼리프에 적대하려는 군대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했다. 이런 노무대대는 그 숫자가 제1차 세계대전 말에는 150만에 달하였다(Vatikiotis 1985, 253). 또한 이집트 농민들은 군의 식량을 대기 위하여 강제로 자신들의 식량을 싼 값에 팔면서 기아에 허덕여야 했다(Marsot 1996, 79-80). 이와 같은 중산층의 확산과 반영의식 강화, 이집트 국민의 대다수인 농민들의 생활의 어려움은 전후에 폭발적인 민족주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영국의 보호정치를 참았던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독립을 위하여 움직이

기 시작했다. 서구 강대국들이 전횡적인 식민지배와 연합국 승리의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새롭게 세계의 최강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미국 대통령 윌슨이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고 한 민족자결주의는 많은 식민지 국민들에게 독립 운동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었다. 이에 이집트의 술탄 푸아드와 수상과 내각의 지원을 받는 이집트 민족주의자들은 영국인 총고문관 뵙게이트를 통하여 자신들의 독립의사를 밝혔다. 그들은 전쟁 수행을 위해서 말로만 되풀이했던 이집트 독립 약속을 믿고서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와의 협상도, 이집트의 독립도 전혀 염두에 없었던 영국 정부는 이를 단번에 거절하였다(프롬킨 2015, 631-632). 이를 통하여 영국이 전쟁 중에 밝혔던 이집트의 독립 가능성을 거짓이며, 그들은 전혀 이집트를 독립시킬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영국에게 속았음에 분노하였고, 이것은 민족주의자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집트 독립운동으로 나타났다.

이집트인들은 사드 자글룰을 중심으로 “대표”를 뜻하는 와프드 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영국의 보호정치 거부와 이집트와 수단에서 영국군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영국은 와프드 위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말타로 유배를 보냈다. 이런 영국의 처사에 극도로 분노한 이집트인들은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다. 공무원, 교사, 변호사, 철도 운송원들이 업무를 포기하고 사보타지에 들어갔으며, 곳곳에서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다. 좀처럼 외부에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나타내지 않던 여인들까지 시위에 나섰다. 시골에서 이집트 여인들은 남성들과 함께 거친 영국군에 대한 공격과 방해활동을 감행하였다(Amal Kamil Bayumi al-Sabki 1986, 18). 이런 와중에 많은 여인들은 혁명을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남성들과 같이 체포되어 고통을 겪었다. 이것은 아랍이나 이슬람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었다(Husein Mu'nis 2005, 35). 이런 반영 활동에 선두에는 유명한 여권 운동가 호다 샤으라위가 있었다. 여기다가 친영적이었던 이집트 기독교도인 콥트교도들도 반영운동에 가담하였다. 무슬림 올라마들은 교회에 가서 반영운동을 부르짖고, 기독교사제들은 이슬람 사원의 금요예배에 가서 이집트의 독립을 외쳤다. 이집트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집트인 위한 이집트”를 부르짖었다. 그들은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국가는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와 함께 초승달은 영생하리”라고 외쳤으며(Ibrahim 2013, 60), 이때 이슬람의 상징인 초승달 안에 별이 있던 자리에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대신 자리를 잡은 국기가 출현하였다(송경근 2005, 한국중동학회, 119). 이렇게 해서 이집트의 1919혁명은 시작되었다. 여기서 좀처럼 그 의사를 외부에 주장하지 않던 여인들이 시위에 가담하고, 늘 소수자로서 외세에 대한 저항에 소극적이었던 기독교들이 반영운동에 가담하여 1919혁명이 전 이집트인의 혁명이 되었던 데에는 영국의 기만과 교만함에 대한 분노도 큰 이유이지만, 혁명을 이끌었던 움마당을 중심으로 한 혁명 주도세력이 세속적이며,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적이었으며, 국가의 단합을 위해 종교적 차이에 대하여 관대했던 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종교적 색채가 없었으며, 이슬람주의 보다는 이집트 민족주의적인 면이 더 강하였다. 또한 이 때문에 1919혁명을 주도했던 와프드당은 전 이집트 국가 여론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영국 식민지 당국의 의사를 좌절시켜 나갈 수 있었다(송경근 2017, 124).

1919혁명은 우리의 삼일운동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 이렇게 식민 통치를 받던 국가에서 비슷한 시기에 많은 나라에서 민족주의 독립운동이 일어났으며,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기는 하나 공통된 원인은 세계 대전 중에 서구 강대국들이 전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식민지 백성들을 향하여 발표했던 여러 가지 정책과 연합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자결주의가 큰 역할을 하였다.

IV. 1919혁명의 진행과 결과

새로운 계층의 형성과 그들의 야망, 새로운 이해관계, 전에 볼 수 없던 이집트인의 새로운 분개, 새로운 불화와 불만의 원인 등, 전쟁으로 초래된 엄청난 사회경제적 변화와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던 영국은 혁명이 심각해진 후에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시작했다(프롬킨 2015, 633).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중동전선에서 혁혁한 명성을 날렸던 에드먼드 알렌비 장군을 총고문관으로 임명하여 1919혁명으로 시작된 사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집트인들의 요구를 일부라도 들어 주어야만 사태가 완화될 것임을 파악하고 유배를 보냈던 사드 자글룰과 그의 동료들을 석방하였으며, 사드 자글룰을 대표로 와프드 위원들이 이집트 독립을 위하여 전후 문제 처리를 위한 파리강화회의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집트의 독립을 허락할 마음이 없었으며, 와프드 위원들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이런 영국의 이중적이며, 임시방편적인 조치는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었으며, 결국 영국 수상 로이드 조지는 알프렛 밀너 조사단을 이집트에 보냈다(Muasasah al-Ahram 1969, 431-432).

밀너 조사단에 대한 이집트 국민들의 거부, 자글룰-밀너 회담, 회담 결렬과 사드 자글룰 재투옥, 반영운동의 확산 등을 거치면서 총고문관 에드먼드 알렌비는 이집트인에게 기본적인 수준의 독립을 허락해야 사태가 종결됨을 본국 정부를 상대로 꾸준히 알려왔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이집트 왕궁은 은밀하게 계속적으로 와프드 측을 밀고 있었다(Abd al-Azim Ramadan 380, 1998). 결국 알렌비의 설득을 받아들인 영국 정부는 이집트의 독립을 허락하였으며, 1922년 2월 28일 일방적으로 이집트 독립 선언서를 술탄 푸아드에게 넘겼다(Rifaat, 2005, 238). 이에 따라 다음날 3월 1일부터 법적으로 이집트는 입헌군주국이 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다음 4가지 유보 사항을 제시하였다(송경근 2005, 한국중동학회, 122).

1. 이집트 내의 대영제국의 교통 및 통신의 안전.
2. 외국의 침략이나 개입에 대한 방위 조치.
3. 외국 및 외국인의 권익 보호.
4. 수단 문제

위의 4가지 문제는 공식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영국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Jankowski 2000, 113). 이것들은 영국이 자신들의 힘이 이집트에 미치는 한 결코 양도할 의사가 없는 것이었다. 일방적인 영국의 이집트 독립안에 이집트인들은 처음에는 거세게 거부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렌비의 노련한 설득으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Tignor 2010, 243). 그것은 혁명이 서민층인 노동자, 농민들에 의해서 오랜 시간 폭동화되어 지속되면서, 중산층이 혁명을 조절하기 어려워진 것도 작용하였다(Safran 1981, 106). 1923년 4월 21일 헌법이 공포되고, 같은 해 9월 이집트 최초의 총선거 실시되었다. 영국 지배하에 유지되던 계엄령은 해제되었다. 이집트는 정식으로 입헌군주국이 되었으며, 술탄 아흐마드 푸아드는 푸아드 왕이 되었다(Perry 2004, 75). 헌법은 푸아드 왕에게 광범위한 권력을 부여했다. 그것은 장관 임명, 법률 거부권, 의회해산권 등이었다. 심지어 그는 의회가 회기 중에 있지 않더라도 법령을 발포할 수 있었다. 이런 권력은 그가 국토 경작지의 1/10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가 정부의 수반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반으로서 효과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푸아드 왕은 이 헌법에 지극히 불만족스러워 했으며, 이 헌법을 끊임없이 훼손하려고 하였다(Thompson 2008, 275-276). 헌법은 왕의 의사대로 운영되면서 계속해서 애매모호함을 만들어냈고, 끊임없는 투쟁의 원천되었다. 사드 자글룰이

이끄는 와프드당이 집권당이 되었고, 사드 자글룰은 1924년 이집트 수상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민영 1979, 97). 이로써 1919년에 시작된 이집트의 혁명은 1922년 이집트가 독립 국가가 되게 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1919혁명을 통하여 이집트는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이집트의 독립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상대로 밀고 당기는 정치 투쟁을 통하여 독립을 이룬 것은 당시로는 보기 드문 이집트인들의 성공으로 보아야한다. 이 혁명 기간 동안 3가지 정치 세력이 다툼을 하였고, 그 다툼 속에 타협에 의하여 완전하지 않으나 이집트의 독립이 이루어졌다. 그 세 세력은 첫째는 와프드당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세력, 둘째는 술탄 푸아드를 중심으로 한 지배자와 터키-서카시아 계열의 고위 관료층, 셋째는 이집트를 계속 보호국으로 두려는 영국이었다. 이 세 세력은 혁명의 향배를 가르는 세력이었다. 이 중에 두 번째 술탄 푸아드와 고위 관료들은 그들의 권력 확대를 위하여 이집트의 독립을 원하였으나 무기력했다. 그들은 독립을 위하여 움직이기는 하였으나, 첫 번째의 민족주의 세력을 앞세우거나, 민족주의 세력에 의하여 그들의 활동이 차단당했으며,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혁명에 대하여 적극적이 아니었다. 세 번째 영국은 이집트의 전략적 위치와 그 경제적 가치 때문에 이집트를 계속 영국의 보호 하에 두고자 하였으나, 이집트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집트 민족주의 세력의 저항에 너무 자신들의 힘이 부치며,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이집트를 독립시키되, 이집트를 가능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였다. 이집트 민족주의 세력은 무함마드 알리와 그 자손들의 개혁과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 급성장한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인 지주와 지식인 중산층이었다. 이들은 다수인 이슬람의 중요성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본질적으로 세속적이며, 서구식 자유주의를 지향하였다. 때문에 이들은 기독교도들을 차별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룹 안으로 끌어들였으며, 페미니스트를 포함하는 많은 여성들을 포섭하였고, 그들에게 정치적 활동을 권하였다. 이렇게 해서 자유주의적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움마당, 나중에는 와프드당이 주도로 전 이집트인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그들의 의사는 전 이집트인의 의사였고, 이런 힘을 바탕으로 영국과 정치적 투쟁을 벌여 이집트의 독립을 제한적이기는 하였으나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집트의 제한적인 독립은 이 세 정치세력의 정치적 타협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1919혁명은 제한적이었으나, 좀 더 현대적인 이집트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 혁명을 통하여 이집트는 무함마드 알리의 개혁으로 시작되었던 근현대 이집트를 좀 더 현대적인 국가로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1919혁명 이전의 이집트는 오직 지배자만의 국가 성격이 강했으나, 1919혁명 이후에는 좀 더 그 범위가 확대되어 관료, 지주, 지식인을 중심으로 대중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국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런 정치적 참여층의 확대는 이집트 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어 민간 주도의 경제, 문화 활동의 증가를 일으켰으며, 이것은 이집트가 아랍권 국가에서 경제, 문화 활동에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만들었다. 1919혁명 전후에 이집트 사회는 전체적으로 발전하였고, 이 때문에 그 전에는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던 여성들과 기독교도들까지 자신의 존재와 권한에 대하여 외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Abd al-Rahman al-Rafi 1987, 108). 이런 사회의 변화 속에서 강화된 중산층 지식인들의 외세에 대한 저항의 외침에 무산계급인 농민과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대규모로 호응을 하면서 외세에 지배를 받는 이집트의 상황을 바꾸는 커다란 힘이 분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혁명 이후에 이것은 더욱 사회의 변화에 추진력을 주었고, 이집트가 다른 중동국가나 아랍국가보다 한 발 더 나아간 현대적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만들었다.

V. 1919혁명 이후의 와프드당의 역할과 한계

1919혁명을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와프드당은 이집트의 권력층과 민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집트의 독립을 이루어냈고, 이후에 이집트의 정치 주도 및 집권 세력이 될 수 있었다. 이들이 주도했던 이집트 독립은 제한적인 것이었고, 영국의 이집트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절대적이었다. 이런 영국의 영향 속에 이집트 정치를 이끌게 된 와프드당은 지주와 지식인을 중심으로한 상류층과 상위중산층이 주 구성원을 이루었으며, 이들은 이집트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이집트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국의 의사를 크게 거스를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슬람을 인정하고, 그들의 운동의 밑바탕에는 이슬람이 기본으로 깔려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슬람주의자는 아니었고, 서구적 자유주의를 지향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이집트 국민의 20%-25%를 차지하며, 비교적 덜 반영국적이었던 소수종파 이집트 기독교도 콥트도 와프드당이 이끄는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제한된 독립을 이룬 후에 와프드당이 이끄는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80%정도를 차지하는 대다수의 무슬림들의 생각은 상당히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7세기 아랍이 이집트에 들어와 이집트는 이슬람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었고, 10세기 이집트 인구의 다수가 무슬림이 된 후에 이집트는 정치적으로나 인구 구성면에서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되었다. 그 이후 이집트에서는 무슬림들에게 국가는 이슬람 지배 체제 하에 운영되어야하며, 기독교도는 이집트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는 하나, 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 운영에 끼어들 필요는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무슬림들의 사고는 1923년 공포된 헌법 속에 이슬람은 국교라는 조항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것은 비록 세속적 민족주의 흐름 속에서 관대함과 협력 속에 무슬림과 콥트들의 화합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집트의 독립때부터 이미 이런 관대함과 화합이 얼마나 잘 지속될지 확인할 수 없는 요소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런 다수 무슬림들의 사고와 소수 상류 엘리트 층이 이끄는 와프드당의 점진적 수구 기득권화는 이집트 대중의 마음이 와프드당과 유리되게 만들었으며, 이런 틈새를 타고 이슬람주의로 나라를 이끌고자 하는 1928년 시작된 하산 알 반나의 무슬림 형제단이 급격히 커가면서 이집트 대중의 마음에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고, 이들은 와프드당을 대신하여 사회 변혁을 주도하는 최대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여 갔다.

VI. 결론

케딩 이스마일의 과도한 재정 지출로 파탄에 빠진 이집트 재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른 서구 강대국과 이집트 내정에 개입한 영국은 이집트 국민들이 그들의 내정 개입에 우라비를 중심으로 민족 내각을 구성하고 저항하자, 1882년 이집트를 점령하고, 민족 내각을 해산한 후에 이집트에 총고문관을 배치하고 그림자 내각을 통하여 이집트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은 이집트의 질서가 회복되어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집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이집트에서 나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의도대로 이집트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많은 시간의 필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이집트의 전략적 위치, 그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준 수에즈 운하, 영국의 최대 식민지이며 가장 중요하기도 하였던 인도에 안전하게 이르기 위해 꼭 필요한 중간기착지로서의 역할 등은 영국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었다.

영국의 이집트 지배는 성공적이어서, 이집트 경제와 사회는 안정되어 갔으나, 이집트는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의 경제적 종속물이 되어갔고, 영국의 세력 확장의 중요한 교두보가 되어갔다. 이

런 속에서 이집트 국민은 많은 고통과 차별을 당하였으며, 이것은 점증하는 반영감정과 함께 짓밟혔던 이집트의 민족주의가 다시 커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중에 무스타파 카밀을 중심으로한 와파니당이 결성되어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자말 딘 아프가니의 범이슬람주의를 바탕으로 대중지향적인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의 정치적 활동은 1907년 총고문관 크로머가 물러나게 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은 영국의 강력한 탄압 속에 사그라지게 되었으며, 이집트의 정치활동은 지주, 중산층의 지식인이 주를 이루는 움마당이 주도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슬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세속적이며, 서구지향적인 자유주의자들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영국은 이집트와 오스만 터키의 주종관계를 단절시키고, 이집트를 영국의 보호국으로 만들었으며, 이집트인들의 정치활동을 정지시켰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이집트는 전쟁 경기로 인하여 호황을 누렸으며, 재정적 수입 증대는 자신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중산층의 증가로 이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자 영국은 이집트를 계속 지배하려 했으나, 이집트 국민들은 이를 거부하고, 영국과 독립 투쟁을 벌였다. 이렇게 해서 지속된 투쟁이 1919혁명이다.

1919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움마당, 나중에는 와프드당을 이끄는 이집트 민족주의 세력, 술탄 푸아드와 고위관리 세력, 영국 이 세 세력이 힘의 다툼을 벌였으며, 이 세 세력의 타협에 의하여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집트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집트의 독립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제1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의 식민지로서 독립을 이룬 경우는 거의 없는 가운데 이룬 이집트 국민의 빛나는 업적이었다. 그래서 1919혁명은 이집트 민족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혁명은 타협 속에서 무슬림과 기독교 종파의 차별 없이, 남녀 성별의 차별 없이 모두가 이집트인으로 하나가 되어 독립을 이루어냈으며, 현대 이집트의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집트의 민족주의가 형성,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중동 국가처럼 이슬람이 민족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민족주의가 이슬람 세계주의에 반한다는 감정 때문에 억제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이집트에서는 영국의 식민지배 때문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으며, 민족주의의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이슬람이 깔려 있었다. 대부분의 약소 식민 국가들의 민족주의는 외세의 침입과 영향 속에서 커 가는데, 이집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외세에 저항하면서, 민족주의는 성장하였으며, 또 외세로부터 앞선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성장의 힘을 키웠다. 이런 두 가지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커가던 이집트의 민족주의는 앞에서 밝힌 것처럼 1919혁명에서는 세속적이며, 서구자유주의적 요소를 가진 움마당, 후에는 와프드당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다. 그들은 주로 지주, 중산층 이상의 지식인으로서 이집트 사회의 엘리트 층이었다. 그들이 주도한 1919혁명은 소수인 그들이 주도하고, 민중이 거기에 호응함으로써, 그리고 왕과 고위관료가 그들을 밀음으로써 그들의 정치 활동을 전국적인 독립운동으로 발전시켰고, 1919혁명을 통하여 이집트를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슬람을 인정하고, 그들 운동의 밑바탕에는 이슬람이 기본으로 깔려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슬주의자들은 아니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집트 국민의 소수종파인 기독교도들도 적극적으로 그들의 독립운동에 가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19혁명을 통해서, 그들이 정권을 잡게 되자, 원래 소수였던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세력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1928년 하산 알 반나에 의하여 시작된 이슬람주의를 바탕으로 한 무슬림형제단이 일어나자, 대중의 지지를 잃게 되며, 무슬림형제단에게 혁명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

참고문헌

- 데이비드 프롬킨 저/이순호 옮김(2015), 『현대중동의 탄생』, 서울, 갈라파고스.
- 류시현, 문영주, 박종린, 허수, 허영란(2011),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V.5, 서울, 웅진 지식하우스.
- 맥스 로덴벡 저/하연희 옮김(2010), 『카이로』, 서울, 루비박스.
- 민영(1979), 『중동현대사』, 서울, 태창문화사.
- 송경근(2005), “이집트의 대영독립투쟁(1914-1922)”,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5-2호, 한국중동학회.
- _____(2005), “이집트에 대한 영국의 식민지배와 이집트 민족주의자의 저항(1882-1914)”,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5-2집, 한국이슬람학회.
- _____(2010), “이집트 민족주의의 형성과 발전 및 그 안에서 외세와 이슬람의 역할에 대한 연구(프랑스의 이집트 침입부터 이집트의 독립까지)”, 『중동연구』 제29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 _____(2017), “1798년(나폴레옹 침입) 이후 현대 이집트 기독교도의 상황에 대한 연구(콕트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7-3호, 한국중동학회.
- 역사연구소(2016),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사』, 파주, 서해문집.
- Abd al-Azim Ramadan(1998), *Tatawur al-Harakah al-Wataniyah fi Misr 1918-1936*, 3rd Ed., V.2, al-Qahirah, al-Haiah al-Misriyah al-`Amah lil-Kitab.
- Abd al-Rahman al-Rafi(1987), *Thaurah 1919*, al-Qahirah, Dar al-Ma`arif.
- Ahmad Husein(1978), *Mawsu`a Tarikh Misr*, V.3, al-Qahirah, Matbu`aat al-Sha`b.
- Ahmed, Moustafa(2003), *Egypt in the 20th Century, Chronology of Major Events*, London, MegaZette Press.
- Amal Kamil Bayumi al-Sabki(1986), *Al-Harakh al-Nisaiyah fi Misr ma baina al-Thauratain 1919 wa 1952*, al-Qahirah, Matabi` al-Haiah al-Misriyah al-Amah lil-Kitab.
- Annesley, George(1994), *The Rise of Modern Egypt*, Edinburgh, The Pentland Press Limited.
- Goldschmidt, Arthur(1990), *Modern Egypt*, Cairo, AUC Press.
- _____(2008), *A Brief History of Egypt*, New York, Checkmark Books.
- Husein Mu`nis(2005), *Dirasat fi thaurah 1919*, al-Qahirah, Dar al-Rashad.
- Ibrahim, Vivian(2013), *The challenges of modernization and identity*, New York, I.B.Tauris.
- Jankowski, James(2000), *A Short History Egypt*, Oxford, One World.
- King, Joan Wucher(1984), *Historical dictionary of Egypt*, Cairo, AUC Press.
- Marsot, Afaf Lutfi al-Sayyid(1996), *A Short History of Modern Egyp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asasah al-Ahram(1969), *Thaurah 1919*, al-Qahirah, Dar al-Kitab al-Jadid.
- Muhammad Muru(2006), *Tarikh Misr al-Hadith*, al-Mansurah, Maktabah al-Jazirah al-Ward.
- Mustafa Muhammad Ramadan(1998), *Tarikh al-Harakah al-Wataniyah wa Judhuru al-Nidal al-Misri*, al-Qahirah, al-Jerais.
- Nagasawa, Eiji(2009), *Modern Egypt, Through Japanese Eyes*, Cairo, Merit Publishing House.
- Perry, Glenn E.(2004), *The History of Egypt*, London, Greenwood Press.
- Riffat, Ashraf M.(2005), *The Awakening of Modern Egypt*, New Ed., Cairo, The Palm Press.
- Safran, Nadav(1981), *Egypt in search of Political Commun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onbol, Amira(2006), *The last Khedive of Egypt*, Cairo, AUC Press.
- Thompson, Jason(2008), *A History of Egypt*, London, Haus Books.
- Tibi, Bassam(1997), *Arab Nationalism between Islam and the Nation-State*, 3rd Ed., London, Macmillan Press LTD.
- Tignor, Robert L.(2010), *Egyp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Vatikiotis, P. J.(1985), *The History of Egypt*, 3rd Ed.,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 Yahya, Jalal, & Naim, Khalid(1984), *Al-Wafd al-Misri 1919-1952*, al-Qahirah, al-Maktab al-Jami`ti al-Hadith.
- Yunan Libib Rizq(1998), *Tarikh al-Wizaraat al-Misriyah*, al-Qahirah, al-Haiah al-Misriyah al-`Amah Likitab.

제 2 발표 토론문

송경근, 「이집트 1919혁명과 와프드당」

홍 미 정 (단국대)

이 논문은 영국의 이집트 점령부처 1919 혁명이 종결되는 시기까지, II. 영국의 이집트 점령과 지배, III. 제 1차 세계 대전과 1919 혁명의 시작, IV. 1919 혁명의 진행결과, V. 1919혁명과 와프트 당의 역할과 한계를 분석한다.

II. 영국의 이집트 점령과 지배

1. 영국의 이집트 점령과 지배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에즈운하의 중요성 때문 아닌가요?

영국이 수에즈운하를 1882년 우라비 반란 진압한 이후부터 1956년 7월까지 통제하였습니다.

1825년 Charles Maclaren은 “인간의 기술이 아주 적은 노력으로 이만큼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장소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 이어서 그는 인도로 가는 길로서 운하의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수에즈를 통해서 유럽-인도로 왕래하는 시간을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단축시킬 것이다. 사실상 그것은 유럽 남부와 남동부에 위치한 모든 국가들의 상업에 강력한 자극을 줄 것이다. 현재 19,800km로 4개월이 걸리는 잉글랜드에서 봄베이로 가는 항해가 운하를 통해 11,600km로 6주 만에 완주하게 될 것이다.

2. 수에즈 운하건설이 이집트에게 내린 재앙

운하 건설 과정(1859-1869)에서 1862년 이집트는 프랑스 은행들로부터 아주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야 했다. 이집트 정부는 1862년과 1873년 사이에 유럽 자본가들로부터 6천8백만 파운드를 빌렸으나 잔여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은 3분의 2에 불과했다. 이 때, 이집트의 부채는 연간 평균 700만 파운드 씩 증가했고, 빌린 돈의 대부분은 수에즈 운하 건설에 들어갔다.

수에즈 운하가 완공되자마자 처음부터 영국은 이 운하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었다. 수에즈는 영국의 인도 무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명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은 그곳을 상업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군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나섰다. 이집트 정부는 1875년 수에즈 운하에 대한 자국 지분을 영국 정부에게 팔고, 자금원을 확보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876년에는 부채를 상환하는 게 불가능해졌고, 영국-프랑스의 이집트에 대한 재정 관리가 시작되었다.

☞ 그렇다면, 이집트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것은 수에즈 운하 건설비용과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자본가들의 고리대 차관 때문 아닌가요? 이들이 조직적으로 이집트 경제를 파탄 낸 것은 아닐까요?

3. 우라비 혁명과 영국의 군사 점령

1869년 수에즈 운하 완공→ 1876년 재정난→ 영국-프랑스 재정관리→ 1879-1882년 우라비 반란→ 1882년 우라비 내각 구성→ 영국이 알렉산드리아 폭격→ 우라비군 궤멸→ 영국의 군사 점령.

장교 아흐마드 우라비가 주도한 우라비 반란(1879-1882)은 케디브 타우피끄와 유럽의 간섭에 저항하는 운동. 외국 영향력의 증대, 외국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늘어가는 세금의 부담 등을 이유로 케디브의 권한을 제한할 것을 요구.

1882년 민족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장악한 내각이 구성되고, 우라비는 이 내각을 주도하여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포함하는 민주적인 개혁을 시도.

4. 자말 알 딘 알 아프가니의 범이슬람주의와 민족주의 운동

자말 알 딘 알 아프가니(1838-1897)는 서구 사상과 문명의 수용과,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서 범 이슬람권의 통합을 주창한 이슬람 근대주의 사상가.

그가 이슬람권의 통일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서구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 새로운 이슬람 해석을 위하여 이즈티하드(이슬람법 해석)의 문을 열고 현대와 조화하는 종교·사회 개혁과 이슬람 부흥 운동을 다음과 같이 주장함.

“외세의 종식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있을 수 없다’, ‘내부의 실질적 개혁이 곧 외세를 몰아내는 방법’: 민중의회 창설, 교육제도 개선: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자주 독립, 식민주의 사관 극복, 서구 문명의 수용, 문맹 퇴치, 민중 각성, 정치에 대한 민중의식의 고양 등을 주장. 입헌정부 수립”

1879년 6월 26일 우라비 혁명의 발발과 함께 이집트 케디브 타우피끄는 이집트 주재 영국 총영사의 권고에 따라 그를 추방하였다.

☞ 자말 알 딘 알 아프가니가 주장하는 개혁 내용이 새로운 이슬람 해석에 토대를 둔 서구식 정치제도와 입헌 정부 수립이라면, 결국 그에게 이슬람은 이슬람권의 통합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과거 전통 이슬람 정치제도 등을 본받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II. 영국의 이집트 점령과 지배에서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무스타파 카밀이 주도하는 반영 민족주의 운동은 이슬람적이었으며, 자말 딘 아프가니가 주창한 범이슬람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는 자말 알 딘 아프가니의 사고가 만든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존재였다.

무스타파 카밀의 와파니당은 대중지향적이었으며, 이집트를 지배하는 영국을 축출해야할 침입자로 보았으며, 그들의 종주국인 오스만터키의 군주인 오스만 제국의 술탄을 그들의 군주로 생각하였다.”

☞ 자말 알딘 알 아프가니의 범 이슬람주의, 와파니당, 움마당, 와프드당의 동일성과 차이를 구분해 주십시오.

III. 제1차 세계대전과 1919혁명의 시작

본문에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1919혁명을 주도했던 자글룰의 와프드당은 전 이집트 국가 여론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영국 식민지 당국의 의사를 좌절시켜 나갈 수 있었다.”

☞ 그렇다면, 와프드당이 국가 여론을 완전히 장악하여 영국 식민지 당국의 의사를 좌절시켜 나갈 방법은 무엇입니까?

IV. 1919혁명의 진행과 결과

발표문에 쓰셨듯이, 푸아드 1세가 혁명 이전인 1917년부터 1936년까지 계속 강력한 권력을 가졌고, 영국은 계속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영국은 1882년 우라비 반란을 진압한 이후, 수에즈 운하에 대한 통제권을 케디브 타우피끄로부터 획득하여, 1956년 7월 18일 철수할 때까지 보유하였다. 1955년 경 유럽 소비 석유의 2/3가 이 운하를 통과했다.

☞ 무늬만 입헌 군주국 수립을 1919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V. 1919혁명 이후의 와프드당의 역할과 한계

☞ 1919년 혁명이 성공한 이후, 와프드당이 대중의 지지를 잃게 된 결정적 원인은 무엇인가요?

탈식민 운동으로서의 멕시코 혁명

박 구 병 (아주대)

- I. 들어가며
- II. 멕시코 혁명의 특성에 관한 인식과
연구 동향의 변화
- III. 대외의존적 디아스 체제에 맞선 혁명:
탈식민 운동의 장기지속
- IV. 혁명의 장기적 성과와 혁명적 민족주
의의 범위
- V. 멕시코 혁명과 쿠바 혁명의 연대

탈식민 운동으로서의 멕시코 혁명

박 구 병 (아주대)

I. 들어가며

20세기 라틴아메리카를 혁명의 대륙으로 아로새긴 격변 가운데 가장 먼저 발발한 1910년대의 멕시코 혁명은 러시아의 10월 혁명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흔히 ‘20세기 최초의 사회혁명’으로 불려왔다. 멕시코 혁명의 성격에 관해서는 유럽의 근대 혁명들과 다르지 않게 고전적 해석과 수정주의 해석 간의 논란이 이어져왔다.¹⁾ 혁명에 관한 첫 질문은 부르주아(시민) 혁명인가, 민중 혁명인가? 위로부터의 정치적 근대화인가, 아래로부터의 혁명인가 등 주체 세력이나 변혁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그동안 멕시코 혁명의 성격에 대해 대반란, 사회혁명, 중앙집권적 혁명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고, 지역에 따라 혁명에 적극 가담한 세력이 달랐기 때문에 토지개혁을 염원하는 농민(agrarista)혁명 또는 산지(山地) 주민(serrano)의 혁명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최초의 멕시코 혁명사 서술은 혁명 투쟁에서 승리한 북부 지역 출신의 중소 부르주아지에 의해 주도되었다. 1920년대 이래 친(親)혁명파의 ‘정통 해석’에 따르면, 멕시코 혁명은 아래로부터의 사회혁명(농민 중심의 대중 운동)이자 민족주의적 저항으로서 1870년대 중반 이래 지속된 엘리트적, 권위주의적, 외세의존적인 포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Díaz)의 과두지배 체제를 무너뜨렸다. 이런 관점에서 멕시코뿐 아니라 영·미 학계에서도 사파타 운동이나 판초 비야를 중심으로 한 북부 대중의 저항, 그리고 ‘혁명의 완결’로 여겨진 라사로 카르데나스(Lázaro Cárdenas)의 집권기(1934-1940)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왔다.

반면 친혁명파의 해석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은 1968년 10월 ‘틀라텔롤코 학살’을 전후로 대두했다. 혁명의 제도화라는 신화 만들기에 반발하면서 수정주의 연구자들은 토지개혁과 노동자 친화적 정책의 이면에서 추진된 혁명 후 체제의 중앙집권화와 정부 주도의 자본주의화로 귀결된 ‘위로부터의 혁명’의 속성을 비판하고 대중의 새로운 정치적 연대를 주장했다.

여러 연구자들은 멕시코 혁명의 종료 시점에 대해 혁명 세력의 요구사항을 집대성한 1917년 헌법의 제정, 무장 투쟁이 잦아든 1920년, 카르데나스의 대통령 임기 등을 제시하면서 1920년 이후 시기를 그 이전의 군사적 국면과 구별되는 ‘제도화 국면’으로 분류하곤 한다. 앞선 시기가 각 지역의 실력자들이 대중 동원과 무장 투쟁을 통해 세력 확대 경쟁에 나선 단계라면, 후속 시기는 권좌에 오른 북부의 혁명파가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를 선택적으로 포섭하면서 권력 기반을 다지는 안정화 국면이었다. 혁명 후 체제 시기는 ‘제도혁명당 아래의 평화,’ ‘완벽한 독재’ 등으로 불려왔고, 1950-1970년대의 ‘산업혁명’과 ‘경제 기적,’ 1980년대 초 외채위기와 이를 타개하려는 경제개혁, 달리 말해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세계화 전략으로 이어지는 20세기 말까지 ‘영속적인 혁명’

1) Alan Knight, "Revisionism and Revolution: Mexico Compared to England and France," *Past and Present*, no. 134 (1992), pp. 159-199.

의 관점에서 인식하려는 이들도 존재한다.

혁명의 성격과 시기 구분을 둘러싼 이견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자들은 멕시코 혁명이 20세기 라틴아메리카 역사의 분수령을 이룰 뿐 아니라 멕시코를 좀 더 통합적인 국민국가로 변모시키는 획기적인 계기였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적어도 10년 동안 ‘반란의 회전목마’²⁾라 지칭될 정도로 다양한 세력 간의 충돌 속에서도 과두지배 체제를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진보적 색채의 ‘1917년 헌법’을 탄생시켰고 기존 사회경제적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1920년대 초 이래 혁명이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이자 일종의 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멕시코인들은 유럽계 주민, 혼혈인(mestizo), 원주민 전통(indigenismo) 등을 아우르는 집단 정체성을 새롭게 모색하게 되었다.

본 학술대회의 취지에 적절히 부응하자면 19세기 말에 본격적으로 펼쳐진 쿠바의 독립투쟁 등을 다루는 편이 더 좋을 듯하지만, 이 글에서는 발표자에게 익숙한 멕시코 혁명을 20세기 초의 탈식민 운동이라는 더 넓은 흐름 속에서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영국의 역사가 에릭 홉스봄은 1980년대 말에 출판한 『제국의 시대, 1875-1914』에서 20세기 전환기에 인도, 멕시코, 브라질, 터키 등 제국주의 침탈의 영향을 받은 세계 여러 지역의 변화를 조망하면서 멕시코 혁명을 일컬어 간과되었던 혁명, 특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혁명이라 일컫는다. 하지만 홉스봄에게 멕시코 혁명은 제국 체제 내에 존재한 모순의 직접적 산물로서 노동 대중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식민지와 종속된 세계에서 발생한 최초의 혁명이었다. 달리 말해 이 혁명은 반제국주의적이며 향후 식민지 해방운동으로 규정될 움직임의 전조였다.³⁾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영국의 역사가 앨런 나이트가 보여주듯이 19세기 초 독립투쟁부터 1세기 정도의 기간을 일종의 장기지속으로 파악하면서 20세기 초 멕시코 혁명의 성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초 멕시코는 형식적으로는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라 헌법과 정치적 결정권을 가진 독립 주권국가였지만, 정치경제적으로는 사실상 이웃의 거대 국가에 종속된 상태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카츠의 지적대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지나친 미국의 우위는 실제로 멕시코의 독립을 위협할 지경이었다.⁴⁾

II. 멕시코 혁명의 특성에 관한 인식과 연구 동향의 변화

디아스 체제의 배제의 정치와 중앙집권화에 반대한 북부 부르주아지의 정치개혁 요구와 상업적 농업(기업농)의 확대에 맞선 중남부 농민층의 투쟁은 멕시코 혁명의 두 축을 이루었다. 디아스가 망명한 뒤 전자를 대표한 프란시스코 마데로는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지만 1913년 2월 디아스 추종 세력에 의해 암살당했다. 곧이어 전국 각지에서 저항 세력의 무장봉기가 빈발했을 뿐 아니라 우드로 윌슨 행정부가 파견한 미 해군의 베라크루스를 점령하고 1914년 여름에 디아스 추종 세력이 밀려난 뒤에는 권좌에 오른 혁명 세력 분파 사이의 각축전, 즉 ‘승자들 간의 내전’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에밀리아노 사파타(Emiliano Zapata), 판초 비야(Pancho Villa) 같은 대중적 영웅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특히 중부 모렐로스에서 원주민 공동촌락의 저항을 이끈 사파타의 운동은 대토지 소유제, 상업적 농업의 팽창, 배제적인 중앙 권력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대변

2) Fernando Mires, *La Rebelión Permanente: Las revoluciones sociales en América Latina* (México, D.F.: Siglo veintiuno editores, 1988), p. 158.

3) 에릭 홉스봄/김동택 옮김, 『제국의 시대』 (서울, 한길사, 1998), p. 503.

4) Friedrich Katz, “International Wars, Mexico, and U. S. Hegemony,” Elisa Servín, Leticia Reina, and John Tutino, eds., *Cycles of Conflict, Centuries of Change: Crisis, Reform, and Revolution in Mexico*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7), p. 188.

했다. 사파타 운동의 목표는 한마디로 ‘토지와 자유(Tierra y Libertad)’의 쟁취, 즉 생존에 필요한 토지 소유의 보장과 토지의 부당한 독점 일소였다. 사파타는 농업개혁 추진에 미온적이던 마데로와 결별한 뒤 1911년 11월 독자적인 강령을 발표해 불법적으로 수탈당한 토지의 반환, 공공사용을 위한 수용, ‘혁명의 적’들의 토지재산 몰수 등 토지개혁의 3대 원칙을 천명했다. 또 사파타 운동의 ‘자유’는 자율적인 토지 관리와 더불어 정치·군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총력 단위의 자치를 의미했다.

1916년 ‘입헌파’의 승리가 뚜렷해진 뒤 소집된 제헌의회는 진보적 색채를 띤 ‘1917년 헌법’을 탄생시켰다. ‘1917년 헌법’은 막강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 중심제를 표방하는 동시에 대통령과 상·하원의원을 포함해 모든 선출직의 재선(再選)금지를 명시(59조, 83조)하고 반(反)교권주의와 세속주의(3조)뿐 아니라 토지개혁(27조), 노동자의 권리 보장(123조), 교육개혁(130조) 같이 혁신적 조항들을 포함함으로써 혁명을 대표하는 문서가 되었다. ‘1917년 헌법’의 제정 시점이 러시아의 10월 혁명 이전이었고, 예컨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 조항은 미국에서는 1930년대 중엽 뉴딜시대에서야 등장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문서의 혁신적 성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헌법의 주요 조항들은 1930년대 중엽까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나이트에 따르면, 멕시코 혁명은 어떤 전위 정당의 활약에 의해 가열되지 않았고 그 흐름 속에서 일관성 있는 이데올로기적 청사진이 뚜렷이 포착되지도 않았다.⁵⁾ 혁명의 무장 투쟁 국면이 1920년 12월에 끝날 때까지 수적으로 다수인 농민층의 저항과 대중적 영웅의 활약이 뚜렷했지만, 거의 모든 혁명의 주요 지도자들이 분열과 보복으로 암살당했고 일부는 비적(匪賊)의 무리로 변질되었다. “가엾은 낙엽이 모진 폭풍우에” 휩쓸리듯이 1910년 무렵 전체 인구 1,50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희생당한 10년 동안의 유혈투쟁이 그친 뒤 혁명의 최종 승리는 마데로의 세력과 입헌파의 주축이었던 북부 출신의 독립 소농과 상인 등 중소 부르주아지에게 돌아갔다. 이들을 중심으로 수립된 혁명 후 체제는 혁명기에 분출된 대중의 개혁 요구와 열망, 예컨대 토지개혁과 자치 등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 중앙집권화를 꾀했다.

디아스 체제는 70-80대 노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지만, 혁명기에 활약한 알바로 오브레곤(Alvaro Obregón)과 플루타르코 카예스(Plutarco Elías Calles) 같은 30-40대의 젊은 세대가 혁명 후 체제의 지도자로 부상했다. 신세대 집권 세력은 혁명의 유산을 전유하고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를 강화하면서 혁명적 민족주의의 고양과 대중 포섭 정책을 통해 포퓰리스트적 정치·경제 체제의 기틀을 다졌다. 한편 사파타의 세력은 1919년 4월 그가 암살당한 뒤 사실상 오브레곤의 세력에 흡수되어 혁명 후 체제의 농업개혁에 영향을 미쳤으나 자치의 이상을 실현하지는 못했다. 대신 1920년대에 혁명을 체제의 이념으로 고양시키려는 국가적 기획과 적극적인 선전을 통해 혁명기에 지역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파타 운동(Zapatismo)은 혁명의 상징으로 재탄생했다.

홉스봄이 소개한 1960년(혁명 발발 50주년) 멕시코인들의 혁명 인식에 따르면, 30퍼센트의 멕시코인들이 여전히 자국의 정치 전통에 대해 긍지를 느끼고 있었다. 더욱이 조사 대상 중 거의 ⅔ 정도가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평등, 농업개혁, 민족의 독립 같은 멕시코 혁명의 이상과 목표를 언급하곤 했는데,⁶⁾ 이는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혁명의 제도화’ 수사와 신화, 혁명 친화적 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혁명 전에 비해 멕시코는 확실히 더 통합된 국

5) Alan Knight, *The Mexican Revolution*, Vol. II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 497.

6) Eric J. Hobsbawm, “Nationalism and Nationality in Latin America,” Bouda Etemad, Jean Batton, and Thomas David, eds., *Pour une 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 internationale: mélanges offerts à Paul Bairoch* (Geneva: Édition Passé Présent, 1995), p. 322.

가로 탈바꿈했지만, 카르데나스 집권기 이후 일부 저명한 멕시코의 지식인들은 혁명 후 체제의 혁명 계승과 권력의 정당화를 강력히 비판했다. 1943년에 경제학자 헤수스 실바 헤르소그(Jesús Silva Herzog)는 멕시코 혁명이 전면적인 위기에 빠져들었다고 선언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개인의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혁명의 모리배’라고 불렀다. 4년 뒤 역사가 다니엘 코시오 비에가스(Daniel Cosío Villegas)도 혁명이 원래 지향한 민주주의, 농업개혁, 노동자의 권리, 민족주의 등의 목표가 언제, 어떻게 각각 버려지거나 왜곡되었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위기는 혁명의 목표가 기진맥진해져서 혁명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진술했다.⁷⁾ 소설가 카를로스 푸엔테스(Carlos Fuentes)는 1962년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죽음』에서 부서지고 금이 간 혁명의 실상을 묘사하고 더 이상 혁명이기를 멈춘 상태, 혁명 정신의 화석화를 꼬집었다. 푸엔테스에게 혁명 세력의 중하급 지휘관 아르테미오 크루스는 비열한 출세주의자이자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로서 혁명의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추구한 혁명 후 집권 세력의 표상이었고 크루스의 출세와 죽음은 배신당한 멕시코 혁명의 변질이자 사망이었다.⁸⁾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등장한 탈수정주의적(post-revisionist) 해석은 1910년 발발한 멕시코 혁명을 민족주의적 성향의 대중 혁명이라고 규정하는 ‘친혁명파’ 해석과 아울러 국가와 대중의 관계를 단순한 대립 구도에서 파악하는 수정주의적 접근을 넘어 혁명의 다양한 지방적 특성을 강조하거나 지배 세력과 대중이 갈등과 협상을 통해 혁명 후 새로운 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혁명 후 체제는 권좌에 오른 혁명과 엘리트의 일방적인 청사진이 낳은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이 불균형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지배 엘리트와 결코 수동적이지 않은 주민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애드리언 반체스는 이렇게 언급한다. “급진적 카르데나스주의는 위로부터 아래로 엘리트의 기획이었던 만큼이나 대중적 행위자(agency)의 반영이었다.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지역의 세력은 새로운 국가 형성의 중요한 행위자였다.”⁹⁾

III. 대외의존적 디아스 체제에 맞선 혁명: 탈식민 운동의 장기지속

일부 연구자들의 표현을 빌면, 독립 이후 멕시코 역사의 특징은 극적인 위기와 개혁의 순환, 갈등과 변화의 순환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혁명이 발발한 20세기뿐 아니라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말까지로 시야를 넓혀보면 이런 묘사의 적실성이 더 분명해지는 듯하다. 다른 제3세계 또는 전 지구적 남부(global South)에 견줘볼 때, 라틴아메리카는 탈식민화의 시기가 매우 이르다는 특징을 지녔다. 1820년대 에스파냐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성취한 뒤 외세의 영향력이 약해진 동안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독립국들은 당면 과제의 해결에 집중했지만 반세기 넘게 지역적·종족적 분열, 끊임없는 내전, 외세의 침입을 겪으면서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서 뚜렷한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 나이트는 혁명으로 절정에 이른 세 가지 누적적이고 점증적인 대중적·애국적 저항의 물결을 언급하는데,¹⁰⁾ 20세기 초의 격변은 말하자면 순환의 마지막 긴 고리였다.

7) Renata Keller, *Mexico's Cold War: Cuba, the United States, and the Legacy of the Mexican Revolution*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 28.

8) 줄고,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죽음』(1962)에 나타난 멕시코 혁명의 변이 과정」, 『이베로아메리카연구』 13권 (2002), pp. 91-115.

9) Adrian A. Bantjes, *As If Jesus Walked on Earth: Cardenismo, Sonora, and the Mexican Revolution* (Wilmington: Scholarly Resources, 1998), p. xvi.

10) Alan Knight, "The Myth of the Mexican Revolution," *Past and Present*, no. 209 (2010), p. 234.

고전적 제국주의 시대 이전에 독립을 이룬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의 지배 엘리트층은 정치적 안정을 찾은 1870-1880년대에 원주민 문화, 혼혈 또는 혼성(mestizaje) 문화를 근대화의 장애물이자 열등성의 근원으로 간주하고 서유럽과 미국을 발전의 모델로 삼아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홉스봄이 지적하듯이, 지배 엘리트들이 열중한 진보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점점 위세를 떨치기 시작한 미국을 의미했다.¹¹⁾ 19세기 말에는 특히 프랑스 문화가 유럽 지향적인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층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었고 1900년 무렵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상파울루는 ‘남아메리카의 파리’로 탈바꿈했다. 멕시코의 ‘포르피리아토(porfiriato)’¹²⁾는 이런 분위기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디아스는 집권 초기의 자유주의적 면모로부터 이탈하면서 경찰력에 의존해 과두제배 체제를 강화하고 대외의존적(개방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다. 디아스는 실증주의와 사회진화론을 신봉한 ‘과학과(científicos)’를 등용해 경제적 개방 정책을 실행하면서 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 수용하고 외국 기업과 소수의 측근에게 미개척지(terrenos baldíos), 수자원, 철도 등의 개발권을 제공했으며 대농장(hacienda)을 중심으로 상업적 농업을 확대했다. 그동안 중남부 지역 여러 곳의 원주민 공동촌락은 팽창일로의 아시엔다 체제와 대조적으로 계속 약화되었다. 대다수 멕시코인들은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북부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 세력 또한 정치적으로 배제되었기 때문에 디아스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정부’라고 불릴 정도였다. 한마디로 그의 통치는 개발 독재 또는 ‘질서와 진보’ 독재라고 부를 만했다.¹³⁾ 디아스와 측근들은 표백(漂白)이라 부를 만한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유럽계 백인 유입 정책을 모방하지는 못했지만, 원주민을 약화시키고 문화적 개조를 모색하는 인종주의적 기획을 추진했다.

미국은 19세기 말 이래 대규모 토지 소유와 기업적 생산을 통해 멕시코에 “사실상의 경제적 식민지”를 건설한 셈이었고 이 과정에서 멕시코인들의 미국 이주를 위한 근본적인 조건들을 만들어 냈다.¹⁴⁾ 디아스 정부는 멕시코를 개방해 해외 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미국 회사들에 대한 대규모 토지 공여와 철도 부설을 승인했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디아스의 미국 친화적 태도를 선호하는 동안 디아스 집권기 말에 광산과 철도 회사들은 멕시코 내 토지의 27퍼센트를 소유하거나 통제하기에 이르렀다.¹⁵⁾ 당시 대규모 투자자의 일원이었던 은행가 제임스 스페이어(James Speyer)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대체로 멕시코를 미국 경제의 속령(dependency)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¹⁶⁾

199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멕시코의 문인 옥타비오 파스는 이런 19세기 말의 분위기를 이렇게 요약한다. “19세기를 마감하면서 멕시코가 우리에게 남겨준 이미지는 불화의 그것이다. 어떤 정치투쟁이나 내전보다도 심각한 그 불화는, 단순히 우리의 현실을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을 고착화시키고 보수화시키려는 법률적, 문화적 형식들을 서로 획득하려고 경쟁하는 데 있다..... 우리는 거짓과 불모성에 중독된 삶을 살아온 것이다. 우리의 과거와 맺어져 있던 모든 연

11) 홉스봄, 『제국의 시대』, p. 508.

12) ‘포르피리아토’는 디아스의 집권기(1876-1911)를 지칭하는 일종의 시대 개념이다. 이 기간 동안 멕시코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젊은 사회로부터 완고한 구식” 과두제배 체제로 변모했다. John M. Hart, *Revolutionary Mexico: The Coming and Process of the Mexican Revolutio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p. 353.

13) Knight, “The Myth of the Mexican Revolution,” p. 232.

14) Mark Overmyer-Velázquez, “Introduction: Histories and Historiographies of Greater Mexico,” Mark Overmyer-Velázquez, ed., *Beyond la Frontera: The History of Mexico-U.S. Migration*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xxxv.

15) Gilbert G. Gonzalez, “Mexican Labor Migration, 1876-1924,” Overmyer-Velázquez, ed., *Beyond la Frontera*, pp. 31-32.

16) Friedrich Katz, *The Secret War in Mexico: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the Mexican Revolution*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p. 22.

관은 끊어지고, 미국과의 대화도 불가능해지고, 또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국민들과의 관계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죽은 형식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은 항상 우리를 무시하던 프랑스를 편향적으로 모방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질식 상태와 고독뿐이다.”¹⁷⁾

19세기 말 멕시코의 상황은 에스파냐에 맞선 독립투쟁에 가담한 쿠바의 투사 호세 마르티(José Martí)가 1891년에 털어놓은 고민과 비판을 떠올리게 한다. “칠삭둥이들(sietemesinos)은 단지 용기가 결여되어 있을 뿐이다. 자기의 땅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칠삭둥이(hombres de siete meses)이다. 용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부정한다. 병약한 팔, 손톱을 칠하고 팔찌를 찬 팔, 마드리드나 파리 사람의 팔로는 까다로운 나무에 닿을 리 없건만, 나무가 닿지 않는다 말한다. 자양분을 준 조국의 뼈를 갉아먹는 그 해충들을 배에 실어버려야 한다. 파리 사람이나 마드리드 사람이라면 얼음 음료가 있는 프랑스의 토르토니 카페나 가로등이 있는 에스파냐의 프라도 박물관으로 갈지어다. 아버지가 목수라고 부끄러워하는 목수의 아들들! 아메리카에 태어났으면서도, 원주민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는 이유로 키워준 어미를 부끄러워하고 아픈 어미를 부인하고 병상에 홀로 내버려 두는 못된 놈들!..... 훌륭한 통치를 하려면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메리카의 훌륭한 통치자는 독일인이나 프랑스인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아는 이가 아니다. 자기 나라가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떻게 이 요소들을 전부 이끌고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자기 나라에서 생겨난 방식과 제도를 통해 그런 바람직한 나라, 즉 각자가 자신을 알고 행하는 나라, 스스로 일해 풍요롭게 나라를 일구고 목숨 바쳐 지키는 국민 모두를 위해 자연이 선사한 풍요로움을 모두가 누리는 나라로 이끌고 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 통치는 자기 나라에서 생겨나야 한다. 통치 정신은 자기 나라 것이어야 한다. 통치 형태는 자기 헌법에 합치해야 한다. 통치란 자기 나라 자연 요소들의 균형일 뿐이다.”¹⁸⁾

디아스 체제는 외부 지향적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태된 심각한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거나 조정할 역량과 관심이 부족했고 이는 크나큰 파국을 낳았다. 1907년 미국 경제의 침체가 1910년 멕시코 혁명의 발발에 미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디아스 시대의 멕시코는 1870년대 이전보다 외부 충격과 자극에 훨씬 더 취약해졌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19세기 중반까지 만성적인 내전과 외세의 개입으로 멕시코의 전 세계적 분업 체제 편입이 지체되었지만, 그 과정에 들어선 뒤 속도는 빨랐고 충격은 컸다. 더욱이 미국의 인접국일 뿐더러 미국인들의 대규모 투자 시장이라는 사정은 미국 경제의 부침에 멕시코 농촌의 긴장과 갈등이 연동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¹⁹⁾

IV. 혁명의 장기적 성과와 혁명적 민족주의의 범위

멕시코 혁명의 목표는 민주주의의 실현, 농업개혁과 노동자 권리 보장, 외세의존적 발전 전략과의 결별과 민족주의적 노선의 확립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1917년 헌법’의 개혁 노선이 퇴색하고 있었을 때 혁명 세력의 마지막 세대인 카르데나스는 토지재분배, 노동 입법, 석유 자원의

17) 옥타비오 파스/손관수 옮김, 『고독한 미로』 (신원문화사, 1990), pp. 146-147.

18) 호세 마르티, 「우리 아메리카(Nuestra América)」, 우석균·조혜진·호르헤 포르넷 역음, 『역사를 살았던 쿠바: 우리 아메리카, 아프로쿠바, (네오)바로크, 증언 서사』 (글누림, 2018), pp. 16, 18.

19) Alan Knight, “Mexico’s Three Fin de Siècle Crises,” Servín et als. *Cycles of Conflict, Centuries of Change*, Knight, “Mexico’s Three Fin de Siècle Crises,” pp. 159, 182.

국유화 등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었다. 카르데나스는 집권기 6년 동안 약 1,800만 헥타르의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했다.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집단농장 에히도(ejido)에 수여했지만 이는 1920년부터 전임자들이 분배한 토지를 모두 합친 면적의 두 배가 넘는 규모였다. 또 카르데나스가 1938년 3월에 추진한 외국계 정유회사의 유정 수용과 석유 자원의 국유화 정책은 ‘혁명적 민족주의의 정점’이자 1970년대와 21세기 초에 라틴아메리카 일부 국가에서 추진하려 한 자원민족주의 또는 자원 국유화 정책의 선구적 조치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여러 연구자들은 1940년 이후 멕시코의 정치적 궤적이 카르데나스의 집권기와 판이한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카르데나스를 혁명의 대미를 장식한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목표와 이상은 ‘혁명의 제도화’로 대체되었다. ‘혁명의 제도화’는 권력 승계 과정의 위기 예방과 정치적 안정의 지속을 전제로 성립할 수 있었다. 1928년 대통령 당선자 오브레곤이 암살당한 뒤 ‘혁명의 최고지도자’로 떠오른 카예스는 여러 실력자들을 규합해 일종의 협약을 통해 1929년 3월에 국민혁명당(PNR)을 창설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카예스는 이 ‘혁명 정당’을 통해 정국을 좌우하고 점점 보수화하면서 다른 혁명의 목표로부터 멀어졌다. 그에게 ‘혁명의 제도화’는 국가의 제도적 구성을 더욱 구조화·집중화하는 것이었다. 1920-1930년대에 혁명 후 체제는 혁명의 산물인 새로운 제도, 예컨대 노동조합, 학교 체제, 교육부, 농업개혁 공동체인 에히도(ejido), 혁명 정당 등의 기반 위에서 강화되었다.²⁰⁾

또한 카르데나스가 석유 자원의 국유화 조치를 계기로 혁명 정당의 개편에 주력하고 집권 말기에 온건 노선으로 선회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카르데나스는 외국계 유정의 수용 조치 직후 국민혁명당을 멕시코혁명당(PRM)으로 개편하면서 농민, 노동자, 교사와 하급 관리, 군인 등을 ‘혁명 정당’의 네 부문으로 통합하고 결국 군대를 부문의 하나로 축소시켜 영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향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일당 체제와 기록적인 연속 집권의 기반을 다졌다. 아울러 군의 정치적 위상 축소, 즉 정치의 탈(脫)군사화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구별되는 멕시코 정치의 특징이 되었다. 따라서 카르데나스의 시대는 혁명의 완결이라기보다 일당 지배 체제의 형성 단계로 파악할 여지가 충분하다.

혁명의 승리자들이 권력의 유지와 공고화를 도모하고자 창설한 정당은 혁명의 제도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를 통해 멕시코는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지만 동시에 혁명 정신의 화석화를 야기했다.²¹⁾ 1910년 독재에 맞서 저항한 멕시코인들은 1940년 이후 역설적이게도 일부 연구자들이 ‘완벽한 독재’라고 부르는 체제와 대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길링엄과 스미스에게 ‘혁명 정당’을 주축으로 한 멕시코의 혁명 후 체제는 자원의 통제, 정치적 실용주의, 지방 자치, 대중의 반발 등이 어우러진 것이었고, 그 결과는 엄격한 독재(dictadura)가 아니라 부드러운 권위주의 체제(dictablanda)였다.²²⁾

한편 디아스 체제의 발전 방식을 외부 지향적 발전(desarrollo hacia afuera)이나 “발전(反)하는 성장”²³⁾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혁명 후 체제의 발전 유형은 내부 지향적 발전(desarrollo hacia adentro)이나 안정 성장(growth with stability)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1910-1960년에 세계 경제와 멕시코의 연계 정도는 약화되었고 정부의 개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경제 발전의 내향성이 강화되었으며 혁명의 사회 협약은 1970년대 초까지 유지되었다.²⁴⁾ 이런 발전

20) Knight, “The Myth of the Mexican Revolution,” p. 237.

21) *Ibid.*, p. 260.

22) Paul Gillingham and Benjamin T. Smith, eds., *Dictablanda: Politics, Work, and Culture in Mexico, 1938-1968*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4).

23) John H. Coatsworth, *Growth Against Development: The Economic Impact of Railroads in Porfirian Mexico* (DeKalb: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1).

전략과 정책의 변화는 혁명의 민족주의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었고 멕시코의 민족주의는 외국인들의 이익에 대한 규제와 축소, 특히 반미(反美)의 요소를 포함했다.²⁵⁾

혁명의 군사적 국면에 미국은 멕시코의 정국에 적어도 세 차례 개입했다. 1913년 2월 마데로의 암살 이전에 미국 대사 헨리 레인 윌슨은 마데로 정부의 전복 기획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았고, 1914년 4월 디아스 추종 세력을 압박하고 그들과 독일 제국의 연계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우드로 윌슨 행정부는 해군을 파병해 베라크루스 항을 7개월 동안 점령했다. 또 1916년 3월 9일 판초 비야의 뉴멕시코 콜럼버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존 퍼싱 장군은 비야를 체포하기 위해 1916년 3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까지 멕시코의 치와와와 소노라에서 토벌 작전을 전개했다. 혁명기에 이루어진 세 차례의 개입은 멕시코인들의 반미 정서를 확산시켰다.

V. 멕시코 혁명과 쿠바 혁명의 연대

1945년 이후에도 혁명적 민족주의의 수사는 지속되었지만, 냉전의 규정성, 달리 말해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면서 멕시코 정부는 대중 조직과 좌파 정치 세력을 배제하고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²⁶⁾ 멕시코의 혁명 후 체제가 미국의 이해관계를 강화하는 데 조력하고 있을 때 발발한 쿠바 혁명은 멕시코인들에게 자국 혁명의 민족주의적 특성을 되새기도록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

카르데나스 전 대통령은 1961년 4월 미국이 후원한 반(反)카스트로 세력의 히론 해안 침공(미국식으로는 ‘피그스만 공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쿠바 혁명 정부에 대한 연대와 옹호를 표명하고 직접 쿠바로 향하고자 했다. 당시 아돌포 로페스 마테오스(Adolfo López Mateos) 대통령은 카르데나스의 행동을 막아서긴 했지만, 1960년 1월 남아메리카 방문 일정 중에 멕시코가 1959년 1월 초 새로운 쿠바 체제를 인정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델 카스트로의 농업개혁과 자국의 농업개혁을 비교하고 양국 혁명의 연결 고리를 찾으려 했다.²⁷⁾ 또 1960년 8월 초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은 “카르데나스가 이끄는 다수의 멕시코인들이 여전히 쿠바 혁명과 멕시코 혁명의 목표 사이에 긴밀한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멕시코 정부의 지도자들은 카스트로 정권에 공공연히 적대감을 표출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파악했다. 아울러 멕시코와 쿠바의 친밀한 관계는 카스트로와 ‘7월 26일 운동’ 세력이 망명지 멕시코에서 전략을 준비하고 쿠바 침투 작전을 개시했다는 점, 멕시코 정부가 카스트로를 비롯한 쿠바의 청년 혁명가들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쿠바 송환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카르데나스가 1956년 8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며 중단시킨 사실, 1956년 11월에 ‘7월 26일 운동’ 세력이 발표한 선언문이 쿠바로 유입되는 과정뿐 아니라 중요한 계기마다 적잖은 멕시코인들이 혁명의 주역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점, 1960년 6월 초 쿠바 혁명 정부 사절단의 멕시코 방문 시 로페스 마테오스 대통령과 멕시코 국민들이 열렬히 환영했다는 사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⁸⁾

쿠바 혁명은 멕시코 혁명이 원래 지향한 목표와 독립, 불간섭, 사회적 진보 같은 혁명 정신을 다시 일깨우고 환기시켰다고 할 수 있다. 쿠바 혁명 세력의 정권 장악 직후 수많은 멕시코인들이

24) Knight, “Mexico’s Three Fin de Siècle Crises,” pp. 158, 161, 169.

25) Katz, “International Wars, Mexico, and U. S. Hegemony,” p. 197; Knight, “Mexico’s Three Fin de Siècle Crises,” p. 160.

26) Katz, “International Wars, Mexico, and U. S. Hegemony,” pp. 206, 208.

27) Keller, *Mexico’s Cold War*, pp. 1-2.

28) *Ibid.*, pp. 44, 48, 63, 69.

그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학생과 노동자뿐 아니라 카르데나스 같은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들까지 쿠바 혁명을 희망과 영감의 기회로 포착하고자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들에게 카스트로의 성공은 곳곳에서 새로운 또는 새로워진 혁명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었다.²⁹⁾ 1961년 3월에 카르데나스와 작가 카를로스 푸엔테스 등은 멕시코시에서 라틴아메리카평화회의(“국가의 주권, 경제적 해방, 평화를 위한 세계 평화 운동의 라틴아메리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의 이목을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적 여건에 쏠리게 하고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이 전개하는 제국주의적 활동을 비난하며 쿠바 혁명 수호에 조력하고자 했다. 평화회의의 주최자들에 따르면, 쿠바의 수호는 라틴아메리카의 방어였다.

1961년 4월 히론 해안 침공 사태는 쿠바보다 오히려 미국과 멕시코에서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침공 사태는 멕시코 전역에서 자발적이고도 떠들썩한 항의 시위, “카스트로 찬성, 양키 반대 (Castro Sí, Yankees No)”라는 군중의 구호, 그리고 ‘민족해방운동(MLN),’ ‘독립농민센터’ 같은 새로운 좌파 단체의 출현을 촉발했다. 더욱이 대중사회당과 멕시코공산당의 당원들은 쿠바로 떠날 준비를 갖추고 스스로를 멕시코 혁명 영웅의 이름을 따서 ‘프란시스코 비야 여단’으로 칭하기도 했다.³⁰⁾

한편 카르데나스의 활동에 반대해 또 다른 전직 대통령 에밀리오 포르테스 힐이 신문에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양자 간에 논쟁이 벌어졌는데, 흥미롭게도 이들은 모두 히론 해안 침공 사건 이후 각자의 정치적 행보를 멕시코 혁명을 지키고 계승하는 작업으로 여겼다. 포르테스 힐은 카르데나스가 주도한 조직 ‘민족해방운동’이 소련의 명령을 추종해 멕시코 혁명의 경로를 벗어나게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³¹⁾ 반면 카르데나스는 쿠바의 민주주의, 민족주의(경제적 탈식민화와 독립),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혁명을 멕시코 혁명의 원래 목표를 환기시키고 일깨워주는 충고와 조언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1960년대 초 아메리카 대륙이 비대칭적인 냉전 대립에 휘말리게 되자 쿠바 혁명과의 접점으로 되살린 탈식민 운동으로서의 멕시코 혁명은 정부와 제도혁명당의 체질을 크게 바꾸지는 못했다. 1962년 1월 말 우루과이의 몬타텔레스테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회의는 “아메리카 대륙의 어떤 국가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고수하는 것이 미주기구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고 공산권과의 동맹은 아메리카의 단합과 유대를 깨뜨리는 행위이므로 쿠바의 현 정부를 미주기구에서 배제”할 것을 결의했다. 이 결의안에 대해 14개국이 찬성하고 쿠바만 홀로 반대하는 가운데 멕시코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에콰도르와 함께 기권했다.³²⁾ 민주주의의 회복과 경제적 독립을 지향하려는 쿠바 혁명의 탈식민 민족주의적 속성은 냉전의 이념 대립 속에서 심각한 굴절을 겪었다. 멕시코 혁명 역시 더 이상 이름값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멕시코 혁명이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혁명의 의미와 무게는 이전과 달라졌다. 1960년대 중반 혁명 후 체제는 신중하고 보수적이며 자본친화적인 정책과 익숙한 혁명적 수사를 결합시키려 했지만, 그런 까닭에 한편에서는 혁명 수사의 남발과 실천 간의 괴리가 커졌고,³³⁾ 다른 한편에서는 혁명의 죽음을 공언하면서 정부의 후원과 포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행보를 선택하려는 사

29) *Ibid.*, p. 60.

30) *Ibid.*, p. 101.

31) *Ibid.*, pp. 109-110, 112, 114.

32) Edward A. Jamison, “Cuba and the Inter-American System: Exclusion of the Castro Regime from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The Americas*, vol. 36, no. 3 (1980), p. 343.

33) 1940년 이후 수십 년 간 멕시코 정부는 퇴행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관리자가 되었고 불평등의 증대를 초래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혁명적 구호, 달리 말해 민족주의적, 개혁적, 포퓰리스트적 원칙을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Knight, “The Myth of the Mexican Revolution,” pp. 264, 266.

탈식민 운동으로서의 멕시코 혁명

회 운동 세력이 등장했으며 드물긴 했지만 루벤 하라미요(Rubén Jaramillo) 같은 왕년의 혁명가나 루시오 카바냐스(Lucio Cabañas) 같이 그들에게 영감을 받은 새로운 세대의 무장 저항도 나타났다.

제 3 발표 토론문

박구병, 「탈식민 운동으로서의 멕시코 혁명」

김 윤 경 (한국외대)

이 논문은 1910년에 일어난 멕시코 혁명을 민족주의와 민중에 바탕을 둔 농민혁명으로 보는 전통적인 해석과, 북부 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르주아혁명으로 보거나 중앙과 지방의 대립으로 보는 등의 수정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탈식민 운동이라는 좀 더 넓은 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멕시코 혁명을 반제국주의적, 식민지 해방운동의 전조로 보는 흡스봄이나 독립 후 1세기 정도의 기간을 장기지속의 관점으로 보려는 앨런 나이트의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멕시코 혁명을 탈식민 장기지속의 관점에서 “대외 의존적 디아스 체제에 맞선 혁명”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멕시코 혁명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한국의 라틴아메리카 학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혁명은 발표자가 언급했듯이 혁명에서 승리한 북부 자유주의 세력들이 혁명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점점 보수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혁명 정당’을 주축으로 하는 일당지배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혁명세력은 석유 자원을 국유화하는 등 혁명적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대내적으로는 오히려 노동자, 농민, 교사, 군인 등을 혁명정당 내부로 통합하고 정치의 탈군사화를 피하면서 권위주의 체제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탈식민 운동’이라고 했을 때 ‘탈식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지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세기 중엽 이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300여 년 간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룩했지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전히 식민지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유럽을 대신하여 미국의 신식민적 지배가 더해지면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식민성은 심화되었습니다. 멕시코 혁명을 ‘탈식민 운동’으로 규정할 경우 어떤 면에서 탈식민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탈식민적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록 자유주의 혁명세력들에게 패함으로써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멕시코 혁명에서 사파타운동과 비야운동이 수행했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사파타운동이 추구했던 ‘토지와 자유’는 오늘날까지도 멕시코에서 탈식민을 외치면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운동, 특히 원주민운동의 이념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립 후 장기지속의 관점에서 멕시코 혁명을 검토하고자 할 경우에 혁명에서 이들이 추구했던 가치와 역할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발표자는 쿠바 혁명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통해서 멕시코 혁명이 탈식민

탈식민 운동으로서의 멕시코 혁명

운동을 되살리고자 했지만, 결국 정부와 제도혁명당의 체질을 크게 바꾸지는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된 요인으로 냉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냉전이라는 대외적인 상황이 쿠바 혁명뿐 아니라 멕시코 혁명이 제도화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멕시코 혁명이 탈식민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한 데에는 그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혁명세력의 한계라든가 혁명 후 멕시코의 국내적 상황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동아시아 「국민국가 패러다임」

생성·진화의 동시성

- 三一 100년 ·五四 100년의 國家理想 -

전 인 갑 (서강대)

- I . 문제의식
- II .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생성과 확산
- III .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동아시아적 진화
- IV .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전환: 동시성의
파탄인가?
- V . 맺음말

동아시아 「국민국가 패러다임」 생성·진화의 동시성

- 三一 100년 ·五四 100년의 國家理想 -

전 인 갑 (서강대)

I. 문제의식

올해는 3·1운동과 5·4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과 중국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치 않을 만큼 두 운동은 양국의 근현대사 전개에 그리고 오늘날의 국가 이상 설정과 국가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다. 그런데 두 운동은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바, 시대적 필요, 이념적 필요, 정치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끊임없이 ‘현재’로 소환된다는 점이다. 제각각의 필요에 따라 소환되는 삼일과 오사는 다양한 논리와 해석을 동반했다. 그리하여 三一談論 그리고 五四談論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삼일담론과 오사담론의 공간은 삼일 혹은 오사라는 특정한 역사 현상과 그 해석을 둘러싸고 대단히 대립적이고 모순된 논리가 충돌하는 담론공간이다. 또한, 이 공간에서는 삼일 혹은 오사의 역사적 실체와는 거리가 있는 삼일과 오사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3·1운동의 이미지와 역사적 의미가 현재의 필요와 만들고자 하는 國家理想에 의해 재구성되어 온 과정은 삼일운동에 관한 연구사를 살펴보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최근 3·1운동 연구사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3·1운동은 시대정신이 변할 때마다 다시 소환되곤 한다. 3·1운동의 역사적 재소환은 새로운 학문적 과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당대의 정치 사회적 필요와 요청에 따라 재의미화 작업을 거치기도 했다. (중략) 8·15 해방 직후에는 각 정파가 자신의 과거 활동을 합리화하고 미래의 정치적 비전을 선전하기 위한 명분으로 3·1운동을 소환했고, 학계의 연구도 그 자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분단의 고착화 이후 그러한 현상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직후에는 3·1운동 연구가 민족해방운동과 민주화운동에서 민중의 역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 고양과 함께 분단 이후 굴절된 한국 사회의 역사의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의 응축된 경험이 (중략), 또 학계의 연구를 자극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3·1운동을 한국 민족주의의 원류로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로 인식하여 그 발현 양상을 사상적, 조직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¹⁾

오사담론 역시 삼일담론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필요’ 그리고 각자 지향하는 國家理想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사실 우환 의식을 가진 20세기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오사는 傳家の寶刀였다.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여 강한 중국으로 귀환하려는 자, 근대/근대성을 추구하는 자, 근대를 진리로 사유하는 자, 과거와의 단절과 청산을 희망하는 자, 전통의 질곡에서 벗어나고자 분투하는 자, 예교 질서를 해체하고 개인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자, 그 대상이 장제

1) 정용욱, 「3·1운동사 연구의 최근 동향과 방향성」, 『역사와 현실』 110 (2018), pp.295-296.

스든 마오쩌둥이든 무관하게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자 그리고 중화 문명의 붕괴와 중화라는 문명체의 해체, 중국인이라는 種族의 사라짐(亡種)을 깊이 우려하여 혁명을 선택한 자들에게 오사는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실천의 명분과 이념을 제공했다.

오사는 자신들의 목적에 복무하는 ‘진리’로, 또는 자신들이 지향하는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환되기 일쑤였다. 엄격히 말하자면 오사는 ‘이상’이 아니라 20세기 중국인들이 디자인하려는 중국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일 것이다. 사실 소위 五四傳統은 오사 이후에 만들어진, 그리고 해석된 전통일 뿐이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운위하는 오사는 오사운동 이후 수많은 오사담론이 만들어낸, 그리고 그 내용이 부단히 확충되고, 그 논리가 정교하게 다듬어진 오사라고 해도 크게 틀린 지적은 아니다.

100년 전 오사의 실태는 그 후 수많은 오사담론이 생산한 오사의 내용과 때로는 배치되기도 하고 때로는 과장되기도 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100년 전 오사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특정 측면이 편향적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구국의 압력이 늘어날 때는 오사의 정치적 측면의 내용을 훨씬 많이 기억해내었고, 사회 분위기가 지식인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유리할 때는 계몽적 수요에 맞추어 민주와 과학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사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도덕적 기준(진리)이 되기도 했다. 반대자를 억압하거나 담론 주도권을 둘러싼 쟁탈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오사정신과 오사가치를 專有하고, 오사전통의 적통임을 자임하는 것이 필요했다. 오사를 폄훼하거나 자신들이 내세우는 오사의 가치와 대립하는 자 혹은 담론 경쟁자를 계몽의 이상과 救亡의 先務에 반하는 수구, 보수, 반계몽, 반근대의 후진적이고 ‘봉건’적 존재로 충분히 덧씌울 수 있었다. 反救亡의 반민족적, 매국적 존재로 전락시킬 수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양한 오사담론은 오사신문화운동의 내용적 다양성과 복잡성에서 연원한다는 사실이다. 오사는 근대적 국민국가와 관련한 거의 모든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nation state)란 무엇이며, 개인(individual)과 국민(서구의 경우는 시민과 시민사회 civil society)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중국은 개인, 국민, 국가를 어떻게 디자인(建構)하여 국민국가를 완성할 것인가에 대해 서구의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여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오사신문화운동이 처음이었다. 또한, 오사신문화운동의 선구자들은 서구가 창안한 보편가치의 제반 내용-예컨대 민주, 자유, 평등, 개인주의, 인권-과 과학, 자본주의, 시장주의, 민족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등 현대사회의 핵심적 사상 명제를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오사의 주역들은 노동문제, 실업주의, 입센주의, 루소 철학, 인구와 청년 문제, ‘모던’ 문제, 전통과 현대의 긴장 문제 등에도 천착함으로써 현대성(modernity)의 문제를,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안으로 드러냈다.

오사가 제기한 문제는 이처럼 현대의 핵심적 사상 명제와 현대사회가 직면한 매우 다양한 현안을 거의 모두 포괄하였다. 오사의 이와 같은 내용적 다양성과 복잡성은 오사담론이 다원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토양이 되기에 충분했다. 오사는 중국 근현대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오사를 빼고서 20세기 중국사의 전개를 상상할 수 없다. 20세기 중국사를 五四의 흐름 대 反五四의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역사의 전면을 화려하게 장식한 현상이 오사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100주년을 맞는 3·1운동과 5·4운동이 같은 시기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국가이상을 지향하며 전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실 삼일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오사운동 나아가 약소민족의 민족운동과의 동시성에 주목하여 해석하려는 연구는 이미 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올해에도 적지 않은 연구들이 3·1운동과 5·4운동 나아가 아시아 약소민족 민족운동의 관계를 역사적 동시성 속에서 파악하려 한다.²⁾ “양자의 ‘세계사적 의의’를 ‘동시성(simultaneity)의 관점’에

2) 이와 관련해서는 백영서, 「연동하는 동아시아와 3·1운동-계속 학습되는 혁명」, 『창작과 비평』 183

서 재정립”하는 한편 삼일과 오사를 “글로벌한 역사 속의 ‘동시성’”을 해명하는 작업³⁾의 일환으로 본고는 한국과 중국에서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생성되어 진화 발전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에서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생성되어 진화하는 현상의 동시성을 살펴보는 것이 본 발표의 목적이다.

발표자 능력의 부족으로 국민국가 패러다임 생성과 진화 문제는 대부분 중국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다. 다만 삼일과 오사가 동시적으로 추구한 국민국가 패러다임이라는 두 나라의 國家理想이 진화하는 양상의 異同에 대해서는 필요한 서술 부분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오사는 「근대의 보편가치」 수용,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 「반제·민족주의」 실현이라는 세 가지 명제를 던졌다. 그 후 다양한 오사담론 그리고 소위 오사정신은 ‘필요’에 따라 이 세 명제가 변주되며 그 내용이 만들어졌다.

동아시아의 20세기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시대였다. 20세기 중국에서 서구 근대성의 수용과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은 ‘우상’이자 반드시 추구해야 할 ‘진리’였다. 이 글에서는 자유, 평등, 민주, 인권 등 근대 서구가 창안한 보편가치와 개념, 민족주의, 국민국가/민족국가를 ‘진리’로, 그 실천을 당위로 여기는 사유방식을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 정의한다. 말하자면 이 패러다임은 근대 서구가 생산하고 오늘날의 미국이 심화 발전시킨 이념과 가치 그리고 개념을 전제로 자신과 세계를 사유하고, 실천의 준거로 삼는 사유방식이다. 동아시아 근현대의 역사 현실에서 이 패러다임은 「근대의 보편가치와 개념」 수용⁴⁾,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⁵⁾, 「반제·민족주의·(반패권)」 구현이라는 세 갈래의 시대적 명제를 실천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 세 개의 시대적 명제 중에서 반식민, 반제, 반패권, 민족주의(국민주의, nationalism) 그리고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와 인민이 공유한 핵심 명제이자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골레였다.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20세기 후반기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쳐 역설적이게도 동아시아 각국 간 소통과 공감 그리고 갈등의 토양으로 작용했다. 동북공정을 비롯하여 심각한 한중일 간의 역사를 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오사담론, 삼일담론의 토양이었다. 오사담론, 삼일담론의 궁극적인 귀착지는 어떤 중국, 어떤 한국을 건설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어떤 중국, 어떤 한국을 건설할 것인가의 내용에 따라 이들 담론은 진화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이하 국가건설로 표현) 과정을 추적하면서 오사담론과 삼일담론의 진화 양상을 초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또 하나의 과제는 오사와 삼일의 미래를 전망하는 작업이다. 오늘날 중국의 부상으로 야기된 충격 중의 하나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파탄 가능성이다. 오늘날 중국의 지식인 엘리트나 권력 엘리트는 합심하여 文明立國에 진력하고 있다.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내포하며 문명입국 패러다임으로 사유방식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토양으로 성숙했던 ‘오사신화’가 이러한 전환 속에서 어떠한 미래를 맞을 것인가를 초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중국을 재조(再造)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이처럼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셔널리즘 혹은 국민국가 중심

(2019), pp.38-39 참고.

3) 백영서, 「역동하는 동아시아의 1919」, 『개념과 소통』 23 (2019), p.7.

4) 자유, 평등, 민주 등 근대의 보편가치 수용은 항상 심각한 논란을 수반하였다. 이 문제는 중서문화 논쟁의 핵심 쟁점이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중체서용론 등장 이후 100여 년 이상의 사상/문화논쟁에도 불구하고 그 수용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하고 있으나, 향후 이 개념들의 중국적 재개념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이하 본고에서 사용하는 국가건설(state building)은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을 의미한다.

의 사유방식/국민국가 패러다임을 미래의 국가이익에 최적화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國家理想)으로 어떻게 진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II.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생성과 확산

중국제국은 스스로를 天朝라 칭하고 지배영역을 천하로 확장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고 주도로 운영한 질서를 천하질서, 자신들이 생산한 이념과 가치를 천하주의라 하여 중국의 질서와 중국의 가치를 보편화하였다. 실질은 그러하지 않았고, 중국 스스로도 자신의 패권에 상응하는 경쟁자의 존재를 ‘인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처럼 보편적 존재로 인식하였음은 물론이고 중국 밖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처럼 인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방식을 중화주의라 한다. 전통시대 중국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중화주의는 보편주의/(세계주의)의 다른 이름이라 하겠다. 이러한 보편주의를 전제로 작동되는 질서를 중화질서라 한다. 이러한 보편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중화체제라 부른다.

중국제국은 진의 시황제 이래 ‘문명제국’, ‘보편제국’을 표방할 만한 역량을 갖고 있었다. 패권과 문명이 그것이다. 우선 패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대내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질서를 구축하여 제국의 內境 전체를 하나의 중국으로 통합할 수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구축하고 자신의 필요(時變)에 따라 그 질서를 변경하면서 유지하였다. 중화질서는 대내적으로는 중앙집권질서, 대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로 이원화하여 작동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문명의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제국은 보편가치와 보편이념을 생산하고, 이를 ‘세계의 표준(Global Standard)’으로 확산시켰다. 이러한 가치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해야 하는 규범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사람들은 그러한 가치와 이념에 따라 사유하고, 그러한 규범과 제도에 맞게 행동한다. 말하자면 당위로 여겨야 하는 패러다임이 형성된다. 우리는 이것을 유교적 사유방식 혹은 천하주의적 사유방식이라 부른다.

중국의 근현대사는 문명제국, 보편제국의 붕괴로부터 시작한다. 이 붕괴를 천하질서의 해체라고 하고, 중화질서/중화체제의 해체라고 흔히 말한다. 그런데 이를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하자면 문명제국, 보편제국은 국민국가(nation state, 이 글에서는 민족국가 대신 국민국가로 표현)로 바뀌어야 했고, 천하체제(중화체제)는 ‘평등’한 국가들이 병립하는 국가 간 체제(interstate system)로, 천하질서(중화질서)는 대내적으로는 집권질서가 분권질서로, 대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위계적 질서)가 조약질서로 불리는 근대적 국제질서(‘대등’한 질서)로 대체되어야 했다. 그리고 사유의 패러다임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했는데, 천하주의적 사유방식이 민족주의적 사유방식 말하자면 규범과 질서, 체제와 제도의 원천인 이념이 천하주의(천하/문명)에서 민족주의(nationalism 국민국가/민족)로 바뀌어야 했다.

근현대 중국인에게서 근대의 수용이란 이러한 변화를 ‘상식(or 당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 100여 년 동안 중국인들과 그리고 동아시아인들은 민족주의에 충실하게 헌신하고, 국민국가 건설에 매진해야만 했다. 이러한 변화는 양무운동이 실패로 귀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유방식-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이 변화의 본질은 천하주의를 전제로 한 문명제국 패러다임이 민족주의를 상식/당위로 여기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등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이 패러다임은 장구한 중국사에서 면연히 이어져 오는 중국 고유의 천하주의적 사유방식- 특히 중국의 전통적 국가론-과는 매

우 이질적인 사유방식이었다. 그럼에도 근현대 중국은 이 패러다임에 압도된 시대였고, 이것은 국가건설의 대전제였다. 양무운동의 실패로 제국체제가 본격적으로 붕괴의 길에 접어들면서부터 20세기가 종언하는 시기까지 중국은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에 매진한다. 그 길은 길고도 긴, 그리고 혁명과 건설, 혼란과 격동, 실패와 좌절 그리고 기대가 혼재하는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그럼에도 국민국가를 성공적으로 건설하여 ‘강한 중국’을 회복하려 했던 고난의 여정은 20세기 내내 계속되었다. 이러한 強國夢은 청 말 민국 초부터 최근까지 거의 모든 지식인 엘리트와 권력 엘리트의 공통된 염원이었다. 이 염원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체제구상이 제시되었다.⁶⁾ 권력 엘리트들도 자신들이 디자인한 ‘강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집권 경쟁에 돌입했다.

이 패러다임은 청 말 변법운동기 중체서용론적 체제구상이 본격적으로 모색되는 환경 속에서萌芽되기 시작하여 五四에서 시대적 명제로 확립되었다. 청말민국 초에 梁啓超는 이 패러다임 생성을 선도했다. 그는 문명이 아니라 민족에서 중국의 미래를 찾고자 했다. 그런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패러다임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발전한 것은 五四였다. 그 후 이것은 20세기 중국이 숙명처럼 추구해야 했던 ‘우상’이 되었다.⁷⁾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이천여 년 동안 상식으로 당연시된 황제지배체제가 무너지고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리하여 공화정치, 의회정치가 중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신해 직후 이상주의가 사회 전반을 압도하는 분위기였다. ‘강한 중국’ 회복을 향한 중화민국의 도전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중화민국은 태생적으로 국가건설을 추진할 만한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없었다. 신해혁명 그리고 중화민국 탄생 자체가 분권적 흐름이 만들어낸 청 제국 몰락의 결과이기 때문이었다.⁸⁾

각 省이 청 제국의 지배에서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청 제국이 무너졌고, 독립을 선언한 각 성이 모여 중화민국을 건국했다. 이로 인해 신해혁명 이후의 지역(군벌) 割據는 불가피했다. 중앙집권적 국가건설을 도모했던 袁世凱의 실험이 끝나자 곧바로 군벌체제가 등장하고 중국은 항상적 전시상태로 빠져들었다. 그리하여 신중국 건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군벌로 상징되는 분권적 경향이 강화되어 공화제에 의한 국가건설은 좌절의 위기에 봉착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분권적 경향의 강화 다시 말해 영토적 분열은 새로운 국가건설의 전제가 되었던 제국의 영토적 통합성의 계승과 유지라는 전제에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그러므로 민국 초 그 어떠한 권력도 국가건설 주체로서의 정당성을 원천적으로 확보할 수 없었다.”⁹⁾

이에 신해혁명의 성과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기에 이른다. 그 결과 구질서, 구가치, 구관념의 철저한 청산과 ‘민주와 과학’을 전제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문화혁명이 오사 신문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었다.¹⁰⁾ 오사의 핵심어는 단연 전통의 단절과 청산이고, 청산의 대안은 서구 근대의 수용이었다. 오사가 추구한 문화중건 방식은 서구의 가치, 개념, 사유방식, 규범과 제도를 수용하여 중국을 새롭게 건설하려는 수용형 문화중건 방식이었다.

이러한 발상의 결정적 중요성은 유교적 보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문명제국 패러다임을 급속히

6) 康有爲, 梁啓超 등 입헌파, 孫文 등 혁명파의 체제구상에서부터 훈정론과 헌정론의 충돌 등 다양한 구상이 제기된다.

7) 물론 국민국가 모델이 아닌 다른 선택지도 있었다. 예컨대 康有爲의 체제구상이다. 그는 중국이 보편제국에서 국민국가 중의 하나로 바뀌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그리고 이를 인식했음에도-에서도 문명과 보편가치를 국가의 根基로 삼는 문명국가를 중국이 만들어가야 할 국가 모델로 제시하였다.

8) 이 말은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청 제국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청 제국이 붕괴한 결과 중화민국이 탄생했고, 결과적으로 신해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신해혁명 이후 정치적 혼란과 군벌 혼전의 근원이 여기에 있었다.

9) 출처, 『현대중국의 제국몽』 (학고방, 2016), p.112.

10) 위의 책, p.308.

단절하고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였다는 사실이다. 중화를 문명의 표준으로 여기는 사유방식이 서구를 문명의 표준으로 삼는 사유방식으로 전환되는 국면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유교적 보편가치를 진리로 여기는 사유방식이 개인의 주체성과 자유를 진리로 여기는 사유방식으로 대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격심한 표준논쟁, 가치논쟁, 문화논쟁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오사가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확산시킨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오사는 중국인이 서구의 보편가치를 전제로 서구의 개념과 용어로 사유해야 하고, 그러한 사유 방식에 따라 중국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를 활짝 열었다. 오사는 사유의 기준과 실천의 방식이 중화에서 서구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자유, 평등, 민주, 공정, 휴머니즘, 인권 등은 당위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되었다. 五常이라 불리던 仁義禮智信이라는 유교적 보편가치가 폐기의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오사 이후 격렬한 표준논쟁과 가치논쟁 나아가 문화논쟁이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변화 때문이었다.

둘째, 오사를 계기로 반제·민족주의는 중국이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당연히 추구해야 사조가 되었다. 또한, 오사는 근대 중국의 민족주의를 종족주의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 漢族民族主義)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nationalism)로 진화하였다.

셋째, 오사는 국민국가의 주체를 만들어냈다. 국민의 형성은 근대적 국민국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건이다. 국가의 책임 있는 구성원인 국민은 전통시대의 被治者 民과는 다른 존재이다. 오사는 개체의 해방과 주체성 그리고 개인의 가치(인권), 정치적 권리(민주)를 중시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주체인 국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지적/정치적 환경을 제공했다.

오사가 확립한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그 후 중국을 再造하는 이념이 되고, 국가건설을 위한 실천의 규범이 되었다. 소위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오사전통 혹은 오사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불가침의 권위를 갖게 되고 국가건설을 위한 ‘기호/신화’로 진화하였다. 20세기 중국의 새로운 정치제도, 사회제도는 오사가 생산한 이 패러다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크게 받았음은 부정할 수 없다. 신화가 된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1930년대 이후 줄곧 그 내용이 확충되면서 국가건설의 전범으로 뿌리 내리게 된다.¹¹⁾

Ⅲ.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동아시아적 진화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동아시아적 진화란 동아시아 각국이 고유의 역사와 문화, 지향하는 國家理想 등 각국의 실정에 따라 각국 고유의 길과 방식으로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분화 발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 역시 20세기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중국 고유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길에 따라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재구성이 진행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적 재구성이란 국민국가 패러다임과 문명제국 패러다임을 융합하여 중국 특색의 그리고 중국 고유의 패러다임을 발신하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문명제국 패러다임을 근대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움직임과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이 두 움직임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였다.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중국적 재구성과 문명국가 패러다임의 근대적 재구

11) 이 패러다임이 전형적으로 실험된 시기는 중화인민공화국 前 30년이였다. 이 시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제정되고 중국공산당의 일당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1954년)부터, 문화대혁명으로 ‘폐기’된 헌정이 회복되는 1982년(신헌법 공포)까지이다. 이 시기는 비자본주의적 국가건설의 길-신민주주의 방식을 ‘조급’하게 폐기하고 사회주의적 국가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한 시기다.

성을 위한 움직임이 1930년대와 1990년대~2000년대에 주류 국가건설 담론 그리고 주류 문화담론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오사가 정립한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중국의 부상’을 추동한 결과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서구 근대가 생산한 보편가치, 서구의 개념과 사유방식으로 국가건설을 해야만 강국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진리’가 「오사정신」이고, 이러한 시대정신의 근거에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중화가 부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고, 이를 전제로 형성되고, 작동되었던 문명국가 패러다임-이 패러다임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범, 질서, 제도 등- 역시 철저한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¹²⁾ 이러한 변화가 20세기 중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1930년대와 1990년대~2000년대 ‘중국의 부상’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중국의 부상’을 계기로 전통의 긍정과 중화의 발굴을 통해 문명제국 중국이 생산한 가치 그리고 중국의 개념과 사유방식을 근간으로 삼아 중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국가건설 담론과 문화담론이 지식인 엘리트뿐 아니라 권력 엘리트 사이에서 크게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말하자면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중국의 부상을 실현하고, 중국의 부상이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중국적 재구성을 자극하여 ‘중국의 길’과 ‘중국의 방식’으로 중국 (특색/고유)의 패러다임을 창안하려는 움직임이 형성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蔣介石의 국민당 정부가 국가건설에 성과를 거둔 시기에 나타났다. 이 시기는 蔣介石이 중국을 재통일(1928년)한 이후부터 중일전쟁 발발(1937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국가건설 전략이 오사에서 정립된 국민국가 패러다임에 따라 추진한 최초의 시기였다.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주요한 발현 형식이 국가통합(국민국가의 영토, 집권체제), 국민통합(이념적 통합, 정치적 통합), 반제·민족주의의 실현(국민국가의 주권 확립)이라고 한다면 이 세 측면 모두에서 蔣介石의 국민정부는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국민정부의 전략은 ‘건국 10년’이라 말할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성공으로 다음 두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1930년대 중국의 부상이다. 정치·영토적 통일의 실현, ‘건국 10년’으로 상징되는 안정적 경제발전, 삼민주의 이념 기반의 강력한 국민통합 그리고 중국국민당의 안정적 권력 장악력, 중화의 자신감 회복은 당시에 목격된 ‘중국의 부상’ 현상이었다. 중국의 부상은 청일전쟁 이후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구조를 동요시킬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소수 지식인 사이에 벌어진 논전이라 해도 1920년대 말, 30년대 초에 벌어진 일본의 「中國統一化論戰」을 통해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일본의 위기의식을 읽을 수 있다.

1930년대 일본의 중국 침략 강화는 蔣介石 정권에 의해 빠르게 진행되던 중국의 부상에 대한 반작용인 측면이 강하다. “중국 내셔널리즘에 도전한 최대의 열강은 일본 제국주의였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일본은 신생 중국이 통일 국가가 되어 재생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고, 중국이 필요로 하는 안정적 환경을 파괴”하려 한 것이 일본의 대륙침략 강화였다.¹³⁾ 일본의 전면적인 대륙침략은 ‘황금 1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중국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데 대한 견제의 성격이 강했음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 그간의 정치적, 경제적 성취가 形骸化되었을 뿐 아니라 ‘강한 중국’ 건설에의 기대감(強國夢)이 좌절을 맞보게 되었다. 이것은 삼민주의를 유일 이념으로 삼아 추진한 자본주의적 국가건설의 추진력이 현저히 약화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12) 이를 논급하는 자는 反五四, 反啓蒙 말하자면 復古, 守舊, 保守일 뿐 아니라 반민족적·반혁명적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그런데 역사 평가에 있어 이러한 움직임이 내포한 ‘계몽’적 측면이 지나치게 홀시된 측면이 있다.

13) 橫山宏章, 『中華民國-賢人支配の善政主義』(中央公論社, 1997), p.200.

‘건국 10년’이라는 자본주의적 국가건설의 성과가 이 시기 동안 무력화되었다.

둘째, 강한 중국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민족주의 그리고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중국적 재구성이 운위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문화 보수주의의 급속한 확산이 그것이다. 중국의 재통일, 경제적 번영, 정치·사회적 안정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서 벗어나 ‘강국몽’을 실현할 새로운 국가건설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민족주의 강화로 이어지고 중화의 길, 중화의 역량, 중화의 사유방식으로 중국의 국가건설을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新儒學이 유행하고, 중국본위문화논쟁을 필두로 하는 문화 보수주의 사조가 맹위를 떨치게 되는 이면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저류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 보수주의에 해당하는 사조나 문화론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1920년대 동방문화파, 현학과, 동방잡지 그룹, 학형 그룹에서 문화 보수주의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는 <10교수문화선언>으로 유명한 중국문화본위파, 학형 그룹이 분화 발전한 『國風』 그룹과 『時代與思想』 그룹, 張東蓀이 주도한 多元文化論, 劉詒徵과 張蔭麟 등이 주도한 信古派, 그 외에도 中央大學과 浙江大學을 무대로 전개된 ‘東南學派’ 등이 문화 보수주의 흐름을 주도했다.

그런데 문화 보수주의 문화담론을 이론적으로 수준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린 것은 신유학이었다. 이 시기 신유학은 문화 보수주의의 정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군의, 모종삼, 하린, 풍우란, 웅십력 등이 주도한 신유학은 보편적 윤리와 도덕을 기반으로 중국문화의 이상형을 제시했으며, 그러한 이상형을 구현한 새로운 중국-제도, 질서-을 건설함으로써 현재의 중국을 문화주의가 지배했던 중국제국의 문명사적 계승자로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중국의 중화성-다른 용어로 말하자면 중국적 표준(Chinese Standard)-을 토양으로 大一統 중국이 귀환하는 상태가 이들이 꿈의 최종 귀착지였다.

IV.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전환: 동시성의 파탄인가?

鄧小平은 개혁개방의 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시대로 중국을 변모시켰고, 비자본주의·비사회주의 방식으로 국가건설을 추진하였다. 덩샤오핑이 선도한 개혁개방의 시기는 문화대혁명 때 사실상 사문화한 헌법을 ‘전면개정’¹⁴⁾하여 공포한 1982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청 말 이래 입헌/헌정은 국가건설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였다.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제정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헌정체제가 실현되었다. 국민국가의 제도적 기반이 확립된 것이다. 그러나 문혁은 그러한 헌정체제를 사실상 와해시켰다. 1982년 헌정 복구는 국민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재확립하는 의미가 있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중국 특색의 국가건설’ 방식을 가장 상징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시장의 자율성과 계획경제의 타율성이 결합하여 경제를 운영하는 체제이기도 하거니와 보다 핵심적인 특성은 다종 소유제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1999년 헌법 수정을 통해 “국가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종 소유제 경제가 공동 발전하는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며, “개체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인정하고, 이를 보호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혼합경제체제라 할 수 있고, 이를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경제체제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이 체제는 중화인민공화국 건

14)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1954년에 제정된 후 1975년, 1978년 그리고 1982년에 총 3차례 制定에 준하는 ‘전면 개정(修憲)’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헌법은 1982년 헌법이며, 그 후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과 2018년에 ‘부분수정(局部修正)’이 이루어졌다.

국 직후에 만들어진 신민주주의 체제의 부활이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와 신민주주의 혁명 단계 모두 혼합경제체제를 전제로 국가건설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양자의 본질적 차이는 없다.

중국 특색의 국가건설은 주지하다시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 말 이래 ‘강한 중국’을 복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국민국가 건설의 노력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질서의 주재자로 나서려 할 정도의 결실을 맺었으니 더욱 그러하다. ‘중화’에 대한 자부심을 복원하기에 충분한 성과라 하겠다. 그런데 이 성과는 청 말 이후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집권화의 흐름 그리고 강력한 영토적, 사회적, 이념적 통합 즉 천하일통의 구현 그리고 국가통치 시스템의 중국적 제도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가까이로는 鄧小平 시대의 성공에는 毛澤東 시대의 정치혁명이 자양분으로 작용했다.¹⁵⁾

시진핑의 「新時代」 선언은 근대의 패러다임 말하자면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완성과 다음 시대로의 질적 전환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청 말 이래 지난하게 모색했던 국가건설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총결한 바 있다. “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이다. 이 길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것은 개혁개방 삼십여 년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태동한 것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육십여 년의 계속된 탐색 속에서 만들어졌다. (또한 이 길은) 근대 이후 일백 칠십여 년 동안 중화민족이 추구해온 발전의 역정에 대한 본질적 총결산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중화민족이 오천여 년의 유구한 문명을 전승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길이다.”¹⁶⁾ 그리고 그는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했음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신시대에는 중국의 사유방식과 중국의 방안으로 새로운 사회제도와 이념을 만들어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고, 신세계질서를 구축하는 과업을 중국이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¹⁷⁾

이는 서구를 추종했던 20세기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代案的 反轉이다. 시진핑의 「신시대」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에서 중국이 벗어났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중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의미를 함축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꾀한 중국 지식인들의 사상적 모색-신천하론의 등장 및 신문명질서론 유행-은 21세기 벽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권력 엘리트의 ‘응답’이 시진핑의 「신시대」 선언이라 할 수 있다.

그 목표는 분명하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중국몽)을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몽이 어떻게 구현될지 혹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중국이 이제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완성을 선언했고, 중국 특색의 국가건설 방식을 중국만의 고유한 방식이 아니라 일반화/보편화할 수 있는 국가건설 방식으로 진화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시진핑의 「신시대」는 미래담론이다. 이 미래담론은 시진핑의 「신시대」 선언에서도 읽을 수 있듯 中華性を 전제로 만들어지는 사유방식이자 질서이고, 이념일 것이다.

21세기 벽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에는 ‘세계담론’이 유행하고 있다. ‘세계담론’이란 천하주의, 천하관 등 중국 중심의 사유방식으로 중국과 인류, 세계의 문제를 사유하고 새로운 보편주의 서사를 발굴하려는 담론을 말한다. 최근의 ‘세계담론’으로는 新朝貢秩序論, 新帝國論, 新天下主義論, 新天下體系論, 文明型大國論, 中國의 時刻論, 代案的 國際秩序論, 新儒家文明國家論,

15) 그 성공의 비결은 모순되는 이념과 제도 그리고 체계들이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채 ‘하나의 전체’를 이루어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점이다.

16) 習近平, 「在第十二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上的講話」(2013.3.17),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習近平關於實現中華民族偉大復興的中國夢論述摘編』(中央文獻出版社, 2013), p.35.

17)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2017.10.18.), 『新华网』2017年 10月 27日, p.30.

儒學界 중심의 天下秩序論, 儒家憲政國家論 등을 들 수 있다. 백화제방의 형국을 보이는 다양한 ‘세계담론’을 보면서, 중국사상계가 분명 세계와 문명을 사유의 단위로 삼아 국가 대전략과 세계 질서를 구상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마치 중국제국 시대의 天下(主義)談論이 귀환한 듯하다.

이들 ‘세계담론’은 한결같이 중국의 역사적·지적·도덕적 자원으로부터 중국의 사유방식을 중건(重建)하여 서구의 사유방식과는 다르게 중국 그리고 인류와 세계의 문제를 사유하고 중국의 방식으로 세계를 책임지는 한편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보편주의 ‘敍事’를 발굴하려는 담론이다. 물론 이러한 담론의 유행을 권력 엘리트와 지식인 엘리트에 의해 ‘정교’하게 준비된 기획물이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세계질서에 대한 상상은 문명과 역량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갖춘 정치공동체에서 생겨나는” 것이 통상적이고 ‘세계담론’의 유행은 “中國崛起라는 현실과 그 정책적 수요에서 發源”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¹⁸⁾

여하튼 이들 담론은 중국 중심의 규범적 세계질서, 그것도 평화적인 세계질서를 지향한다. 이들 담론에서는 역사적으로 그러해 왔듯이 중국이 霸道가 아닌 王道의 大同世界를 지향하고 있으며, 관용과 조화를 지향하는 대국임을 강조한다. 이들의 눈에는 중국이라는 제국은 왕도의 구현자였고, 미래의 중국 역시 그 구현자여야 하는 존재이다. 말하자면 이들 담론은 패권을 가진 부강하기만 한 나라가 아니라 패권을 넘어 보편성을 겸비한 도덕국가, 문화국가를 이상적인 그리고 현재의 중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한 국가는 인류의 보편가치를 창안하고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을 갖춘 대국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면은 패권과 보편가치가 결합함으로써 실현된다. 패권과 보편가치를 승一하는 사유방식은 전형적인 중국의 문화주의 국가론¹⁹⁾이고 천하주의 세계관이다. 그러므로 최근의 세계담론의 핵심적 논리 구조는 여기서 발원한다 하겠다. 이는 자유주의부터 민족주의, 신좌파, 국가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이는 각종 ‘세계담론’이 서구의 역사와 문화 전통이라는 외부의 토양 속에서 중국의 질서론과 문명론을 ‘창안’하려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다양한 ‘세계담론’은 공통적으로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최근 유행하는 중국의 ‘세계담론’은 각 담론의 기본 이념에서 차이가 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전통 속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미래의 세계질서를 구상한다는 점은 일치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문명국가 패러다임-필자는 아직 전면적인 문명국가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만한 조건이 조성되지 않아 문명입국 패러다임으로 정의하는 것이 현 상황에 맞다는 생각이다-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마치 옛 중국제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중국은 부강의 부상을 넘어 “(세계의 보편적) 가치관과 제도에서 공인된 가치표준을 수용하고 합리적이고 유효한 국제적 공동기준을 제공”하는 역량, 말하자면 세계의 가치표준과 기준을 창안하고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창조하는 문명사적 과업을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자랑스럽게’ 앞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미래에 만들어질 중국의 문명은 중국 특색의 문명, 중국의 고유한 문명이 아니라 보편적 문명이 될 것이다.

18) 李揚帆, 「“中華帝國”의 개념及其世界秩序:被誤讀的天下秩序」, 『國際政治研究』 2015年 第5期, p.29.

19) 중국의 전통적 국가론에 대해서는 줄저, 『현대중국의 제국몽』, pp.71~82 참고.

VI. 맺음말

중국은 지난 백여 년에 걸친 문명사적 실험과 고뇌 과정에서 서구(의 가치와 상식)를 진리로 수용하여 국가건설에 진력했던 단계를 거쳐 서구와 중국의 그것을 융합하려는 단계로 발전했으며, 21세기에 와서는 서구의 그것을 대체하는 대안적 가치와 상식을 창안하려 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오늘날 중국의 지식인 엘리트와 권력 엘리트들은 근대 유럽에서 발원한 현재의 보편가치, 현재의 보편규범, 그리고 현재의 사유방식을 부정하지 않고 내포하면서 중국의 역사와 전통에 뿌리를 둔 고유의 가치와 규범 그리고 사유방식으로 세계를 사유하고 세계의 질서와 체계를 창안할 역량을 확충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중화를 부정함으로써 강국몽을 실현하려 한 20세기의 실험이 종언을 고하고, 중화를 전제로 미래 중국을 건설하려는 탐색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세기 중국을 지배한 국가건설의 패러다임-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있음을 상징한다. ‘중국몽’의 심연에는 이와 같은 문명사적 도전이 자리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 문제를 분석함에 주목해야 하는 현상 중의 하나는 중국의 세계질서 구상이 담론의 차원에서 실천의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조공질서론, 신천하주의론, 천하체계론, 문명형 대국론, 中國의 時刻論 등 다양한 형태의 담론이 백출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이러한 담론들은 이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학계는 물론이고 미국의 관련 학계에도 영향을 크게 미쳐 이들 지역에서 중국적 세계질서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자면 중국 중심 지역 질서의 재등장이 목전에 와 있는 듯하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가 권력 엘리트의 ‘중화 부흥의 사명감’을 크게 자극하여 담론의 차원을 넘어 실천의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 국가권력은 정책적으로 문예 부흥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다른 나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매력 있고 보편성 있는 중국문화를 창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제질서나 기술표준, 문명표준에서도 미국-서구-과의 경쟁을 국가가 앞장서 진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서구와의 규범과 제도, 가치 경쟁을 선언한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그리고 서구를 대상으로 선언한 가치와 규범의 경쟁은 중국의 문화담론이 이미 보편가치, 보편문화, 중국적 표준, 베이징 컨센서스를 쟁론하는 단계로 진화하였음을 말해 준다. 또한, 이 경쟁은 중국이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넘어 자신이 주도하는 보편주의를 창안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국민국가 건설을 지상의 과제로 여기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를 기획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20세기의 염원이던 국민국가 건설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시진핑이 「신시대」를 선언한 것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제 중국은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유산과 제국 운영의 경험을 융합하여 ‘문명제국’으로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다면 향후 중국의 문화담론은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중국의 보편주의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다.

오늘날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양상은五四와의 결별이라 해도 무방하다. 오사는 서구의 보편가치와 서구의 표준 수용을 전제로 중국의 미래를 건설하려 한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확립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유의 기준이 서구의 가치, 서구의 개념에서 중국의 가치와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고, 민족주의는 보편주의로,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문명입국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 강한 중국, 권위주의 중국 그리고 세계질서 속에서 중국의 부상이 진행될 때는 문명제국 패러다임의 상징인 孔子의 高調가,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표상인 魯迅의 低調가 반복되는 현상을 거울로 삼자면 향후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미래를 예측하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三一에서 발원한 한국의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미래는 어떠한 것인가? 문제제기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삼일은 시대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으며, 의미 부여 역시 그러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삼일담론이 만들어졌다. 삼일담론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삼일운동의 다양성/복잡성에서 연원하는 측면이 강하다. 삼일운동은 근대적 국민국가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제기하였다. 삼일운동은 반식민과 반제를 내걸었으며, ‘고유의 오랜 역사와 문화에 뿌리를 둔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민주주의와 정당성, 도덕성, 평등의 원칙에 의해 독립할 권리, 민족자결주의의 필요성’²⁰⁾을 천명했다. 이는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의 전제가 되는 제반 원리와 제도의 실천을 향후 구현해야 하는 민족적·국가적 과제로 定立시켰음을 의미한다.

20세기 후반기 한국에서는 3·1운동에서 본격적으로 생성된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1980·90년대의 민주화운동의 경험 그리고 최근의 ‘촛불’은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두 측면-外向性(반식민, 반외세, 민족독립 쟁취, 반패권 등)과 内向性(통일 민족국가 건설, 민주, 국민주권)- 중 내향성을 강화하는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한국의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반외세, 반패권의 논리보다는 주로 현재의 정권을 겨냥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통일 민족국가 건설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과 중국의 현실적 조건과 필요에 따라 삼일과 오사에서 생성된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각각 진화하고 있다 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 발표문은 「오사 100년, 「신화」에서 「역사」로」(현대중국학회 五四 100주년기념학술회의<부산, 동아대>, 2019.5.10. 발표, 미간)와 「현대중국 국가건설 100년의 역정과 민족주의」(제3차한중역사포럼<北京, 北京大>, 2019.7.13. 발표, 미간)를 저본으로 삼아 본 학술회의 주제에 맞게 수정한 글이다.)

20) 흥미롭게도 1919년에 발생한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3·1운동과 비교하여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 양자는 많은 유사점이 있으며, 특히 아일랜드 독립선언문과 3·1독립선언서는 윌슨적 수사(Wilsonian rhetoric)는 물론이고 고유의 오랜 역사와 문화에 뿌리를 둔 국민이라는 주장, 외국 압제자의 폭정 거부, 민주주의, 정당성, 도덕성, 평등의 원칙, 안정된 국제질서를 위한 민족자결주의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되었다.(퍼갈 맥게리, 「혁명의 시대와 아일랜드의 독립투쟁」, 『민주·공화주의의 세계사적 의미와 동아시아 독립운동의 전개-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배경, 전개과정 및 영향의 재조명』(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2019.4.9.), p.28)

제 4 발표 토론문

전인갑, 「동아시아 「국민국가 패러다임」 생성·진화의 동시성」

이 병 인 (한국교원대)

이 글은 어떤 사건이나 시기를 구체적 사실에 입각하여 복원하고 해석한 세밀화같은 연구라기보다는 아편전쟁 이후 약 180여년의 중국근현대사를 거시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려는 의향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전통 문명 제국(혹은 중화제국)의 몰락, 오사운동과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수용(생성과 확산),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중국적 재구성(진화), 서구의 가치와 상식을 대체하는 대안의 창출과 보편성 확보(전환)이란 단계로 설명하며 중국이 근현대의 역사적 고난을 넘어 세계에서 부상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글이 사실의 전달보다는 발표자의 관점이 크게 가미된 역사 ‘해석’이다 보니, 연구자에 따라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논쟁이 될 만한 것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중국근현대사 연구에 시사점을 주는 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토론 또한 세부적인 사실에 대한 문제보다는 거시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크게 3가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1. 전통 시대의 중화제국은 ‘문명제국’ 인가?

‘문명제국’은 중국만의 특성인가, 아니면 제국 일반의 특성인가? ‘문명-제국’은 제국 하위의 탈제국적 시야를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

중국이 중화사상을 지니고 주변국에 군림하고, 주변국은 자발적, 반자발적으로 복속하며 중국과 조공책봉관계를 맺고 선진 문물을 수입해 왔던 형태는 중국에 ‘문명제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다른 지역의 제국보다 긴 역사를 지닌 동아시아 중화제국의 지속성은 주변국에 대해 문명제국으로서 의미를 강화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세계사 상의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서 출현했던 ‘제국’은 중국만큼 지속성을 지니지는 못했지만, 주변국에 대해 선진 문물의 중심지, 그리고 그 지역 공간의 문명 표준과 보편을 창출하는 중심으로 작용했던 경우가 많았다. ‘문명제국’이란 개념은 다른 제국과 달리 중국의 제국적 특성을 적절히 표현한 개념인가?

다른 한편으로, 제국은 억압성과 문화·문명의 선진성이란 점을 지니고, ‘개화’, 문명화의 입장에서 주변국에 군림하며 종족적 위계질서의 정치를 형성한다. 중화제국이 주변국에 보인 종족적, 공간적 구분과 위계화는 근현대 제국주의가 만들었던 종족적 위계 정치와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문명-제국’은 그들이 만드는 질서를 ‘문명’과 보편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주변국에 강요하며 제국의 억압성을 은폐하는 측면은 없는가?

2.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중국적’으로 진화하였는가?

2-1.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재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전통의 긍정과 중화의 발굴’은 중국 부상의 산물인가 아니면 국민국가의 내부 모순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산물인가?

발표자는 오사를 통해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것이 중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중국의 부상

을 가능하게 하고 전통의 긍정과 중화의 발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 사례로 1930년대와 1990-2000년대 중국의 부상을 들고 있다. 이 설명을 보면서 가볍게 스치고 지나가는 의문은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1930년대 중국에 활력을 불어넣었는데, 60-70여년이 지난 후에 중국의 부흥도 여전히 국민국가의 패러다임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라면 그 중간 과정에는 어떤 굴절이 있었을까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두 시기의 중국의 활력과 부상, 그리고 전통의 긍정과 중화의 발굴은 그 이전 시기의 사회경제적 발전, 직업계와 계층의 분화, 사회 지도 이념의 분화·갈등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라는 점이다. 일차대전 기간의 중국의 경제성장과 계층분화, 그리고 오사운동을 거치며 사회, 혹은 국가 구상을 둘러싼 모색과 논쟁의 폭발이 있었다. 그리고 국민혁명을 거쳐 국민정부에서 중국 전통 문화의 재해석이 일어났다. 발표자가 예로 든 두 번째 시기는 1978년 개혁개방 10여 년간 중국 사회의 시장화, 국제 개방화를 거치면서 역시 사회 계층 분화, 이해 관계망의 다변화가 발생하고 중국 사회의 발전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이 일어났다. 제5 현대화론에서 시작하여 중체서용론, 서체중용론 등 지식계의 분화를 가져온 문화 논쟁이 있었다. 그 후 지식계는 계속해서 사회의 미래 진로를 놓고 좌파, 신좌파, ○○파 등으로 분화했고, 당국의 ‘암묵적’ 지원을 받은 듯한 문화보수주의가 눈에 띄게 성장했다. 두 시기 모두 그 이전에 사회경제적 발전과 계급(혹은 계층) 분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 지도 이념을 둘러싼 논쟁의 폭발이 있었다. 전통의 긍정과 중화의 발굴은 당국이 변화의 속도와 논쟁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아갔다. 달리 말하자면 전통의 긍정과 중화의 발굴은 중국 부상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국가(정부)가 내부 분열과 갈등을 ‘융합’하고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한쪽은 억압하고 다른 쪽은 부양하며 ‘통제된 변화’를 만든 억압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2-2. 5.4가 남긴 유산은 무엇인가? 현재의 중국은 오사전통과 결별할 수 있는가?

발표자는 4장 전환과 결론에서 오늘날의 중국은 5.4 전통과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고 서술했다. 그렇다면, 오사에서 외쳤던 ‘민주’는 해결된 것인가? 오사의 민주 유산은 당-국가 지도부의 전통을 앞세운 ‘통제된 변화’ 속에 묻혀진 것은 아닌가? 중국 사회가 급격한 부상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내부의 구조 또한 상당한 분화를 겪었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직업의 분화, 공정의 분화, 국내외적 네트워크의 분화가 나타났다. 복잡다기하게 펼쳐지는 이해 차이의 확대와 분화를 반영할 민주적 구조는 마련되고 있는가? 오사의 전통은 중국 사회에서 역사 속으로 묻히고 있는가?

중국의 내적인 문제에 눈을 돌릴 경우, 이익 분화에 따른 민주적 소통 구조는 중국이- 나아가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과제로서- 해결하여 국가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할 문제로서 남아있는 듯하다. 최근의 홍콩문제에서 불거진 것처럼, 일국양제의 접합이자 문화적 갈등, 민주에 대한 견해 차이는 여전히 중국의 완전한 내부 통합에 이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홍콩을 넘어 국내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가올 수 있다. 결국 5.4의 폐기가 아니라 여전히 국민국가적 패러다임과 국가적 정통성 확보를 위한 ‘민주’는 달성해야 할 과제로서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당-국가는 사회의 이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3. 중국적 ‘세계 보편’은 가능한가?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사이에 둔 전근대 시대의 ‘문명제국’과 시진핑 시대의 중국몽 실현으로서의 ‘문명제국’은 무엇이 다른가?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거기에 중국적 가치관을 입히며 진화해온 중국이 동일한 맥락에

서 자민족성을 강화해온 주변의 다른 국민국가를 아우르는 문명입국'(혹은 '문명제국' 건설)과 보편적 가치의 창출을 어떤 방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이 전통 문화, 중화민족의 우수성 등을 선전하고 육성한 때는 국내의 이익 갈등과 분화, 정치적 분화에 따른 가시적, 잠재적 분열이 나타나고 여기에 위기감을 더하는 외적 요인이 겹쳐진 상황에서 전통이 '저항'의 응집체로서 작용하며 더욱 크게 발현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주변국 또한 그러했다. 이러한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거친 후의 국민-제국은 패권을 앞세워 차이를 줄인 '문명권'의 창출을 보편으로 '치장'하며 외향적으로 확장할 때 오히려 민족국가의 충돌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가?

3·1운동을 전후한 1910년대 식민지조선을 둘러싼 일본의 정치과정 연구

- 입헌 정우회와 하라 다카시(原敬)를 중심으로 -

김 종 식 (아주대)

서 론

제1장. 식민지조선 제령(制令) 성립의 정치과정

제2장. 1919년 조선총독 임명의 정치과정

제3장.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 인사의 정치과정

결 론

3·1운동을 전후한 1910년대 식민지조선을 둘러싼 일본의 정치과정 연구

- 입헌 정우회와 하라 다카시(原敬)를 중심으로 -

김 종 식 (아주대)

서 론

현대일본에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일본 자체가 현재의 영토로 한정되면서, 일본역사와 역사연구도 일본 국내로 좁혀졌다. 이것에 대한 변화는 1950년 한국전쟁, 1965년 한일협정 등 현실정치에서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일본근대사에서 식민지에 관한 연구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일본근현대사연구에서 식민지에 관한 관심이 구체화된 것은 1990년대 이와나미 출판사의 『近代日本と植民地』 등 일본 제국사의 성과물이 등장하면서이다. 그렇지만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제기는 이루어졌지만 체계적인 제국과 식민지 이해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연구의 진전에 따라 식민 정책과 제도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식민지 조선의 지배 정책과 인사 등 구체적인 식민지 조선지배의 실체규명이 수행되었다.

식민지 조선에 한정한다면, 연구성과는 식민지 조선에 만들어진 정책과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명하는데 모아졌다. 이것은 일본학계에 일본의 제국사 연구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동시에 한국학계에서도 제국과 식민지의 실체규명에도 일정정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식민정책과 제도 규명 연구는 정책과 제도의 성격규명에 집중되어 정책과 제도의 형성과정, 특히 그 정치과정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결과론적인 역사이해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일본의 식민지 조선 지배를 단선적이고 단일한 대오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우려를 낳았다. 식민지 조선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정치과정 연구는 식민지 조선 정책과 제도를 단선적이고 단일한 대오가 아닌 복선적이고,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이 한국학계에서 일본근현대사 연구가 기여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에서 현대 일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본 발표는 한일병합시기부터 1919년 3·1운동시기까지의 일본의 식민지조선지배의 정치과정에 주목한다.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은 육군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무단통치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19년 조선에서 가장 커다란 사건은 3·1운동이 일어났다. 3·1운동의 발생에 대한 제1보는 3월 1일 오후 6시 40분 육군대신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에게 보내진 조선군사령관 우즈노 미야 타로(宇都宮太郎)의 전보이다. 이 전보의 필사는 내각총리대신 하라 다카시(原敬), 외무대신 우치다 고사이(内田康哉)에게도 송부되었다. 3월 2일부터 4일까지 조선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

3·1운동을 전후한 1910년대 식민지조선을 둘러싼 일본의 정치과정 연구

(長谷川好道), 조선군사령관 우즈노미야 등이 조선의 정황을 연이어 다나카에게 보고하고 있다¹⁾. 3·1운동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고는 조선총독-내각총리대신과 같은 행정연락체계보다, 조선군사령관-육군대신, 총독-육군대신과 같은 군의 연락체계였다. 이는 이 시기 식민지 조선이 군부, 특히 육군에 의해 장악·통제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들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를 정점으로 하는 조슈번(長州藩)출신자 중심의 번벌세력이었다. 다이쇼기(大正期)의 야마가타벌로 알려진 번벌은 메이지(明治) 30년(1897)을 전후하여 야마가타를 중심으로 「반정당(反政黨)」을 목표로 만들어진 집단이다. 야마가타벌은 명치말기 궁중·육군·추밀원·귀족원·문관관료에 강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중의원 일부에도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정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정치집단이 되었다. 그 구성은 야마가타벌의 모든 사람들과 개인적인 연결을 가지고 뒤에서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야마가타, 실제 수상후보로서 표면에 나서 야마가타벌 전체의 지지를 받는 가쓰라 타로(桂太郎), 각 정치기구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각 기구를 야마가타벌 지지로 이끄는 간부들,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야마가타계 인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 간부들은 구체적으로 데라우치(육군), 와타나베 치아키(渡辺千秋;궁중), 기요우라 게이코(清浦奎禧;추밀원과 귀족원), 히라타 도스케(平田東助;귀족원과 문관관료), 오오우라 가네타케(大浦兼武;귀족원과 문관관료) 등이다.²⁾

한일병합시기부터 1919년 3·1운동 시기까지의 일본정치 상황을 총리대신과 그의 출신 후원세력, 그리고 내무대신을 살펴보면 번벌세력의 힘을 이해할 수 있다.

내각총리대신(횟수)	출신/후원	내무대신	재임기간
가쓰라 타로(桂太郎) 제2차	번벌 (육군)	平田東助	1908. 7. 14. ~ 1911. 8. 25.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제2차	입헌정우회	原敬	1911. 8. 30. ~ 1912. 12. 5.
가쓰라 타로(桂太郎) 제3차	번벌(육군)	大浦 兼武	1912. 12. 21. ~ 1913. 2. 11.
야마모토 곤베이(山本權兵衛) 제1차	해군/정우회	原敬	1913. 2. 20. ~ 1914. 3. 24.
오쿠마 시게노부(大隈 重信) 제2차	번벌/야마가타 아리토모	大浦 兼武 一木喜徳郎	1914. 4. 16. ~ 1916. 10. 4.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	번벌(육군)	後藤新平 水野錬太郎	1916. 10. 9. ~ 1918. 9. 21.
하라 다카시(原敬)	입헌정우회	原敬	1918. 9. 29. ~ 1921. 11. 5.

총 7회의 내각이 조직되었는데, 인원으로는 6명의 총리대신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 번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4차례의 내각과 3명의 총리대신이고, 상대적으로 정당세력의 영향력을 받은 것은 3차례 3명이다. 1910년대는 번벌세력과 정당세력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시기였다.

입헌정우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세력은 성장기이기도 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였지만, 일본의 번벌세력은 더 이상 국민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

1) 강덕상 편, 『現代史資料25 朝鮮』 1, みすず書房, 87-93쪽.

2) 季武嘉也, 『大正期の政治構造』, 吉川弘文館, 1999, 27-29쪽.

다. 국민은 제1차 호헌운동, 제1차 세계대전, 쌀소동을 거치며 정치적으로 성장하였고, 정당의 세력 확장을 이끌었다. 쌀소동을 계기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를 정점으로 하는 번벌세력이 약해지고, 입헌정우회(立憲政友會, 이하 정우회) 중심의 하라 다카시(原敬) 내각이 성립하여 본격적인 정당세력의 팽창이 시작되었다.³⁾ 하라는 안정적인 정당정치와 정당내각의 재생산을 위해 다방면에서 번벌세력을 압박하였다.

본 발표의 목적은 1910년대 번벌세력 중심의 식민지조선지배와는 다른 입헌정우회(정당세력)와 그 세력의 중심에 있는 하라 다카시의 식민지 조선지배 관여의 정치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조선 지배를 번벌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복선적이고, 다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⁴⁾

제1장. 식민지조선 제령(制令) 성립의 정치과정

제1차 사이온지내각에서 의원의 임기만료로 행해진 1908년 총정원 379명을 뽑는 제10회 총선거에서 정우회는 중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제1당이 되었다. 총선거 후 경제정책의 실패와 번벌의 압박으로 사이온지내각이 물러나고 제2차 가쓰라내각이 성립하였다. 제2차 가쓰라내각은 국민당을 여당으로 제1당인 정우회와 대립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결국 정우회의 협조하에 제25의회, 제26의회를 무사히 넘기고 제27의회(1910년12월23일-1911년3월22일)를 맞이하였다.⁵⁾ 한편 제26의회의 폐회 이후 「대역사건(大逆事件)」이 발생하여 일본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가쓰라내각은 국내외의 현안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우회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제27의회를 맞이하는 정우회는 조금 복잡한 내부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정우회는 제25의회와 제26의회 두 차례의 제국의회에 걸쳐 가쓰라내각을 지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의 전망이 보이지 않았다. 당내에는 하라 다카시(原敬)를 중심으로 하는 주류파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정우회 내부의 비주류는 각지에서 보이는 가쓰라내각에 대한 반발감정을 배경으로 힘을 키워가고 있었다.⁶⁾ 정우회의 주류와 비주류의 대립은 제27의회의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내각은 사정에 따라 정우회의 협조를 얻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일본 국내의 정치상황에서 한국병합이 이루어졌다. 제2차 가쓰라내각의 각의(閣議)는 1909년 7월 6일 「한국병합에 관한 건」을 결정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병합을 단행할 것을 계획하였다. 1910년 5월 30일 데라우치는 육군대신 겸임으로 한국통감에 취임하면서 한국병합을 구체화시켰다. 그 후 6월 3일 13개 항목의 「병합후의 한국에 대한 시정방침」이라는 한국병합후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 조선에서는 당분간 헌법을 시행하지 않고, 대권에 의해 조선을 통치할 것.
- 총독은 천황에 직속(直隸)하며, 조선에서 일체의 정무를 통괄할 권한을 지니게 할 것.

3) 季武嘉也, 『大正期の政治構造』, 吉川弘文館, 1999, 三谷太一郎, 『大正デモクラシー論』 新版, 東京大学出版会, 1995.

4) 본 발표는 기 발표원고와 하라 다카시 일기를 새롭게 읽어 정리하였다. (「1919년 일본의 조선문제에 대한 정치과정-인사와 관계개혁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6, 2007; 「1920년대 초 일본정치와 식민지 조선지배」, 『동북아역사논총』 22, 2008; 「근대 일본내무관료의 조선경험」, 『한일관계사연구』 33, 2009 / 「1910년대식민지조선관련일본국내정치논의의한양상」, 『한일관계사연구』 38, 2011;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일본과 식민지조선의 대응」, 『일본학보』 102, 2015 / 「1910년대 재조일본인 정치가의 정체성 형성과정」, 『사람』 56, 2016)

5) 林茂・辻清明 編, 『日本内閣史録 2』, 第一法規, 1981, 53-100쪽 참조.

6) 林茂・辻清明 編, 『日本内閣史録 2』, 第一法規, 1981, 85쪽.

- 총독은 대권의 위임에 의해 법률사항에 관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 단 본 명령은 별도의 법령 혹은 율령 등의 적당한 명칭을 붙일 것.⁷⁾

각의 결정으로 조선은 헌법이 아닌 천황대권에 의해 통치되고, 조선총독은 내각이 아닌 천황에 직속되며, 천황으로부터 입법권도 위임받았다. 조선총독은 육해군과 같이 내각이 아닌 천황 직속의 독립적인 성격으로 규정되었다. 총독의 명령은 육해군의 군령(軍令)과 같이 독립적인 법률사항에 관한 명령권이었다. 위의 시정방침은 데라우치와 육군의 개입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육군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었다.⁸⁾

그런데 정당측 인사들은 식민지에 대한 육군의 주도권 장악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1906년 내각의 각의에서 가라후토(樺太;사할린)의 장관에게 재판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력을 위임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우회 소속으로 당시 내무대신을 맡고 있던 하라 다카시(原敬)는 가라후토의 장관을 군인에 한정하는 상황에서 장관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육군의 전횡으로 이해하였다.⁹⁾ 하라가 식민지에 대한 군부의 지배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였다. 이것은 군부의 식민지 지배에 반대하는 정우회의 정서를 반영하였다.

1910년 8월 29일로 「한일합병조약」이 공포되고, 당일 조선총독의 법률사항에 대한 명령권은 「제령(制令)」이라는 형태로 긴급칙령 제324호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으로 등장하였다. 제령은 칙제를 거치지만, 실제로는 조선총독 단독으로 발포할 수 있는 것이었다.¹⁰⁾ 이것으로 총독이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권까지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 조선의 긴급칙령은 제27회 제국의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만 하였다.¹¹⁾

식민지 조선의 제령을 포함하는 긴급칙령은 같은 일본의 식민지인 대만의 1906년 4월 11일 법률 제31호 「대만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면 그 성격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대만 총독의 법률사항에 대한 명령권은 주무장관의 관리하에 「율령」이라는 법 형식에 기초하였다.¹²⁾ 차이점은 대만 율령이 법률에 의해 효력의 시한을 두었고, 조선 칙령이 효력에 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제27회 제국의회의 개회가 가까워진 1910년 12월 4일 정우회의 하라는 가쓰라수상과의 회담에서 식민지 조선이 일본의 영토가 된 이상 식민지 조선도 일본 헌법의 영향권에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령도 제국의회의 통제권 안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임시 긴급칙령으로 내려진 제령권의 권한은 기간을 제한하여 제국의회의 정기적인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가쓰라는 제국의회가 긴급칙령으로 만들어진 제령권을 승인하고, 그 효력기간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심지어 육군대신과 조선총독을 겸하고 있는 데라우치는 식민지 조선이 일본헌법의 범위 바깥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¹³⁾ 긴급칙령 제324호 「제령」의 문제는 제국의회 입법협찬권의 범위내에 있는지의 여부와 그 운영에서 효력기한을 설정할 것인가의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즉 의회와 정당세력의 조선총독과 식민지 조선에 대한 통제가능성의 문제였다.

1910년 12월 20일 제27의회가 소집을 맞이하여, 정우회 내에는 상임위원의 선출을 둘러싸고,

7) 外務省 編,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原書房, 1965, 336쪽.

8) 시정방침에 대한 데라우치와 육군의 개입은 小川原宏幸, 「韓国併合と朝鮮への憲法施行問題」(『日本植民地研究』17号, 2005年, 19-20쪽 참조)의 연구에서 정황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

9) 原奎一郎 編, 『原敬日記』第二卷, 福村出版, 1906년6월29일 참조.

10) 『法令全書』第124冊, 明治43年, 488-489쪽.

11) 『대일본제국헌법』 제8조 2항에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의회에서 승낙하지 않을 때는, 정부는 장래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2) 『法令全書』第100冊, 明治39年, 44쪽.

13) 『原敬日記』第三卷, 1910년 12월 4일.

종래의 당 수뇌부에 의한 지명에 반대하여 선거를 주장하는 그룹이 나타났다. 다음날 의원총회에서 치러진 귀족원과 중의원의 전원위원장(全院委員長) 후보(제1당의 후보가 제국의회에서 전원위원장이 된다) 선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다케코시 요사부로(竹越与三郎)가 당선되었다. 다케고시는 정우회내부의 하라·마즈다(松田正久) 등의 주류파 간부에 반대하는 비주류파 그룹의 지지를 얻어 정우회 의원총회에서 전원위원장 후보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12월 24일 귀족원과 중의원의 전원위원장에 다케코시가 선출되었다. 비주류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산·결산·청원·징계의 4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도 노리게 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자, 주류파의 하라, 마즈다 등이 모여 대책을 강구하였다. 하라는 총재지명으로 예산위원장후보가 되고, 마즈다도 총재지명으로 정무조사회 위원장 후보가 되어 하라가 예산위원장을 맡고, 마즈다는 정무조사위원장을 맡아 제27의회를 지도하기로 합의하였다.¹⁴⁾ 더 나아가 정우회 의원이 법률안과 건의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원내총무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였다. 소속의원의 행동을 억제하고 당내통제를 강화하였다.¹⁵⁾ 하라를 중심으로 하는 정우회 주류파는 당내의 불만을 해소하고 당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가쓰라에게 정권이양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다.¹⁶⁾ 정권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정우회내 비주류파의 득세를 잠재우고 통일적인 대정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긴급칙령 324호 「조선에서 시행해야 할 법령에 관한 건」도 일본 사회와 의회에서 비판론이 일어나고 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제령에 근거해서 1910년 12월 29일 제령13호로 「회사령」을 발포하였다. 일본 국내여론은 조선총독부가 회사의 허가권을 장악한 것에 대하여, 식민지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 산업계 전체에 대한 산업 활동 통제로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법적근거로서의 조선총독부 제령과 대만총독부의 율령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만의 율령을 규정하는 법률이 19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조선의 제령에 관한 긴급칙령 승인안과 같이 27의회의 회기 중에 대만의 율령도 갱신할 법률로서 제출될 계획이었다. 율령과 제령은 같은 시기에 하나의 범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발표권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또한 회사령 문제는 식민지 조선의 무관총독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전개되었다.¹⁷⁾ 정우회 주류파는 제27의회의 주도권 장악이 쉽지않은 상황에서, 제령 비판 반대여론도 일어나고 있었다.

1911년 1월이 되어, 의회의 주요 안건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1월15일 가쓰라는 다음 정권을 사이온지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확인해 주면서, 조선총독 및 대만총독의 권한문제, 소득세문제, 또한 철도광궤안 모두 정부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정우회에 주문하였다. 그러나 하라는 이러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없었다.¹⁸⁾ 하라의 정우회 주류는 비주류와 여론 때문에 가쓰라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제국의회는 1911년 1월 20일까지 휴회를 하고 다시 재개되었다. 정우회도 정부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보였다. 정우회의 소장의원들은 정부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야당인 국민당과 함께 정부에 대한 공격적 질문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¹⁹⁾ 정부는 1911년 1월 21일 칙령 324호 외 11건의 승인을 청구하는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하라는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정우회의 의회대책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즈다와 협의하에 먼저 교토에 머물고 있는 정우회 총재 사이온지를 교토에서 불러왔다. 그리고 가쓰라는 정우회를 방문하여 정권수수의 약속 필요성에 대해

14) 大久保利謙外 3 人 編, 『日本歴史大系』第四卷, 山川出版社, 1987, 1101쪽.

15) 林茂・辻清明 編, 『日本内閣史録 2』第一法規, 1981, 86쪽.

16) 大久保利謙外 3 人 編, 『日本歴史大系』第四卷, 山川出版社, 1987, 1102쪽.

17) 李榮娘, 「第一次憲政擁護運動と朝鮮の官制改革論」, 『日本植民地研究』3, 1990, 57-63쪽 참조.

18) 『原敬日記』, 第三卷, 1911년 1월 15일.

19) 小林雄吾 編, 『立憲政友会史』第三卷, 1925 (山本四郎補訂版(平成2年)), 349-350쪽.

여 사이온지와 협의하였다.²⁰⁾ 하라는 총재의 권위로 비주류를 누르려고 하였고, 가쓰라는 정우회의 적극지지를 얻기 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정우회내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조선관련 칙령문제는 1911년 1월 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졌다. 이 회의에서는 조선관련 칙령 12건에 대한 사후승낙을 위한 안건을 심사할 위원을 결정하였다. 중의원 의장의 지명으로 「메이지43(1910)년 칙령 제324호(승낙을 청하는 건)와 11건 위원회」(이하 「칙령 제324호와 11건 위원회」)의 27명의 위원을 결정하였다.²¹⁾ 위원회는 각 정파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정하였다. 구성은 정우회가 15명, 국민당이 6명, 중앙구락부 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었다. 정우회는 제적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었다. 정우회는 임시정부조사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참여할 인원을 이토 다이하치(伊藤大八) 정우회 간사장과 하라와 마즈다 마사히사(松田正久)의 양 원내총무가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였다. 제27회 제국회의의 법률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마즈다와 하라, 그리고 간사장인 이토는 임시정부조사위원회를 뽑아 놓았다.²²⁾ 그 인원 내에서의 위의 문제를 다룰 정우회측 위원을 선택하였다. 조선문제에 관련된 위원회는 하라가 위원회와 이사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최측근을 배치하여 하라를 중심으로 하는 정우회의 주류파가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총독의 제령권은 제국회의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식민지 조선총독의 독립적인 위임입법이기 때문에 제령권을 법률로 규정해야한다는 법리적인 당위론이 대두되었다.²³⁾ 정우회의 내부에서도 정부측의 긴급칙령을 그대로는 수용할 수 없는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우회와 가쓰라의 관계는 1911년 1월 26일 가쓰라, 사이온지, 하라, 마즈다의 4명이 회합하여 가쓰라가 정우회의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하여 정부에 대한 정우회의 협조(情)와 정우회에 정권을 넘겨 줄 뜻(意)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번벌과 관료의 거두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에게도 승인받아, 1월 29일 가쓰라가 정우회 소속의 귀족원, 중의원 의원들 앞에서 「정의투합(情意投合)」하고, 협동일치하여, 헌정의 좋은 결과를 거둔다」라고 연설하였다. 여기에서 시작된 「정의투합」으로 정우회는 가쓰라내각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원활하게 정권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거꾸로 정우회는 정권을 이어받기 위해서 가쓰라내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 하였다. 그 중심에 하라가 움직이고 있었다.

이러한 「정의투합」의 정세속에서 하라는 1월 26일 일기에서 제27회 제국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정책의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현재 문제가 되는 의회의 안건도 대체적으로 결정해 두는 것이 피아를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한 결과, 우리들(余等 하라와 정우회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쓰라는 철도광궤를 더욱 더 조사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우리당이 찬부를 묻지하지 않고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찬부를 명확히 할 때는 피아 누군가가 체면에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쓰라가;인용자주) 이를 동의하며, 다른 중요문제, 즉 조선사후승낙안(긴급칙령 제324호를 포함한 위원회에 회부된 조선관련 12건의 칙령을 의미한다;인용자주)은 가쓰라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승낙하는 것을 내정하였다.²⁴⁾

하라는 철도광궤문제는 정우회의 의향을 반영하여 연기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조선사후승인문제

20) 『原敬日記』第三卷, 1911년 1월 22일.

21) 『第27回帝国議會 衆議院議事速記録』42-48쪽.

22) 『原敬日記』第三卷, 1910년 12월 27일.

23) 『第27回帝国議會 衆議院議事速記録第』56-58쪽.

24) 『原敬日記』第三卷, 1911년 1월 26일.

는 가쓰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하라의 입장에서 조선사후승인은 가쓰라와의 정치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의원에서 통과시켜야만 하였다.

하라는 가쓰라와의 정치적 거래로 긴급칙령 제324호 문제 등 조선사후승낙 문제를 가쓰라의 뜻대로 수용하였다. 하라의 결정은 나름의 정치적 낙관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조선문제에 대한 사후승낙 안건은 수건 있지만, 논의가 되는 것은 총독에게 법률에 대신할 제령발포권을 부여하는 긴급칙령으로, 이것은 대만에서와 같지만, 효력시한을 정하지 않는 것은 실로 승낙하기 곤란한 문제였다. 그렇지만 현재 이것에 효력시한 등을 정해서 총독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는 것은 조선 통치상 곤란하다. 그렇지만 무기한으로 이 권력을 부여하더라도, 도저히 영원히 전제적 제도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대국적으로 보는 자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것을 승낙하는 방침을 취하는 것에 진력할 수 있다. 또한 철도안을 연기하는 것²⁵⁾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²⁶⁾

하라는 가쓰라와의 정치적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조선총독부 제령의 효력시한 설정문제에 대하여 가쓰라의 의견에 따랐다. 그렇지만, 하라는 총독의 전제적 제도, 즉 제령권이 무기한으로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이유는 「대국적으로 보는 것」, 즉 정우회의 차기 정권수수로 일본의 정치지형이 변화하여 식민지 총독의 전제적 제도조차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번벌과 관료지배가 영구 존속될 것은 아니지만, 한순간에 제거할 수 없다는 하라의 신중한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라는 가쓰라와 타협하였지만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하였다.²⁷⁾ 하라는 조선의 긴급칙령 사후승낙건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에서 제령문제도 타협하였다.

정우회 수뇌부는 정우회 비주류와 반대파의 반발을 고려하여 조선총독의 제령 발포권을 긴급칙령으로 먼저 승인하고, 다음에 제령의 효력시한의 문제를 논의하여 법률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측도 이를 받아들일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정우회내부의 이해를 얻지 못하였다. 수뇌부는 새롭게 긴급칙령을 법률로 만드는 대신 효력시한을 두지 않는 안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하라는 조선사후승낙안을 둘러싼 불안한 흐름을 차단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911년 2월 7일 정우회 본부에서 예산위원회와 정부조사위원회의 연합회를 개최하여, 그 자리에서 2-3건을 제외하고 총무에게 일임할 것을 결정하였다.²⁸⁾ 하라는 정우회는 조선총독의 제령발포권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이해하였다.

원내 간부실에서 영수회담을 열어서, 조선총독에게 제령 발포권을 부여하는 긴급칙령에 관한 우자와 후사야키(鵜沢総明) 등 법률가의 말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결국 정사(政事)문제로서 해결해야 할 것이 되었고, 법률안을 제출하여 긴급칙령에 대신하기로 하였다. 그 외 많은 긴급칙령은 승낙할 것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취지에서 조사회 및 의원총회에 자문하는 것으로 하였다.²⁹⁾

정우회 지도부는 조선총독 제령발포권을 법리적으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차기 정권수수를 위해 반드시 수용해야하는 정치문제로 이해하였고, 당내의 의견을 반영하여 긴급칙령이 아닌

25) 정부의 철도광궤문제의 연기는 동시에 정우회가 주장하는 지방의 기반확장을 위한 철도의 미개통지역에 대한 확장도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철도안의 연기는 정우회의 철도 확장연기를 가리킨다. 하라는 조만간 지방에 대한 철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실제 그렇게 되었다.

26) 『原敬日記』 第三卷, 1911년 1월 26일.

27) 『原敬日記』 第三卷, 1911년 1월 26일.

28) 『原敬日記』 第三卷, 1911년 2월 7일.

29) 『原敬日記』 第三卷, 1911년 2월 28일.

법률안으로 대신하였다. 우자와도 결국 이 「법률안」을 법리문제가 아닌 정우회의 정치적 결정으로 이해하고 정우회의 뜻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고 찬성 연설도 하였다.³⁰⁾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안」은 3월 9일 귀족원에 상정되어, 3월 13일 확정되어, 3월 25일자로 공포되었다. 「명치39년 법률 제31호중 개정법률안」도 3월 18일 귀족원에 상정되어, 3월 20일 확정되었다. 이 법률은 3월 30일 공포되었다.

조선의 제령은 정우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성격과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로 이해되고 처리되었다.

제2장. 1919년 조선총독 임명의 정치과정

제2차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내각은 육군과 2개 사단 증설문제로 대립하였고, 육군은 ‘육군대신 현역무관제’를 이용하여 내각을 무너뜨렸다. 이러한 사태는 번벌타파를 주장하는 제1차 호헌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제1차 호헌운동은 번벌의 중심인 군벌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식민지 총독의 무관제를 비판하였다.³¹⁾ 정당세력의 조선총독 무관임용을 문관임용으로 바꾸는 식민지조신의 개혁은 이후 육군대신 현역무관제의 개정과 더불어 번벌과 정당세력의 중요한 대립점이었다. 이러한 개혁의 중심에 제2차 사이온지내각과, 제1차 야마모토내각의 내무대신을 지낸 하라가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과 1917년 러시아혁명의 영향으로 형성된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분위기가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의 군주제가 붕괴되고, 군주제에 대한 데모크라시체제의 우위가 세계적인 대세가 되었다. 데모크라시의 풍조는 세계대전 후 일본 국내에도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정치·사회에 개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국내적으로는 1918년 쌀소동 발발로 민중의 정치적 역량이 어느 때보다 증대되어 있었다. 쌀소동은 이후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민중운동의 확산 계기가 되었다. 쌀소동을 통해 만들어진 정치적 공간은 통해 선거권의 확장을 비롯해, 원로의 폐지, 육·해군대신 무관제 폐지, 정당내각제의 확립, 노동조합의 자유 등으로 확장되었다.³²⁾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선총독부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있었다. 개혁의 요구는 행·재정 정리의 일환으로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³³⁾ 번벌세력의 지원을 받은 제2차 오오쿠마내각과 데라우치내각에서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쌀소동을 책임지고 1918년 9월 21일 데라우치는 사표를 제출하고, 27일에는 하라에게 조각명령이 내려졌다. 이 사이 24일에는 조선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데라우치 앞으로 보내는 서간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쳤다.³⁴⁾ 하세가와 총독은 조슈벌의 계승이라는 측면과 조선에 대한 육군지배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사직은 조선총독부에 대한 개혁 가능성을 키웠다. 일본의 다이쇼데모크라시는 식민지조선 문제에도 영향을 끼쳤다.

1918년 10월 13일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県伊三郎)가 하라와 회견하였다.

30) 新井勉, 「朝鮮法令委任方式をめぐる帝国議会の奇態な情況について - 第27議會における緊急勅令の法律への変更」, 『法学紀要』(36), 1994, 264쪽 참조.

31) 李榮娘, 「第一次憲政擁護運動と朝鮮の官制改革論」, 『日本植民地研究』 3호, 1990, 참조.

32) 井上清·渡部徹 編著, 『米騒動の研究』 제5권, 有斐閣, 1975, 200쪽.

33) 李榮娘, 「第一次憲政擁護運動と朝鮮の官制改革論」, 『日本植民地研究』 3, 1990, 참조.

34) 『日本統治下における朝鮮の法制』, 友邦시리즈 14호, 1969, 22-23쪽.

그 자리에서 야마가타 이사부로는 조선의 상황이 무관총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하세가와도 머지않아 사직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또한 하세가와의 사직후 자신이 후임의 조선총독이 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라는 동의하지만 군인의 반대도 거세기 때문에 비밀로 하고 기회를 보아 제의하겠다고 하였다³⁵⁾.

11월에 들어서 하세가와 총독의 사임이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다나카 욱군대신 사이에 논의되어 사임하는 것으로 정리된 후 욱군대신 다나카는 하라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였다.

하사가와의 일은 은밀히 들은 바도 있다. 그때 내 생각에는 오늘날 정황으로는 조선(총독;인용자주)에 언제까지나 무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오히려 군정과 분리하여 국방의 지휘는 욱군 직할로 하고, 총독은 무관이든 문관이든 가능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³⁶⁾

조선에서의 군대통솔권과 행정권은 무관총독에 의해 일괄적으로 장악되어 있었다. 다나카는 데모크라시가 국내외의 대세가 되는 상황에서 군대통솔권은 욱군이, 행정권은 총독이 차지하고, 총독은 문관이든 무관이든 관계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문관총독 후보인 야마가타 이사부호가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양자이면서, 데라우치 총독시기부터 정무총감을 맡았기 때문에 그의 조선총독 취임에도 현재 상황에 실제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12월 17일 하라는 정계의 흑막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우라 고로(三浦梧郎)와 면담하였다. 미우라는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면담하여 조선총독에 문관·무관, 어느 쪽이든 임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야마가타 이사부로를 후임 조선총독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다³⁷⁾. 야마가타 이사부로의 조선총독 임용을 매개로 야마가타 아리토모에게 조선총독 문무관 병용 관제개혁을 인정하게 한 것이다.

1919년 1월 15일 다나카는 하라와 회견하여 조선총독 문무관 병용 건의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자기가 발의하여 결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하라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욱군 내에서 내부적인 방해가 없도록 욱군 내에서 사전에 합의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으로 회답했다³⁸⁾. 하라는 조선총독 문무관 병용의 가장 큰 문제가 욱군의 동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나카에게 다시금 부탁하였다.

하라는 하세가와 사임을 계기로 조선총독 문·무관 병용의 관제개혁을 이끌어내려고 하였다. 그는 다이쇼데모크라시라는 시대상황과, 관제개혁 이후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양자 야마가타 이사부로를 총독으로 세우려는 복안, 그리고 다나카를 통한 욱군의 협조를 통해 식민지조선의 총독관제와 문관총독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하라는 조선총독의 문관총독을 세운다는 것에 집중하였고, 그 구체적인 성격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였다.

1919년 3·1운동의 발발을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일본당국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총독부는 운동을 일으킨 조선인들이 요구하는 독립을 허용할 생각은 없었고, 운동을 철저히 탄압하였다. 한편 하라내각은 조선 사태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이 높아감에 따라 조선통치의 개혁을 위해 적극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사부로는 3월 29일 동경에 돌아와 하라에게 상황을 보고하였다. 하라는 운

35) 『原敬日記』 第五卷, 1918년 10월 13일.

36) 『原敬日記』 第五卷, 1918년 11월 23일.

37) 『原敬日記』 第五卷, 1918년 12월 17일,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조선총독 문무관 병용에 동의하였는지를 둘러싸고 이정룡은 그의 연구에서 관제개혁의 경위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미우라의 야마가타에 대한 자기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李正龍, 『原内閣における植民地官制改正問題—朝鮮總督府を中心に—』, 『慶應義塾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論文集』 26호, 1987, 193쪽, 주32).

38) 『原敬日記』 第五卷, 1919년 1월 15일.

동의 발발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하세가와의 실책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야마가타 이사부로는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만나, 운동의 발발은 조선에서 무관제도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³⁹⁾ 그는 조선으로 돌아가기 전 4월 13일 회견에서 이후의 통치방침에 대하여 현 사태의 진정 후 대책까지 포함하여 스스로 상당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⁴⁰⁾ 한편 서울의 하세가와총독도 4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이후의 조선통치는 어려움은 있지만, 수완있는 문관 대정치가를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⁴¹⁾ 3·1운동을 계기로 총독 문무관 병용의 여론을 형성하였고, 야마가타 이사부로는 조선 사태에 대하여 무관총독 하세가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한층 자신의 조선총독 취임공작을 본격화하였다.

그러나 야마가타 이사부로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먼저 3·1운동에 대한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사부로의 책임론도 대두하기 시작하였다.⁴²⁾ 여기에 총독 경질과 임명도 연기되었다. 5월 초 하세가와총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처리가 유보되었다. 새로운 총독임명과 조선총독부 관제개혁을 맞추어 진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⁴³⁾ 야마가타 이사부로의 총독임명은 그의 책임론, 조선총독부 관제개혁과의 연동에 의한 연기와 더불어, 더 큰 문제로 3·1운동에 의해 식민지조선에 새롭게 치안문제가 대두하였다는 점이다. 3월 20일 이후 일본군은 만세운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의 군배치를 강화하였다. 조선총독은 일본내각에 병력 증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4월 초 기관총 부대를 포함한 임시파견대대 보병 6개 대대 약 4,200명이 증파되었다.⁴⁴⁾ 3·1운동에 일본에서 군대를 파견하면서 치안문제로 문관총독 임용 반대가 육군 내에서 높아지고 있었다. 결국 육군 내에서도 의견의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다니카는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방문하여 조선 문제를 다시금 협의하였다. 야마가타는 조선총독 문관제 및 야마가타 이사부로의 후임총독 취임을 모두 반대하였다.⁴⁵⁾ 육군측과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조선총독에 전임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사부로의 책임론과 3·1운동에 의한 치안문제의 발생을 이유로 조선총독 문관 임용에 반대로 돌아섰다.

5월 23일 각의 후 다니카는 하라에게 야마가타의 의향을 전달하였다. 다니카는 반대하는 야마가타와의 타협점을 모색하려고 먼저 하라와 협의하였다.

다니카의 안으로는 육군내부의 반대도 있어서 뜻한 대로 되지 않을 것이므로 제도는 문무관 어느 쪽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해군대장 사이토 마고토(齋藤実)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하며 나의 양해를 구했다.⁴⁶⁾

다니카의 안은 총독의 문무관 병용과 총독을 육군이 아닌 해군, 그리고 퇴역장군에서 구하는 것이다. 사이토는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다. 이러한 다니카의 중재안에 대하여 하라는 동의를 표했다.⁴⁷⁾ 하라의 동의를 얻어 다니카는 야마가타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문무가 뒤섞인

39) 『原敬日記』第五卷, 1919년 3월 29일.

40) 「朝鮮騷擾の原因及善後—山県政務総監車中談」, 『東京朝日新聞』1919년 4월 13일.

41) 「長谷川朝鮮總督暴動に就て語る」, 『東京朝日新聞』1919년 4월 17일.

42) 5월 18일 하라는 조선 정보제공자인 송병준을 만나 조선의 정황과 총독임용의 문제에 대한 동향을 들었다. 송병준은 야마가타 이사부로 정무총감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는 후임 총독에 적당하지 않다는 점도 말하고 있다(『原敬日記』大正 8年 5月 18日).

43) 田中義一伝記刊行会, 『田中義一伝記』下卷, 1960, 163쪽.

44) 이양희, 「일본군의 3·1운동 탄압과 조선통치방안」, 『한국 근현대사 연구』 65권, 2013.

45) 『原敬日記』第五卷, 1919년 5월 23일.

46) 『原敬日記』第五卷, 1919년 5월 23일.

47) 『原敬日記』第五卷, 1919년 5월 25일.

행정체계에서는 효율적인 통치가 어렵다는 점, 육군으로부터 후임 조선총독을 내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해군에게 넘기는 것이 상책이라는 점, 그리고 해군에서는 사이토 마고토가 적당한 점, 사이토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하라와도 협의했다는 점을 보고했다.⁴⁸⁾

일반사회의 여론 때문에 육군의 무관총독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나카의 중재안은 총독의 문무관 병용 관제개혁을 수용하면서, 야마가타의 반대를 배려하여 육군은 아니지만 해군을 조선총독 후보로 올림으로 육군을 포함한 군부의 틀내에서 조선총독자리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한편 하라의 입장에서는 조선총독을 현역이 아닌 퇴역장군으로, 지금까지 조선과 아무런 연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해군출신을 총독으로 임용하여 자기의 정치력이 조선에 미칠 여지를 남겨놓았다.

조선총독의 문무관 병용문제와 인사문제는 조선총독부 관제개혁과 맞닿아 있다. 추밀원의 논의는 야마가타와 하라의 의향이 반영되어 진행되었다. 추밀원 위원회의 심의는 1919년 8월 4일 끝나고, 8월 8일 추밀원 본회의에서 추밀원의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8월 20일 칙령 제386호로 공포되었다.

조선총독부 관제개혁안에 대한 추밀원의 논의는 두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첫째는 내각총리대신의 조선총독에 대한 감독권의 문제이고, 둘째는 무관총독의 군대통솔권을 규정으로 남기는 문제였다. 조선총독부의 관제개혁과정에서 하라는 내각총리대신의 조선총독 감독권을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상주경유권으로 일정정도의 감독효과가 있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관제상에는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못하였다. 한편 육군은 총독을 문무관으로 병용할 경우 무관총독의 독자적인 군대통솔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군령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고 있었다. 더구나 사이토 총독의 인사가 관제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관계로 사이토는 현역에 복귀하여 현역군인으로 무관총독이 되었다. 결국 식민지조선에 대한 정치적 주도권은 여전히 번벌과 정당세력 사이에서 유동적이었다.

8월 12일 관제개정을 반영하는 인사가 단행되었다. 사이토가 총독,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가 정무총감에 임명되었다. 총독인사와 관제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번벌세력의 조선지배는 그다지 변화가 없었고, 하라 내각총리대신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개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⁴⁹⁾

제3장. 3·1운동이후 조선총독부 인사의 정치과정

하라 내각총리대신은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조선총독부 관제개혁에 대해 합의한 후 1919년 6월 13일 각의에서 조선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내가 대만·조선의 현제도 설정 연혁을 말하고, 현제도는 구미제국의 식민지를 모방한 것으로서 근본에서 잘못이 있다면 결국 내지와 같도록 하는 방침을 취하여 상당한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⁵⁰⁾

하라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식민지 인도에 대한 그것과 달리 「내지연장주의」⁵¹⁾

48) 山県有朋宛田中義一書簡(日時不明), 『山県有朋関係文書』(国立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 29冊, 93-102쪽, 재인용 長田彰文, 『日本の朝鮮統治と国際関係』, 平凡社, 2005, 257쪽.

49) 김중식, 「1919년 일본의 조선문제에 대한 정치과정」, 287-292쪽.

50) 『原敬日記』第五卷, 1919년 6월 13일.

51) 春山明哲, 「近代日本の植民地統治と原敬」, 『日本植民地主義の政治的展開 1895-1934 -その統治体制と台湾の民族運動』, アジア政経学会, 1980 참조.

로 규정되고 있다. 내지연장주의는 조선을 일본에 동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상의 인식을 말한다. 일본정치의 관점에서 식민지조선을 일본정치의 영역 안으로 집어넣기 위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⁵²⁾

식민지 조선의 관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야마가타벌과 육군이 만들어 온 질서를 대신하는 새로운 질서의 창출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라가 눈을 돌린 것은 부총독에 해당되며 총독부의 실질적인 행정책임자인 정무총감 자리이다.

6월 23일 각의에 앞서 다나카는 하라에게 총독과 정무총감 임용건을 상의하였다. 총독으로 사이토를, 정무총감으로 미즈노를 지목하고, 특히 미즈노에 대한 접촉은 하라가 맡기로 했다⁵³⁾. 다나카가 무관출신의 사이토를 총독으로 지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정무총감은 하라와 가까운 미즈노를 추천하였을 것이다.

미즈노는 하라와의 관계속에서 관료의 정당화를 대표하는 존재였다. 하라와 미즈노의 관계는 내무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1892년 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한 미즈노는 바로 내무성에 입성하였다. 제1차 사이온지내각 시기(1906년 1월-1908년 7월)에 하라는 내무대신으로 입각하였고 미즈노는 내무성에서 신사국장 겸 대신비서관으로 일하였다. 하라는 제국대학 출신의 젊은 관료들을 등용하여 야마가타벌에 대한 견제와 관료의 세대교체를 이루었다. 이때 실무적인 일을 담당한 사람이 미즈노였다. 이어서 제2차 사이온지내각(1911년 8월-1912년 12월)에서 미즈노는 하라 내무대신 하에서 내무성 토목국장과 지방국장을 맡았다. 미즈노는 하라의 정당세력 확장을 위한 적극 정책의 실질적인 담당 관료였다. 제2차 사이온지내각 말기에 미즈노는 하라의 추천으로 귀족원의원이 되었다. 제1차 호헌운동 직후 제1차 야마모토내각(1913년 2월-1914년 4월)에서 하라는 내무대신, 미즈노는 내무차관을 맡았다. 한편 하라의 정우회 세력확장도 본격화되어 미즈노도 관료출신으로 차관급인 도코나미 타케지로(床次竹二郎)와 함께 하라의 권유로 정우회에 입당하였다. 미즈노는 하라와의 관계 속에서 내무관료에서 관료출신 정치가로 자리매김한다. 1916년 12월 성립한 테라우치내각은 하라 정우회의 지지 위에 내각을 조직했다. 이시기 미즈노는 내무차관이 되었고, 1918년 4월에는 내무대신이 되었다. 미즈노는 정우회계 관료정치가로 성장하였다.

1919년 6월 27일 하라가 사이토를 방문하였다. 미리 다나카가 사이토를 조선총독에 기용한다는 것에 내락(內諾)을 받은 상태에서 하라는 사이토에게 미즈노의 정무총감 기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이토도 직접 하라에게 정무총감으로 미즈노를 부탁한다고 말하였다⁵⁴⁾. 같은 날 하라는 사이토를 만난 다음 미즈노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미즈노의 정무총감 취임을 부탁하고 내락을 받았다. 그리고 하라는 사이토와 미즈노를 만난 자리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은밀히 부임 후의 개혁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바를 미리 상의하고 또한 나의 대조선의견의 대요(大要)를 밝혔다」⁵⁵⁾고 하였다. 하라는 총독과 정무총감 임명전의 이른 단계부터 내각총리대신으로 조선총독과 정무총감에 대한 대조선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었다.⁵⁶⁾ 미즈노는 하라가 제시하는 「조선통치사건」에 기초하여 5대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치안의 유지, 교육의 보급과 개선, 산업의 개발, 교통과 위생의 정비, 지방제도 개혁이었다. 이것은 하라의 일본국내 적극정책을 조선에 도입한 것이다. 정책실행

52) 기유정,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과 '조선의식'의 형성 -3·1운동 직후 '内地延長主義' 논의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76, 2011, 참조.

53) 『原敬日記』 第五卷, 1919년 6월 13일.

54) 齋藤子爵記念会, 『子爵齋藤実伝』 2卷, 1941, 364-365쪽.

55) 『原敬日記』 第五卷, 1919년 6월 27일.

56) 하라의 「조선통치사건」은 내각과, 조선총독, 정무총감에게 밝힌 조선통치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에 해당한다. 사이토 총독과 미즈노 정무총감의 조선개혁은 하라의 영향하에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동명,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 경인문화사, 2006, 59-64쪽 참조).

을 위해서는 많은 새로운 인력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였다. 이것은 식민지 조선이 제국의회와 정당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하라는 미즈노에 대하여 「나는 자네를 신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네가 가지고 오는 인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네. 다른 간섭은 하지 않을 작정이네. 그 점은 안심해도 좋네」⁵⁷⁾라고 하면서 조선개혁의 인적 주도권을 의미하는 조선총독부의 인사권을 미즈노에게 일임하였다. 사이토도 「자신은 해군출신으로 문관방면의 사람은 한사람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모두 자네에게 일임한다」⁵⁸⁾고 하였다. 이것은 하라가 사이토의 총독임용에 찬성한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였다. 사이토는 조선에 어떠한 연고도 없고, 기존의 조선 지배를 담당했던 육군과도 연고가 없는 관계로 미즈노에게 인사를 위임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미즈노는 하라와 사이토 양측에서 인사권을 위임받아 조선개혁에 착수할 수 있었다.

미즈노가 단행한 조선총독부 인사는 1919년 8월 20일 관제개혁에 따른 총독부 중앙 국부장급 수뇌부 인사와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바뀌면서 각 지방단체(道)에 경찰을 책임질 부장의 인선으로,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진 8월 20일 전후한 시기부터 미즈노가 조선으로 부임하는 9월 2일 이전에 이루어졌다. 미즈노 인사의 특징은 초기 인사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표1〉 미즈노의 조선총독부 초기 인사

이름	채용 일자	고등문관시험 합격연도	취임 전직	취임 관직	임용순서
守屋榮夫	1919년 8월 12일	1910년	내무성 참서관	총독비서관	
赤池豊	1919년 8월 20일	1902년	静岡県 지사	내무국장	
野口淳吉	이하 동일	1907년	경시청 경무부장	경무국장	부임 전 사망
西村保吉		1901년	埼玉県 지사	식산국장	
柴田善三郎		1905년	大阪府 내무부장	학부국장	
白上祐吉		1910년	富山県 경찰부장	경무과장	
占部正一		1911년	山形県 이사관	보안과장	1920년 사망
丸山鶴吉		1909년	静岡県 내무부장	경무국 사무관	
藤原喜蔵		1914년	青森県 서무과장	경무국 사무관	
古橋卓四郎		1912년	愛知県 농림과장	경찰강습소 소장	
伊藤武彦		1914년	千葉県石原郡長	총독비서관	
千葉了		1908년	秋田県 경찰부장	경기도 경찰부장	
山口安憲		1911년	兵庫県 이사관	충청북도 경찰부장	
関水武		1912년	茨城県 서무과장	충청남도 경찰부장	
松村松盛		1913년	福岡県 학무과장	전라북도 경찰부장	
山下謙一		1911년	경시청 이사관	전라남도 경찰부장	
小林光政		1916년	경시청 경시(警視)	고등경찰과장	
新庄祐一郎		1910년	鹿児島県 권업과장	경상북도 경찰부장	
八木林作		1909년	兵庫県 이사관	경상남도 경찰부장	
馬野精一		1909년	富山県 학무과장	황해도 경찰부장	
石黒英彦		1911년	群馬県 학무과장	강원도 경찰부장	
岡崎哲郎		1913년	栃木県塩谷郡長	평안남도 제2부장	

(『朝鮮總總督府官報』, 『朝鮮統治秘話』(1933년))를 참조하여 작성

미즈노는 헌병경찰을 대신하는 보통경찰 창설을 위한 중앙부서의 골격을 짰고, 13도 중 10개도

57) 朝鮮行政編輯總局 編, 『朝鮮統治秘話』 1937, 12쪽.

58) 위의 책, 15쪽.

의 도(道)급 경찰책임자를 우선적으로 임명하였다. 이것은 3·1운동이후 최우선 과제로 부각된 치안문제의 해결과 육군을 대신하여 관료중심의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관료중심의 조선 지방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무성의 지방지배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조선에 적용하여 내무성 계통의 관리에게 총독부 주요 중앙관서의 부서장을 맡기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미즈노가 총독부 인사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하라 내각의 지지가 있었다. 하라 내각은 미즈노의 인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라와 도쿄나미 다케지로(床次竹次郎) 내무대신, 고바시 이치타(小橋一太) 내무차관의 권유와 그들의 양해 하에 조선 전임(轉任)을 희망하는 지방사무관의 채용 승낙을 받았기 때문이다.⁵⁹⁾ 미즈노와 도쿄나미는 대학동기로 절친한 관계였으며, 동시에 정우회계 관료의 대표 주자였다.

미즈노가 뽑은 조선총독부의 주요인사는 매우 유능한 자들로, 이 시기 조선에 건너온 관료 22명 중 초기사망자 2명을 제외한 20명은 전부 조선총독부의 고위관리, 지사, 중앙관청의 차관, 국장 지위에 이르렀고, 지방지사까지 승진한 인물들이다. 미즈노는 당시 일본 최고의 엘리트들 조선에 투입하였다고 생각된다.⁶⁰⁾ 이들 중 미즈노 인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리야, 노구치, 아카이케의 이후 행적을 추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리야는 조선총독부 근무를 마친 후 귀국하여 고향인 미야기현(宮城県)의 시오가마(塩釜) 시장을 역임한 후 1928년 총선거에 입후보하여 중의원 의원이 되었으며 이후 입헌정우회에 입당하여 활동하였다. 노구치는 조선으로 부임하기 전에 병으로 죽었다. 아카이케는 조선총독부 내무부장 이후 정우회 내각, 정우회가 준여당으로 있는 내각에서 탁식국(拓殖局) 장관, 경시총감을 거쳐 헌정회 중심의 호헌3파 내각에 이르러 헌직에서 물러났다. 아카이케는 정우회계 관료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미즈노는 하라 내각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당시 내무성의 엘리트들 조선으로 데리고 왔다. 인사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 하라-미즈노로 이어지는 정우회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육군의 조선지배에 대응하여 관료지배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내각이 조선총독부 지배권을 강화할 토대도 마련되었다.

조선지배 중심세력의 군인에서 관료로의 변화는 일본 정치와 식민지 조선의 결합을 높이는 요소이기도 하였다. 이시기 정당과 정당내각은 관료를 정치적으로 포섭하여 정치력의 강화와 정권담당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관료의 정당화(政黨化)」 경향도 촉진시켰다.⁶¹⁾ 이러한 경향은 다이쇼데모크라시기의 정당정치와 정당내각의 식민지조선으로 확장하는 모습이기도 하였다.

결 론

59) 守屋榮夫의 발언, 「朝鮮統治秘話」(2), 『東洋』 36-3, 東洋協會, 1933, 87-88쪽.

60) 李炯植, 「「文化政治」初期における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 『史學雜誌』115-4, 2006, 76쪽 표 참조; 日本國政調査會, 『衆議院名鑑』, 1977 참조.

61) 升味準之助, 『日本政黨史論』第四卷, 東京大學出版會, 1968.

제 5 발표 토론문

김종식, 「3·1운동을 전후한 1910년대 식민지조선을 둘러싼 일본의 정치과정 연구」

이 형 식 (고려대)

본 발표는 1910년대 조선통치를 둘러싼 야마가타-데라우치의 육군 조슈파와 하라 다카시로 대표되는 정당세력(입헌정우회)의 정치과정을 그리고 있다. 본 발표는 식민지권력과 민족독립운동이라는 한정된 분석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1차 사료를 통해서 조선통치를 둘러싼 제 정치세력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정치과정을 그리고 있어 식민지 정치사를 입체적이고 다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일조했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고 위해 몇 가지 질문과 코멘트를 함으로써 토론자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1. 데라우치의 역할

초대 조선총독으로 임명된 데라우치는 야마가타파의 직계로 제1차 桂內閣에 입각한 이래 약 9년간 최장수 육군대신(1902.3~11.8)을 역임했고, 야마가타와 가쓰라가 사이가 벌어진 이후부터는 일본 육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1916년에는 이렇다 할 軍功이 없었지만 종신 현역인 원수로 승진하였고, 같은 해 10월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하여 1918년 9월 쌀소동으로 사임할 때까지 약 2년간 정국을 운영하였다. 가쓰라 다로(桂太郞) 사후에는 육군 조슈파의 실질적인 지도자(‘대수령’)로서 관동도독, 대만총독, 조선총독 등 식민지총독 인사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910년대의 육군과 식민지는 데라우치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김종식 선생님의 논문은 주로 입헌정우회의 리더인 하라 다카시와 야마가타 아리토모/가쓰라 다로를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하지만 러일전쟁 이후 소위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의 일본의 식민지 통치는 육군 조슈파를 이끄는 데라우치와 정우회의 리더인 하라의 대립,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데라우치파(데라우치-고다마 히데오-아카시 모토지로 등)의 동향을 포함시키면 보다 입체적인 논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하라 내각 시기의 식민지 관제개정

하라 내각의 식민지 관제개정은 주지하다시피 제1차 야마모토 내각시기 내무성(하라 다카시-미즈노 렌타로-고바시 이치타-아카이케 아쓰시)이 주도한 통치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3·1운동이라는 민족적 저항이 없었다면 데라우치를 비롯한 육군 조슈파의 식민지관제개정에 대한 반발을 쉽사리 억누를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3·1운동이라는 민족적 저항이 없었더라면 육군 조슈파의 거센 반발을 억누를 수 없었을 것이다.

쌀 소동 이후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한 하라는 제1차 야마모토 내각 시기에 추진했던 식민지 개혁에 다시 착수했다. 우선 관동도독부 관제를 개정하여 관동도독부를 폐지한 뒤 관동청을 설치하고 그 장관(관동장관)에 문관을 임용했다. 관동도독부 관제개정이 일단락되고 조선·타이완총독부 관제 개정이 본

격적으로 논의되던 중에 발발한 3·1운동은 하라 내각이 추진하고 있던 ‘식민지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하라의 식민지통치개혁은 1907년 제1차 내무대신 시절의 사할린청 개혁부터 본격화된다. 육군 출신인 구스노세 유키히코(楠瀬幸彦) 사할린청 장관이 문관인 민정장관과 갈등·대립하자, 이를 이유로 장관을 경질하고 그 후임에 자신의 복심인 내무성 관료 도쿄나미 다케지로(床次竹二郎)를 임명하여 사할린 통치를 개혁했다. 제도 개정과 동반하여 자신의 복심 내무성 관료를 식민지 통치기관에 배치하는 개혁 방식은 이후 식민지 통치 개혁의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데라우치가 조선만이 아니라 육군과 식민지 전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라이벌인 하라 역시 조선만이 아니라 대만, 관동주를 시야에 두고 있었다. 분석시야를 조선에 한정시키지 말고 식민지제국일본 전체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3. 사이토의 조선총독 취임

식민지통치를 사고할 때 간과하기 쉬운 액터가 해군이다. 해군은 초대 대만총독(樺山資紀)을 배출했지만 이후 식민지통치 주도권을 육군에게 내주게 된다. 하지만 해군이 대만총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1914년 10월 조슈파인 사쿠마 총독이 사표를 제출하자 해군에서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외무대신을 통해서 후임 추천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초대 대만총독을 배출한 해군으로서는 악화된 여론을 등에 업고 대만에 재입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육군에서도 후보군을 둘러싸고 의견이 나뉘었다. 여기에 오키마 내각의 유력자인 가토 외무대신이 해군을 지지하자 대만총독을 둘러싸고 육군과 해군이 대립하면서 후임 선정까지 난항을 거듭하게 되었다. 데라우치는 육군대신에 압력을 가해 1915년 1월 퇴역이 예정되어 있는 안도 사다요시(安東貞美) 조선주차군사령관을 명예 진급시키고, 같은 해 5월 육군대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쿠마의 후임으로 안도를 추천하여 성사시켰다. 이처럼 해군은 사쿠마 후임 총독에 해군출신이 취임하도록 운동했지만 좌절되었다. 해군의 이러한 식민지장관 인선에 대한 관여는 3·1운동 이후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조선총독에 취임하는 복선이 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해군은 3·1운동 이후의 관계개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

식민지 자본주의의 전개와 3·1운동

조 명 근 (영남대)

머리말

I. 식민 본국에 종속된 경제 구조로의 재편

II. 식민권력과 자본에 포획된 일상생활

1. 전통적인 관습의 부정과 공동체의 해체

2. 새로운 법령의 시행과 단속과 처벌의 일상화

III. 자본주의 인식의 전환점으로서의 3·1운동

1. 1910년대: 고립된 존재로서의 개인의 강조

2. 1920년대: 집합적 주체로서의 '조선인' 본위

론 제창

맺음말

식민지 자본주의의 전개와 3·1운동

조 명 근 (영남대)

머리말

3·1운동은 참여 지역과 인원, 계층 등에 있어서 거족적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유례 없는 규모였기 때문에 특정 집단이나 주체의 운동으로 한정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운동의 배경에는 여러 층위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¹⁾ 3·1운동의 원인으로 무단 통치와 경제적 수탈이 항상 거론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련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은 형편이다.²⁾ 최근의 연구사 정리에 따르면 1989년 70주년 기념 성과³⁾ 이후로는 경제사 분야에서 직접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⁴⁾

본 발표문은 기존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식민지 자본주의와 3·1운동의 상관관계를 재구성하려고 한다. 강점 이후 전개된 식민지 자본주의로 인한 사회경제의 구조 변동이 당시 조선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이것이 3·1운동과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장에서는 식민 본국의 이해관계와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채 재편된 식민지 경제의 기본 구조를 정리할 것이다. 조선 내부에서 진행되어 왔던 기존의 관행과 방식이 부당한 채, 일본 상품시장을 목표로 재편된 경제 구조를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 결과 일본과 조선 간에 미곡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 폭력으로 강제된 여러 정책은 종래 조선 농업의 관습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의 이윤 창출과도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 내 미곡 문제가 통합된 미곡시장을 통해서 조선에 직접 연동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식민지를 희생시키는 양상을 찔소동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것이다.

2장에서는 식민권력과 자본이 기존 조선의 공동체적 삶과 일상생활을 어떻게 파괴하고 규제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전통 농경사회에서 공동체는 재생산의 기본적인 단위일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의 단위로 생존에 직결되고 있었다. 일제는 종중이나 동리의 공동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 부인, 산림에서의 입회권 부정, 자가주조 금지 등 기존 공동체적 구조 속에서 작동되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1물1권주의라는 ‘근대적’ 소유권을 확립시킨다는 명분으로 종래 조선인들 삶의 기반을

-
- 1) 3·1운동의 원인에 대한 연구로는 도면희, 「3·1운동 원인론에 관한 성찰과 제언」, 『3·1운동 100년 1- 메타역사』, 휴머니스트, 2019 참조.
 - 2) 최근 학계에서 진행된 3·1운동 연구사 정리는 정용욱, 「3·1운동사 연구의 최근 동향과 방향성」, 『역사와 현실』 110, 2018 및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 엮음, 『3·1운동 100년 1- 메타역사』, 휴머니스트, 2019 중 「제2부 연구사의 성찰」을 참조할 것.
 - 3)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엮음, 『3·1민족해방운동 연구』, 청년사, 1989 중 권태덕, 「식민지 초기 일제의 경제 정책과 조선인 상공업」; 정태현, 「1910년대 식민농정과 금융수탈기구의 확립과정」; 임경석, 「1910년대 계급 구성과 노동자·농민운동」.
 - 4) 배석만, 「3·1운동의 경제적 배경에 관한 서술과 시대성」, 3.1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 엮음, 『3·1운동 100년 1- 메타역사』, 휴머니스트, 2019.

이루었던 각종 관행들은 부정당했고, 조선인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당했다. 한편 식민권력은 각종 법령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통제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조선인들의 삶을 세밀하게 규제하였다. 종래 일상생활에서 권력의 규제를 받지 않던 다양한 행위들이 공식적인 범법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단속되고 처벌받는 범죄자로 언제든지 전락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식민지 조선 경제를 둘러싼 인식의 전환을 3·1운동 전후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1910년대 일본 유학생들은 식민지라는 현실 속에서 국가 없는 자본주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었고, 개인을 경제 발전의 주체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 없는 자본주의 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두고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학지광』에서는 사유재산의 축적에만 몰두하는 개인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를 요구했다. 반면 1910년대 식민권력은 주조한 개인은 통치가 열어준 아주 협소한 공간 속에서 오직 생업에만 안돈하여 소극적으로 생존만을 도모하는 존재였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3·1운동 이후에는 크게 두 경향으로 대별할 수 있다.⁵⁾ 운동 이후 식민권력의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권력의 보호와 장려를 통해 자본가로서의 성장을 모색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민족 차별 문제를 공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자본가 중심의 자본주의적 전망을 모색하고 실천해나가려고 했다. 반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최대한 ‘자율적’인 공간을 확보하려는 입장도 존재하였다. 이들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공동체 내의 자급자족의 순환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의 포획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3·1운동 이후 조선인들은 제한된 공간 속에서 자본주의 인식 및 전망을 두고서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 식민 본국에 종속된 경제 구조로의 재편

1910년대 일제 경제정책의 핵심은 토지조사사업으로 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는 본인이 일정 기간 내에 소재지, 소유자명, 주소, 땅의 용도 등을 직접 신고한 후 심사를 거쳐야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특히 등기제도를 통해 토지는 은행의 담보물로 이용되면서 토지의 상품화를 촉진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일제는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를 지세 납부자로 확정하여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려 하였다. 사업이 종료되자 경지면적은 1910년 말과 비교하면 81%가 늘어났으며 지세도 1.7배 증가하였다.⁶⁾ 면적의 증대는 철저한 조사의 결과였으며, 이로 인한 과세 대상지의 확보는 지세의 증가도 가져와 총독부 재정의 핵심이 되었다.⁷⁾

조선총독부 예산이 토지조사사업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다른 농업 정책에는 적은 비용이 배정될

5) 본 발표문에서 ‘집합적 주체’란 민족이나 민중, 대중 등으로 일원화되기 어려운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고 보고 특정 집단으로 호명할 수 없는 대상을 지칭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허수는 일제시기 ‘집합적 주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국민’, ‘민중’, ‘대중’, ‘인민’을 설정하고 계량적 분석을 시도한 적이 있다(허수, 「식민지기 ‘집합적 주체’에 관한 개념사적 접근—『동아일보』 기사제목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23, 2010).

6) 강만길 역음,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0, 94~98쪽.

7) 1910~18년간 지세는 조세 수입의 평균 51%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재정 수입원이었다. 그러나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1910년)→40%(1918년)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1.7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조세 증가율(2.4배)보다 낮은 수치이다. 지세는 토지소유 규모를 불문한 단순 비례세이기 때문에 세율 인상이 없는 한 세액이 고정된 상태에서 다른 세목이 신설, 증정되면서 그 비중이 저하되었다. 직접세인 지세 이외에 각종 소비세가 신설되고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켰는데, 대표적으로 관세와, 주세, 연초세를 들 수 있다. 증가율은 주세와 연초세가 높았으나 전체 비중은 관세가 소비세의 76%를 차지하였다(정태헌,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 역사비평사, 1996, 63~100쪽).

수밖에 없었다. 그 대상을 보면 미국은 일본 벼 품종 보급, 면작은 육지면 재배의 확대가 핵심이었고, 양잠과 축우의 장려도 포함되었다.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권력의 강요와 폭력이 동원되었다. 벼농사의 경우 “지시에 따르지 않는 못자리는 짓밟”아 버리고, “묘를 뽑아버리”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적기수확이 강행되고, 수확하면 건조에 대하여, 건조하면 조제에 대하여 탈곡기의 사용이나 멍석의 사용이 강제”되고 있었다.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인 지주 및 미국상의 이해관계에 따라 헌병경찰의 폭력을 동원하여 시행된 것이었다.⁸⁾ 그 결과 일본 벼 품종의 보급률은 1912년에 2.8%에서 1921년 61.8%로 대폭 증가하였다.

면작에 있어서는 조선의 재래종 대신 육지면 재배가 강요되었는데, 당시 일본 공업의 핵심인 면방직 공업의 원면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서였다.⁹⁾ 역시 이도 강제적으로 시행되었는데, 헌병경찰은 재래면 재배 농민에게서 종자를 빼앗았으며, 그래도 면화 재배 농민이 재래면을 심는 경우 면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횡포를 자행하였다. 특히 공판제도가 실시되어 육지면 재배가 조선 농민에게 이익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량의 60%를 달성하는데 그쳤다. 양잠의 경우도 기사가 출장 시에는 헌병들이 호위를 받으면서 추진하였고, 아울러 생산된 고치는 관이 주도하여 알선업자에게 경매 형식으로 판매케 함으로써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일률적으로 통제하였다. 총독부는 육지면과 생사를 공판제도를 통하여 일본인 자본가 혹은 특정인에게 판매케 함으로써 조선 농민이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¹⁰⁾

이와 같이 식민권력은 조선의 전통적 농법과 농사 관행을 무시한 채, 일본 시장과 일부 자본가를 중심으로 농업 체계를 재편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선인 농민은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이는 3·1운동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당시 각 지역의 면사무소가 많이 습격을 당했는데, 개성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었다.

면장이 군수의 명령으로 수년래 토지의 상황에 맞지 않는 양잠을 무턱대고 장려하여 桑苗를 각 호에 배호하여 강제적으로 植付하고 桑苗의 성장발육은 고려하지 않고 다음으로 蠶種을 배당하고, 대금을 강제 징수하였다. 농민의 이해 등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 일반의 반감을 샀는데, 때마침 이번 소요가 나자 일제히 면사무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¹¹⁾

한편 미국 상품화를 핵심으로 한 식민지 지주제의 확대는 일본인의 토지 침탈과 더불어 자작농의 영세농화 및 소작농화를 가속화시켰다. 이로 인한 농촌 사회의 불안을 수습하기 위해 식민 권력은 ‘농가 경제 안정화 방안’을 실시했는데, 핵심은 부업을 통한 현금 수입의 증대였다. 1910년대에 장려한 핵심 부업은 일본 제사자본에 제공하기 위한 양잠과 미국의 조제 포장에 쓰이는 짚가공에 집중되었다. 일본의 주요 공업생산품인 제사의 원료인 고치 생산과 미국상품화를 위한 짚가공을 농가부업으로 장려함으로써 조선 농민경제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 한편, 일본 자본주의에 적합한 원료 생산품을 표준화하여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부업도 농업 정책과 동일하게 일본의 수출산업을 위한 원료 생산에 집중되어 장려되었고, 결과

8) 권태억,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와 문명화(1904~1919)』,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90쪽.

9) 당시 조선은행권은 일본은행권을 기반으로 발행되고 있었고, 양 화폐는 1대1 등가로 교환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수입초과가 발생하여도 타국과 달리 외환결제 자금이 필요치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일본은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경제가 크게 어려웠기 때문에 국제 결제 시스템에 구애받지 않는 조선으로부터의 원료 수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10) 이상은 이영학,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농업정책」, 『한국학연구』 36, 2015를 참조하였다.

11) 「騷擾事件ニ關スル民情彙報(第十報)」(1919.4.27), 일본 외무성,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内地六』(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적으로 일본 자본주의에 필요한 원료 농산물을 값싸게 생산·공급하는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상과 같이 식민 권력의 정책은 조선 농촌을 일본 자본주의의 순환체계 내에 편입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며, 이는 권력과 자본의 결합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¹²⁾

한편 총독부는 「회사령」을 통해 조선 내 자본 전체(조선인과 일본인 자본)에 대한 사전적 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권력이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선인 자본의 입장에서는 「회사령」으로 인해 많은 조선인 회사가 불허되거나 해산 당했기 때문에 조선 후기 이래 발전해 온 도고상업체제는 해체되었다. 「회사령」 이전에 활동한 회사 중 20% 정도만이 인가받을 수 있었는데, 인가를 얻은 회사들은 총독부의 조선 경제 재편책에 활용될 수 있거나 일본 자본과 결합하지 않는 것들뿐이었다.¹³⁾

이상과 같은 일제의 농업 정책은 강제력을 기반으로 시행되었고, 그 배경에는 권력과 자본의 합작에 있었다. 그 결과 조선인 농가는 자율성을 상실한 채 자본의 이해에 종속되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식민 권력의 즉각적인 폭력적 제재를 받게 되었다. 선대로부터 누적되어 온 기술과 조선인 농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작물과 품종, 그리고 농사의 경영 방식 등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던 조선 농가의 전통은 부정당한 것이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예천 맛질 박씨가 사례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농업의 특징은 집약화와 다각화로 집약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농업은 토지생산성 상승이나 노동생산성 하락을 내용으로 하는 집약화와 농산물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다각화로 특징지어진다. 조선 후기 농법의 발전 방향은 한편으로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 시장출하를 목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본주의적’ 농업의 지향과 그 성격이 매우 달랐다.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던 19세기 양반들마저 상품화를 염두에 두고 곡물 증산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곡물 다각화를 추구했다. 예천 맛질 박씨의 경우, 자신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곡물과 채소를 가작지와 병작지의 생산물로 충당함으로써 식생활과 관련된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으로 전답을 매입했다. 따라서 19세기 농민들의 미덕은 증산과 소비가 아니라 자급과 절약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농부들이 여러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매우 정교하게 일손을 배치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어떤 때는 오전·오후 한나절, 어떤 때는 아침·저녁 잠깐 일을 했다. 그리고 어떤 작업은 여러 명, 어떤 작업은 혼자서 했다. 조선 후기 지주층은 면화, 담배 등과 같은 상품 작물을 대부분 자급했기 때문에 조선 후기 상품 작물에 대한 시장 구매력은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미곡을 제외한 작물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이다.¹⁴⁾

그러나 강점 이후 일제는 조선 농촌 내부에서 시도되고 있던 농가 경영의 다양한 모색을 말살시킨 채 일본에 종속된 경제 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농가에 획일화를 강요하였다. 그 핵심이 일본 미

12) 부업 장려를 위해 조직한 양잠조합이나 繩飢籴조합 등을 운영하는 주체는 행정조직 또는 지주층이었다. 그 결과 조합 운영에서 자율적인 성격은 아예 배제되었고, 농민들의 상품생산과 이윤획득이라는 목적보다는 생산품 관리를 주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예 조합 사무소를 군청 안에 두고 군수가 조합장을 맡는 경우도 있었다(진주군의 사례). 이와 같이 행정기구에 의해 추진된 생산·판매관리 체계의 성립은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의 자율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생산 농가의 이해보다는 이를 이용하는 층인 지주층과 독점자본의 이해를 기준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생산·판매 과정에서 지주층과 독점자본의 영향력을 관찰시킬 수 있는 기구로 편성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이상은 이경란, 「1910년대 부업생산물의 상품화와 농가경제」, 『역사문제연구』 2, 1997를 참조하였다.

13) 이상은 전우용, 『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참조.

14) 이는 단지 특정 농가만이 아닌 19세기 대세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상은 김건태, 「19세기 집약적 농법의 확산과 작물의 다각화 -경상도 예천 맛질 박씨가 가작 사례-」, 『역사비평』 101, 2012.

곡시장의 통합이었다. 일본의 미곡 수입입량에서 조선산 미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2·13년에 8.5%·6.4% 정도였지만, 1914년 이후 크게 높아져 1914~39년간에는 그 비중이 평균 54.5%에 달하였다. 즉 일본에서 수입된 미곡 중의 절반이 조선에서 들어온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의 미곡 소비량 전체에서 조선산 미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4~39년간 약 7.1%에 달하였다. 조선에서 수입된 미곡은 일본 국내 소비에서 10%도 안 되는 비중이지만, 일본 국내의 생산과 소비 사이의 격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곡 가격의 폭등을 방지하고 일본의 1인당 미곡 소비량을 1.1석 전후로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곡 생산량을 훨씬 웃도는 수확량의 증가는 당연히 조선 내에서의 1인당 미곡 소비량의 감소로 나타났다.¹⁵⁾ 식민 본국 소비의 안정과 식민지 소비의 악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식민지적 미곡 수급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조선과 일본 사이의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조선과 일본의 미곡시장이 사실상 통합되었다. 조선산 미곡은 1913년 7월부터 이입세를 물지 않고 반출될 수 있게 되었는데, 종가 15%에 달하는 관세가 없어짐으로써 조선의 미곡시장은 사실상 일본 미곡시장의 일부가 되었고, 조선산 미곡의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커지게 되었다. 조선 내 일본인 소유 경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그 비율이 최고 18.5%에 이르렀다(1935년). 일본인 지주들은 미곡 수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 이래 일본 품종을 강제적으로 보급시켰는데, 이는 일본시장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일본과 조선에서 미곡이라는 상품은 그 품질에 있어 동질성이 한층 더 커졌다. 이처럼 미곡시장의 경우 조선과 일본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고, 거래되는 상품은 동질적인 것이 되었으며, 거래 주체인 일본인 지주의 소유 경지 면적이 급속히 증가한 것 등이 원인이 되어, 조선의 미곡이 대량 일본으로 유출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두 시장에서의 가격도 동조화되고 단일화 되어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¹⁶⁾

제1차 세계대전은 일본 자본주의에 큰 혜택을 안겨주었다.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에서 탈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도 비약적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은 호황의 혜택에서는 소외된 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만을 감당하는 상황이었다. 즉 산업 발달의 수준 차이와 제국-식민지간 분업 구조 속에서 호황은 전적으로 식민 본국이 누리는 반면, 불황은 본국과 동시에 함께 겪게 되었던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은 물가 상승을 가져왔고, 조선의 경우 1917년부터 시작된 미가와 물가의 등귀로 인한 특히 하층민의 생활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

〈표〉 1910년대 후반 미가(현미 중등품 기준, 단위: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16	10.44	10.21	10.24	10.35	10.48	10.6	11.22	12.11	12.17	11.98	12.15	12
1917	11.78	11.77	11.86	12.17	14.66	17.82	18.64	18.85	18.18	19.35	19.49	18.92
1918	19.04	20.15	22.32	22.34	22.47	23.17	24.82	31.13	30.4	32.66	31.59	32.87
1919	34.6	36.36	32.12	32.29	34.07	35.82	38.6	41.52	41	42.27	45.38	46.29
1920	46.83	47.47	47.17	42.75	40.88	35.88	36.29	37.48	30.49	25.87	22.34	20.26

자료: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20년판)

1917년은 흉작이었고,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매점매석도 성행하여 쌀값의 경우 연말에 연초 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다. 1918년 들어 미가 상승은 더욱 가팔라졌고, 영세한 계층은 기아선상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20원 월급을 받는 감옥 통역이 도저히 살 도리가 없다고 목숨을 끊었고,

15) 조선인 1인당 쌀 소비고는 0.77석(1912년)→ 0.67석(1916년)→0.53석(1926년)→0.45석(1930년)→0.39석(1936년)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16) 허수열,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한길사, 2011, 191~194쪽.

가장이 가출한 어느 집에서는 아이 넷 중 둘이 굶어 죽었다. 생활고에 지쳐서 아이를 내다 버리거나 심지어 땅에 파묻은 사람도 있었다. 지게꾼 노릇하는 가장이 벌 수 있는 돈은 하루 40전이 고작인데 이 돈으로는 다섯 식구 좁쌀죽 한 끼를 끓일 수 있었을 뿐이라고 『매일신보』는 당시의 절망적 상황을 전하고 있었다.¹⁷⁾

이런 미가 폭등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다른 아닌 식민권력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자국 내 미가가 폭등하자 조선미를 들여와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¹⁸⁾ 조선미 약 20여만 석을 스즈키상점(鈴木商店)을 통해 매입하기로 하고 명령서를 내렸는데, 매입과 매도 과정에서 스즈키 상점이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보상토록 하고 이 사업은 비밀에 부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스즈키상점은 오사카의 조선미 수입상인 코니시 타츠지로(小西辰次郎)를 중간에 내세워 부산, 군산, 인천에서 조선미를 매수하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미 매집에 대해 철저한 비밀로 붙였는데, 7월 14일자 『關文日日新聞』에서 정부가 스즈키상점에게 1석당 5엔의 보조금을 밀약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에 경성상업회의소를 비롯하여 각지의 상업회의소나 곡물협회가 항의를 하고 조선미 매집을 정지할 것으로 요구하였다.¹⁹⁾

조선도 쌀값이 폭등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식민 본국만을 고려한 이 조치로 인해 조선 사회에서 커다란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총독부와 유지들은 빈민구제를 위해 기금을 모아 구제회를 조직하고, 시가보다 싸게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염매소를 열었다. 쌀을 1되 당 시중보다 10전 싸게 받기로 하고, 경성에 9곳에 염매소를 설치하고 8월 18일부터 시작하였다. 경성 뿐 아니라 인천, 평양, 대구, 전주, 마산 등지에서도 염매소를 열었다. 그런데 8월 28일 경성의 종로소학교에서 종일 줄을 서 있다가 중간에 쌀이 떨어져 사지 못하게 된 주민 200명을 해산시키면서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자 시내 시민 1000명이 합세하여 항일연설을 하고, 경찰과 학교 건물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전부 박살내는 등의 시위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109명이 검거되어 30여 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²⁰⁾

II. 식민권력과 자본에 포획된 일상생활

1. 전통적인 관습의 부정과 공동체의 해체

식민지기 지배적인 산업인 농업의 경우, 식민지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 속에서 일본 시장을 대상

17) 권보드래,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311쪽. 미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1919년 2월에는 1석당 43원을 넘어섰는데, 이를 두고 『매일신보』에서는 “사람을 죽일” 시세라고 표현할 정도였다(이정은, 「『매일신보』에 나타난 3·1운동 직전의 사회상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1990, 200쪽).

18)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맞이한 호경기 동안 비농림업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농림업 인구의 감소로 미곡 생산의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도시화와 진전과 소득의 증가로 인해 미곡 수요는 크게 늘어났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1918년의 ‘쌀소동’이었다. 일본의 미곡 가격은 1917~20년에 급증하는데, 특히 ‘쌀소동’이 일어난 1918년 7월 1석에 30.4엔 하던 미곡 가격은 8월이 되면 38.7엔으로 수직 상승하였다. 일본의 쌀소동은 1918년 7월 22일에 시작되어 8월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약 50일 동안 369곳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참가자 규모는 수백만 명에 달하였다. 결국 연인원 10만 명 이상의 군인이 투입되어 폭동은 진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2만 5,000여명이 검거되었다(허수열, 앞의 책, 189~190쪽).

19) 吉岡吉典, 「植民地朝鮮における一九一八年-米騒動と朝鮮-」, 『歴史評論』 216, 1968, 41~43쪽.

20) 미가와 물가 등귀로 생활이 어려워진 노동자들의 파업도 벌어졌는데, 노동자의 동맹파업은 1916년과 1917년도에는 각기 8건이었으나, 1918년에는 50건으로 폭증했다. 1917년 8월 평양동아연초, 1918년 3월 겸이포 미쓰비시제철소, 1918년 8월 경정선기회사 전차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은 임금 인상으로 생활고가 극심한 당시 노동자의 형편을 대변하고 있었다(이정은, 앞의 논문, 205~216쪽).

으로 한 미국의 상품화가 진행되어 농민의 일상생활 역시 자본주의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은 단순히 산업뿐만 아니라 촌락공동체의 유지와 재생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통 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촌락 내에서 재생산되는 자급자족 체제가 지배적이었으나, 일제시기 들어서는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각종 조세의 신설로 인해 농가에서는 현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종래에는 자급자족을 통해 충당되었던 의류, 술, 담배 등이 이제는 세금을 내고서 구입해야 되는 상품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식민지 자본주의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면서 종래 관습적인 소유 관계를 부정하였다. 토지조사사업에서는 도지권 등의 종래 소유권과 다른 없는 물권적 경작권은 1물1권이라는 이름하에 완전히 부정되어져 많은 농민이 단순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 더 문제가 된 것은 각종 공동체의 재산이었던 공유지였다. 공유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종중재산과 동계재산이었다. 총독부는 농경지나 임야 등을 종중이나 동계 명의로 신고하거나 등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허용된 방법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 명의로 하는 방법이나 구성원 전원의 공유로 하는 것, 혹은 1인 또는 수 명의 명의로 하는 세 가지였는데, 대부분은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였다. 한편 동계재산의 경우 많은 동계나 촌계의 재산이 지방자치단체(동리나 면)의 재산으로 전환되어 버렸다.²¹⁾ 그런데 부동산등기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종중재산이나 동계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였다. 등기 명의인들은 종중이나 동계의 허락 없이 공유 부동산을 처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종중이나 동계 구성원들이 무효를 주장하자, 당국은 신고명의인만이 소유권자이고 기타 공유자와 신고명의인간의 관계는 신탁적 양도관계에 불과하다는 ‘명의신탁이론’을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독부 당국은 종중이나 동계 토지를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조선인들의 질의에 대해 종중원이나 동계원 중 아무나 한 사람을 관리자로 하여 신고하라고 해놓고 막상 신고와 등기가 끝난 후에는 신고명의자의 개인소유임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종중재산과 동계재산이 소실되었고, 전통적인 종중이나 동계가 급격히 해체되었던 것이다.²²⁾ 이렇게 총독부는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나갔다.²³⁾

이런 점은 임야 소유권 확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조선 시대에는 지역 주민들이 산림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자치조직으로 松契가 있었다. 송계의 대상이 되는 마을 공유림을 송계산이라 불렀는데, 자치 규약을 정해 산림 벌채량과 조성량을 조절하였다. 그러나 일제 당국은 공동체적 소유림을 ‘無主空山’으로 규정하고, 면유재산으로 편입시키고자 하였다.²⁴⁾

조선은 山林川澤의 경우 그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산림에서 나오는 땔감이나 녹비 등의

21) 토지조사사업 기간 중인 1913년에 「부락소유재산정리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이 내려졌는데, ‘동리 내의 소부락이 소유한 토지의 경우,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동리명칭이 달라졌으면 부락민을 설득하여 행정구역상의 동리명으로 신고하도록 권유’케 한다는 내용이다. 원래 조선 후기의 사람들이 ‘면유’ 혹은 ‘동리유’라고 말하는 것은 ‘계원들의 공유재산’이라는 공동체적 개념으로 일제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서의 ‘면유’나 ‘동리유’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다. 그러나 일제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신고한 경우 지방단체의 소유로 전환시켜버렸다.

22) 이상은 沈義基, 『韓國法制史講義』, 三英社, 1997, 296~303쪽.

23) 당시 총독부는 종중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전체 종중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재산의 증명 및 등기방식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단을 마련하지 않았다(이승일, 「일제 식민지 시기 宗中財産과 「朝鮮不動産登記令」-소유권 분쟁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61, 2000, 173~174쪽).

24) 일제는 마을 주민의 공유림을 임야조사사업 당시에 행정동리유 재산으로 규정하는 한편 1920년대 말부터는 面有재산으로 강제로 편입시키려고 하였다. 임산물 판매를 통하여 면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는데, 이 면유재산화 조치는 지역주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한다(최병택, 『일제하 조선임야조사사업과 산림 정책』, 푸른역사, 2009).

여러 부산물은 생존에 필수적인 재료로 농촌 공동체 유지에 핵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공유지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에 함부로 접근·출입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무주공산이 아니다. 공유지는 특정 지역민 모두의 것이면서 외부인의 접근을 배제한 공간이었으며 내부 성원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를 내포하고 있는 사회 제도로 존재해 왔다.²⁵⁾ 그러나 식민 권력은 종래 조선인들이 향유하던 입회권을 부정하였고, 이는 조선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당시 헌병경찰이 주막에서 청취한 내용을 들어보면 “삼림령은 참으로 혹독한 법령이다. 소나무 가지 하나 베어도 주재소가 탐지하여 순사가 출장 와서 엄금한다”고 하여 매우 강력한 감시가 작동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올해처럼 쌀값이 쌀 때는 나무를 잘라 장작을 팔려고 하는데 쉽게 허가를 받지 못해 곤란”을 토로하였는데, 이는 빈농층에게는 산림이 생계 유지에 매우 중요한 곳이었음을 확인시켜준다.²⁶⁾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매우 가혹한 처벌이 뒤따랐다. 당시 범죄즉결 처분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과료나 구류 처분이 징역, 금고, 태형에 비해 많은 편인데, 「삼림령」의 경우는 구류나 과료와 같은 가벼운 처분이 거의 없다. 화전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벌금을 내지 못하고 태형으로 환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진 인원이 이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한다.²⁷⁾ 특히 조선인에게 악명이 높았던 태형 처분의 경우, 도박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이 「삼림령」 위반이었다. 양적으로는 도박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지지만 수많은 범죄들 가운데 두 번째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전체 태형 처벌에서의 비율이 10%에 달할 정도였다.²⁸⁾

식민 권력이 종중재산이나 공유지를 몰랐을 리는 없다.²⁹⁾ 공동체 내의 규범과 자치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된 영역에 권력이 개입함에 따라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당사자인 권력이 오히려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 간의 문제로 돌리고 있었다. 그 결과 종래 공동체는 해체되었으며, 결속은 와해되었고, 개인은 파편화될 수밖에 없었다. ‘공유’를 통해서 상호 보완, 생존을 도모하고, 필요한 재화나 생활에 직결된 필수재를 습득하여 왔던 기본 경제 구조는 파괴되었다. 왜 일제는 이러한 전통적인 관습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가? 즉 완전히 민유지도 아니고, 국유지 창출도 불가능한 공유지는 기존의 관습 등을 고려해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부정하기에 급급하였다. 식민권력은 조선인의 전통적인 삶이나 생존 조건 등에 대해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골치 아픈 일들은 던져 놓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해라고 방관하였다. 통치 준비 부족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애초에 깊이 고민하고, 인식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25) 윤순진, 「옛날에 공유지를 어떻게 이용했을까?」, 이도원 엮음, 『한국의 전통생태학』, 사이언스북스, 2004, 162~163쪽.

26) 松田利彦, 『주막담총(酒幕談叢)』을 통해 본 1910년대 조선의 사회상황과 민중, 『일제 식민지 시기의 통치체제 형성』, 해안, 2006, 384쪽. 주막담총은 충남 내에 배치된 헌병경찰이 그 당시 민정을 기록한 자료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에 경찰기구의 말단에 있는 조선인 헌병보조원 등을 주막에 들여보내 민중의 욕성을 채록한 것이다.

27) 이종민, 「가벼운 범죄, 무거운 처벌- 1910년대의 즉결처분 대상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107, 2015, 33쪽.

28) 염복규, 「1910년대 일제의 태형제도 시행과 운용」, 『역사와현실』 53, 2004, 209~210쪽. 전체 태형처벌자 중 약 75%는 늘 도박에 의한 것이었다.

29) 일본도 공유지의 전통이 있는데, 지속 가능한 공유지의 자치 제도를 연구해 온 오스트롬은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일본을 들고 있다(엘리너 오스트롬 지음/윤홍근·안도경 옮김, 『공유의 비극을 넘어』, 랜덤하우스 스코리아, 2010, 133~139쪽). 이 책에서는 기존의 견해, 즉 공유자원은 제대로 관리될 수 없으며 완전히 사유화되거나 아니면 정부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례들을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공유자원을 밝혀내고 있다.

식민 권력이 근대적 소유권의 표상으로 선전하던 1물1권주의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공유지의 사례를 보아도 일제의 사회경제 정책은 이와 같은 공존을 도모해 왔던 관습을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공유지는 이타적 존재를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타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를 자치적으로 해결해 온 것이 우리를 비롯한 각국의 공유지 관리에서 드러난다.

일제는 ‘합리성’과 ‘사적 재산’ ‘자본주의’ ‘문명화’ 등의 이름으로 종래 관습적 경제 구조를 파괴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공유지의 경우 종래 관습이 오히려 뛰어난 제도였음을 거꾸로 확인해 줄 수 있었다. 공유지가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공유지의 소실과 공유지 관리제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임야 입회권이 중요한 것은 연료 나 퇴비 등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를 공동으로 채취해야만 했던 조건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무시한 채 진행된 일제의 정책은 저항과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제가 부정한 전통적인 관습은 그 속에서 생계를 영위해 온 조선인들에게는 생존에 직결된 문제였다. 특히 화전민의 경우는 자신의 생존을 완전히 부정당할 수밖에 처지에 내몰리게 되고 이들의 저항은 격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³⁰⁾ 일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종래의 관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나 의견 수렴 등은 전혀 없었다. 만약 식민지가 아니라면 이렇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가능했을 것인가? 식민권력에 의해 강요된 각종 ‘근대적’ 제도는 당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었느냐, 더 나아가 이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따른 단속과 처벌의 일상화

1910년대는 ‘法令雨下, 法令百出’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수많은 법령이 쏟아져 나왔다. 주민 일상의 최일선에서 맞닥뜨리는 헌병경찰의 임무를 보면 첩보의 수집, 산림감시, 어업단속, 징세원조, 그 밖에 일본어의 보급, 도로의 개수, 식림·농사의 개량, 부업의 장려, 법령의 보급 등 실로 식민지 민중의 생활 전반에 걸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총독부의 모든 ‘문명적’ 통치 행위가 강제와 폭력에 뒷받침되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³¹⁾

3·1운동 당시 평안남도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당시 가장 조선인들이 큰 고통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①삼림 이용 제한 및 화전 경작 금지, ②각종 간접세의 증설 및 부역 ③위생 행정에 관한 억압으로 묘지 규칙이나 오염 시설 단속 등을 들고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부딪치는 문제들로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²⁾

식민권력의 간섭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세밀하였으며, 조선인 일상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와 단속, 그리고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종래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던 각종 행위들 또한 새롭게 범죄로 되어 처벌당했는데, 그것들은 지금까지 익숙했던 생활 방식을 부정한 것이기

30) 화전민의 저항에 대해서는 이정은, 앞의 논문, 212~212쪽.

31) 재조 일본인 기자였던 아베 가오루(阿部薫)는 데라우치 총독 시대에 새로운 법령이 눈앞이 팽팽 돌도록 많이 쏟아졌다고 하면서 그 중에는 관습과 어긋나는 것도 있어 조선인들도 알지도 못하고 법을 어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고 한다(권태억, 앞의 책, 89·92~93·162쪽). 조선인들은 “병합 후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에 관리가 참견하니까 아무 것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松田利彦, 앞의 논문, 382쪽).

32) 그 외에 조선어를 알지 못하는 하급관리가 불친절하고 관습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 언론과 출판의 제한이 심해 인민의 의사를 발표할 기회가 없는 것도 들고 있다(권태억, 앞의 책, 163쪽에서 재인용).

도 하였다.³³⁾ 식민권력이 허용한 일상에서 한 치라도 비켜설라 치면 어김없이 폭력적인 제재가 가해졌다. 근본적으로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식민지인으로서의 천형이다.³⁴⁾ 금지와 처벌의 만연되었고, 이에 대한 식민 권력의 폭력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이며 즉각적인 것이었다. 이런 방식을 통해 권력은 짧은 시간 내에 통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일상생활에서의 처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태형이었다. 「태형령」 시행의 논리는 행형비의 절약과 형벌의 효과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³⁵⁾ 일본인은 제외된 채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시행된 태형은 식민 권력의 입장에서는 당시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저비용’의 효과를, 그리고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효율’의 제도였다. 그러나 조선인에게는 가장 모멸적인 차별 대우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3·1운동 이후 조선에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하라 다카시(原敬)로 받은 비밀문건인 「조선통치사건」에는 「태형령」 폐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총독부 사법 관료들 사이에서는 태형 폐지에 관해서는 반대론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이토는 반대론을 일축하고 서둘러 직권으로 태형 폐지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교체된 총독부 수뇌부가 태형 폐지를 서둘러 결정하고 집행한 것은 이것을 통치 정책 전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태형이라는 형벌이 조선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모멸적인 것이었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³⁶⁾

태형과 더불어 전근대적 제도가 온존된 대표적 사례로 부역을 들 수 있다. 부역은 도로·항만·하천·사방·상하수도 시설 등의 건설과 유지·수선에 조세의 일환으로 노동력을 동원한 것으로 1916년에는 연인원 1,000만 명 이상, 1920년대 중반에는 연인원 1,400만 명 이상이 동원되었다. 총독부는 3·1운동 이후 수습과정에서 부역에 대한 대책으로 일·이등 도로의 개수공사에 대한 부역은 폐지하였다. 그러나 타분야 부역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1920년대 들어서도 그 규모가 적어진 것은 아니었다. 부역은 당시 일본은 물론 대만에도 시행되지 않았던 제도이다.³⁷⁾ 1910년대 헌병경찰이 수집한 바에 따르면 “부역을 가는 날은 20~30전 손해 보는 날로서 체념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불평이 제기되었다.³⁸⁾

한편 식민권력과 자본의 침투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가운데 주세 부과와 ‘밀주’ 단속을 들 수 있다. 원래 조선은 자가용 주조가 널리 허용되었고, 주세를 부과하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일제는 1909년의 「주세법」을 통해 가정에서 주조하는 술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토록 하였고, 1916년의 「주세령」에서는 ‘자가용주’와 ‘판매주’를 엄격히 구분하여 자가용주의 세율을 판매주보다 높게 설정하였다. 즉 주세를 납부하며 자신의 집에서 술을 담그는 것보다는 사는 쪽이 이득이라고 여길 만한 조건을 만들어간 것이다. 한편 민간 주조업자의 경우 지역별로 겹치지 않도록 배분되었기 때문에 주조업자에게 가장 큰 경쟁상대는 다름 아닌 농민의 자가용 주조였다. 그런 까닭에 주조업자가 세무서와 결탁하여 ‘밀주’를 단속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³⁹⁾

33) 경찰의 소관 업무는 실로 태어나서 무덤에 묻히는 모든 순간에 걸쳐 있다. 호구조사에서 일상적인 건강, 미신을 포함한 종교생활, 먹고 마시는 행위, 길을 걷거나 배를 타는 등의 교통생활, 예기치 않은 재난, 여행, 모임, 정치적 의사표시, 직업의 선택, 사망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관리·통제 속에 놓여져 있었다(장신, 「경찰제도의 확립과 식민지 국가권력의 일상 침투」,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혜안, 2004, 564쪽).

34) 권보드래, 앞의 책, 2008, 157쪽.

35) “정역 3개월의 경우 태 90대로 환형하면 2일간 구금하면 됴으로 88일의 행형비가 절약된다”로 말로 알 수 있는데, 실제 1917년의 경우 1년간 집행된 총태수는 1,455,216대로 이를 위해 구금한 일수 30,744일을 공제한 1,424,472일분의 행형비, 444,425원이 절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염복규, 앞의 논문, 204~205쪽).

36) 염복규, 앞의 논문, 213~215쪽.

37) 이상은 박이택, 「植民地期 赴役의 推移와 그 制度的 特質」, 『經濟史學』 33, 2002 참조.

38) 松田利彦, 앞의 논문, 380쪽.

39) 그 결과 자가용 주조의 면허자는 1918년을 36만을 정점으로 급감하여 1920년대 말에는 거의 소멸하였

‘밀주’ 단속 건수 가운데 84.9%가 탁주의 제조 과정에서 검거되었다. 즉 아직 마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적발되었다는 것은 매우 철저한 감시체계가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밀주 단속은 세무서 관리들에 의한 가택수색을 동반했기 때문에 매우 폭력적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마찰도 많이 발생하였다.⁴⁰⁾ 특히 식민권력의 밀주 단속은 빈농층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농민 생활의 일부인 술을 사기 위해 지출되는 현금은 농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⁴¹⁾ 이타가키 류타는 ‘밀주’를 빛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식민 권력과 자본에 대한 저항”이라고 규정하였다. 총독부 재정이나 양조업자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밀주’를 담근 것은 아니기에 조직적이거나 의도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밀주’는 식민 권력과 자본주의가 생활 차원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농민들은 이전에는 주변의 자원으로 간단하게 얻을 수 있었던 물품을 돈을 주고 구입해야만 했다. 즉 농민으로서는 식민 권력에 의해 주조권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한 것이며, 술을 구매하기 위해 간신히 얻었던 화폐를 술과 교환해야만 했다. 즉 그들이 지불해야만 했던 화폐가 지역 자본가의 성장과 총독부 재정을 위해 활용된 것은 농민의 눈에도 명백한 사실로 비춰졌다고 여겨진다.⁴²⁾

Ⅲ. 자본주의 인식의 전환점으로서의 3·1운동

1. 1910년대: 고립된 존재로서의 개인의 강조

1910년대 경제 인식을, 특히 자본주의 발전 전망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 유학생들의 잡지인 『學之光』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특히 노익근⁴³⁾에 주목했는데, 그는 경제 관련 기사를 가장 많이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글에서는 국가 없는 식민지 자본주의가 갖는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노익근은 국가의 부재를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는 문명과 각종 지식이 발달한 20세기에 조선이 여전히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며 기이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고기관으로 주도면밀하게 보호 장려함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은 “금일 품足を 위하여 누가 그렇게 보호하며 장려하여 줄 수 있으리오”라고 하여 경제 발전을 담당할 주체, 즉 국가의 부재라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인들은 “누구를 향하여 고통”을 호소하며 “어디를 향하여” 이 애처롭고 가여운 현실을 구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여 그 대상이 없음을 한탄하였다. 그는 앞으로 조선인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로 첫째 1918년을 기점으로 총독부가 재정자립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둘째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 전후 공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다. 「주세령」 발표 이래로 주세는 계속 늘어나 1934년에는 조선 국세의 28.8%를 주세가 점해 절정을 이루었다(이타가키 류타, 「식민지 조선의 ‘술의 사회사’ 시론 - ‘밀주’ 문제를 중심으로」, 『식민지라는 물음』, 소명출판, 2014, 281~283쪽).

40) 충북 옥천군에서 밀주로 인한 벌금 40원을 납부하지 못한 노인이 형무소에서 수감되자 마을 주민 15명이 모금을 하여 대리로 벌금을 지불하고 석방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1931년도 경북 통계를 보면 벌금 완납자는 60% 정도로 나머지 40%는 모두 신체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경주군에서는 불과 5엔을 지불하지 못해 유치장에 들어간 노인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이타가키 류타, 앞의 논문, 294~296쪽).

41)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한 청년의 경우, 1935년 연간 지출 가운데 술값이 17.5%나 차지하고 있을 정도였다(이타가키 류타, 앞의 논문, 298쪽).

42) 이타가키 류타, 앞의 논문, 301~302쪽.

43) 노익근은 게이오대학에 재학 중으로 학우회 제8기(1917.2~1917.10), 11기(1918.10~1919.2)의 회장을 역임하였다(박찬승, 『한국근대 정치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2, 119쪽).

서 그가 내놓은 해법은 개인의 절약이었다. 사치를 버리고 절약을 통해 잉여를 산출해야 한다는 그의 논리는 사실상 매우 공허한 내용이었다. 이는 국가를 대체할 주체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개인에게서 구하려고 했던 것이다.⁴⁴⁾ 전후 공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정책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은 오로지 개인의 분투밖에 없었던 것이다. 경제 발전의 바탕이 될 자금 축적으로 그가 제시한 것은 조선인 1호당 1주일마다 10전씩 저축하면 1년이면 15,000여 원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자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⁴⁵⁾ 이와 같이 노익근은 경제 문제를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경제 부진의 원인도 조선인이 노동 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며 “조선청년은 노동을 하려하는 결심이 없으므로 미래에도 생산계에 광명의 빛이 없겠다 하노라”고 하면서 모든 문제를 개인의 차원으로 치환하였다.⁴⁶⁾ 즉 그의 글에서는 국가나 정부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로지 조선인들은 자력갱생의 길 밖에 없고 그 방법은 절약을 통한 내핍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익근의 글은 그 자체에 모순이 있었다. 그는 조선이 따라야 할 모델로 독일을 들고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독일은 국가주도 경제성장을 지향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역사학과의 경제 발전 이론은 당시 일본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이 사실을 노익근이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후발자본주의국가로서 독일은 국가가 사회간접시설 투자, 조세 혜택, 제철업·광업·철도 건설 등 주요 산업부문의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국가는 민간은행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하였고 긴급대출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해결해주기도 하였다.⁴⁷⁾ 국가는 외국기술의 중개자로서, 전문인력시장의 조직자로서, 기계의 수입자로서, 자금중개자로서 뿐만 아니라 철도건설과 같은 주요 사업의 투자자로서 공업축진을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였다.⁴⁸⁾

김명구도 지적하였듯이 일본 유학생들은 기업이나 개인의 역할에 대하여는 다양하게 언급하였으나 핵심적인 경제주체로서 국가의 성격이나 역할은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1910년대 위로부터의 상공업의 육성이 요구되었지만, 이미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에서 새로운 이행 동력을 찾아야 했는데, 그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⁴⁹⁾ 일본 유학생들은 국가를 대체할 존재로 사회나 민족을 찾아냈다. 김현주에 따르면 이들의 특징은 ‘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국가’와 ‘개인’을 사고한데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국가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을 확실히 구분하고 후자를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개발의 대상이자 동력으로 상정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사회’는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선택된 공간이었으며 따라서 국가를 계속 열망할 수 밖에 없었다.⁵⁰⁾ 한편 사회적 자유주의⁵¹⁾를 수용한

44) 盧翼根, 「半島 今後の 金融과 生活改新의 急務」, 『學之光』 5, 1915.5.

45) 盧翼根, 「富를 增加함에 對하여」, 『學之光』 10, 1916.9.

46) 盧翼根, 「生産의 義意 及 其 消長의 原動力」, 『學之光』 11, 1917.1.

47) 노익근도 이러한 독일의 금융 산업을 발전 모델로 삼고 있었다. 盧翼根, 「銀行當局者諸公에게 告함」, 『學之光』 15, 1918.3; 盧翼根, 「實業振興에 對한 根本方針」, 『學之光』 17, 1919.1.

48) 이현대, 「19세기 독일 공업화의 초기조건과 결정동인」, 『工業化의 諸類型(Ⅰ)』, 經文社, 1996, 187·198~199쪽.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는데, 국가의 역할을 너무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 독일 산업화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49) 그들은 일제의 권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도 없는 것이며 동시에 일제와 대결적 자제로만 나아갈 수도 없었으며 그러면서도 대중으로부터는 애국심에 기초한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입장이었던 것이었다(金明久, 「韓末 日帝强占期 民族運動論과 民族主義 思想」,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2, 100~101쪽).

50) 유학생들의 의식에서 ‘국가’가 완전히 삭제될 수는 없었으며 ‘사회’는 식민국가의 법적 지배에 저항하거나 그것과 경쟁할 수 있는 자유나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다. 즉 ‘사회’는 국가를 제재할 권력으로는 상상되지 않았다. 식민국가와의 관계에서 사회의 존재 영역과 역량은 매우 모호했던 것이다(김현주, 『사회의 발전- 식민지기 사회에 대한 이론과 상상 그리고 실천 1910~1925』, 소명출판, 2013, 258~259쪽).

51)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의 간섭 배제를 최우선 과제로 한다면, 사회적 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을 통해 분

장덕수를 보면,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핵심이지만 식민지라는 조건 때문에 국가를 직접 서술할 수 없었다고 한다. 사회정책을 시행할 주체가 모호해진 식민지에서 대안으로 삼은 것이 민족이었다. 여기서 민족은 ‘조선인 사회’의 주체로서 제국주의 국가권력과 대비되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며 자유로운 생존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했다.⁵²⁾

이상과 같이 개인의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도모했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각성과 분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노익근은 유학생들이 은행이나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개인 재산을 불리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자가 적지 않다고 비난하면서 “부를 증진하는 근본적 학문을 수양치 아니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분발하시오. 눈 뜨시오. 일어나시오. 개인 재산만 보호하려는 구식의 사상을 버리고” 경제 발전을 위한 “영원장구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⁵³⁾

이러한 경제 발전의 주체로서의 개인은 1910년대 식민 권력이 주조한 인간상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권보드래에 따르면 『매일신보』를 통해서 추천된 개인이란 의식주 자체의 동물성에 안주하는, ‘정치적 인간’ 혹은 ‘욕망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무기력하고 평온한 일상에 만족하는 삶이었다. 즉 ‘생업에 안돈’하는 ‘사적 개인’의 주조가 목표였다는 것이다. 1910년대 『매일신보』에 선전된 성공이란 무척이나 소심했다고 한다. 몇 년동안 꾸준히 짚신을 내다 팔아 50전을 모으고, 여러 해 담뱃값을 아껴 20여 원을 저축하고, 20년 근속의 대가로 수백 원 상여금을 받는, 아둔해 보일 정도로 더디고 소소한 축적이 주목을 받았다. 직업으로는 금융조합 지배인이나 은행 임원이 최고 단계였고, 분수 내에서 근면하게 일하고 검약하게 생활하고, 차근차근 부를 쌓아가는 생애가 최선의 삶이라고 선전하고 있었다.⁵⁴⁾

즉 식민권력은 경제 발전을 장려하는 주체로서의 국가의 역할은 포기하거나 최소화하려고 한 반면,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에 침투하여 조선인의 삶을 철저히 규제해 나갔다. 식민권력은 조선인의 요구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조선인은 그냥 주어진 지시에 따르고 생업에만 충실한 존재로 살아 나가야만 했다. 식민권력은 조선인들로 하여금 개인의 생존만을 목표로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유도했다. 일본 유학생들은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나 이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개인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양자가 모두 ‘개인’을 주체로 내세웠지만 그들이 주조한 개인상은 판연히 달랐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 경제 인식의 내용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 전환은 3·1 운동을 계기로 일어났다.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배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경제 정책을 취해야만 했다. 조선인들의 일부를 통치 체제 내로 포섭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반면 조선인들은 운동 과정에서 파편화된 개인이 아닌 집합적 주체로서 대응하였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운동 이후 큰 전환이 일어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2. 1920년대: 집합적 주체로서의 ‘조선인’ 본위론 제창

3·1운동 직후 경제 분야에서의 조선인의 대응책은 물산장려운동이었다. 운동 내부에는 자본주의 경제 인식과 산업 진흥 방법에 있어 다양한 입장을 가진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우선 생산력

배 정의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2) 최선웅, 「1910년대 조선에서 자유주의의 두 가지 유형과 성격」, 『역사와담론』 75, 2015, 122~124쪽.

53) 盧翼根, 「經濟界를 不振케 하는 三大原因」, 『學之光』 13, 1917.7.

54) 권보드래, 앞의 책, 2008, 47~48·155~156쪽. 1910년대 식민권력이 제공한 공간은 매우 제한되고 협소한 공간이었다. 입신과 출세의 길은 애시 당초 막혀 있었고 기껏해야 보통학교 교사나 관청의 서기 정도였으나 이마저도 매우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었다. 엇그제까지 나라를 위한 위대한 업적을 꿈꾸었던 사람들이 월급 몇십원 자리를 얻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권보드래, 『3월 1일의 밤 -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돌베개, 2019, 201~202쪽).

중대 방안에 대해서는 공장제 기계공업의 대공업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소공업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로 대별되었다. 그런데 소공업 중심 장려론의 경우, 향후 대공업 발전을 염두에 두어서 현실적 조건을 감안하여 소공업 장려를 주장하는 경우와 자작자급을 목적으로 한 소공업 장려로 구분된다. 전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인정한 반면, 후자는 자본주의가 아닌 대안의 생산방식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지식인 및 자본가 층의 참여로 다수의 입장이었던 반면 후자는 소수였다.⁵⁵⁾

한편 조선총독부는 산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1921년 9월 산업조사위원회를 조직했다. 구성원은 관리·실업가·학자 등으로 49명의 위원 중 일본인이 40명을 차지하였다. 조선인들은 이 위원회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산업조사위원회에 한국인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선인산업대회’를 발기하고, 1921년 7월 30일 박영효를 위원장으로 하여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 조선인산업대회측에서 총독부측에 건의하였던 것은 ‘조선인 본위의 산업정책’, 그리고 총독부측의 ‘조선인산업 보호정책’이었다. 유민회나 동아일보 측에서도 ‘조선인 본위의 산업정책’을 세울 것을 주장했는데, 『동아일보』는 한국인의 경제적 발달을 위해서는 한국인을 일본인과의 자유경쟁 상태에 방임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한국인을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⁵⁶⁾ 1920년대 초반 조선인 자본은 총독부측에 정책적 차원에서 조선인 자본을 보호,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일제 지배 하에서 자본주의 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산업 각계에서 분출되고 있었다. 『동아일보』는 일제의 경제정책을 조선인 경제 도태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조선인 본위의 산업정책을 시행하여 조선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조선인 자본가를 중심으로 한 민족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⁵⁷⁾ 당시 일제 경제정책에 대한 조선인 자본가층의 일관된 비판의 핵심은 ‘조선인 본위의 산업정책’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되었다. 조선인 본위의 산업발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제 당국의 보호·장려에 있다고 보고, 일본인 자본보다 재생산구조가 취약한 조선인 산업에 대해서 시장원리에 의거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민족적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일제 당국의 조선인 산업에 대한 ‘차별적’ 보호를 요구했던 것이다.⁵⁸⁾

그러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두고서 조선인의 자급자족을 모색하는 시도도 있었는데, 협동조합운동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인 설태희는 소비조합운동을 전개했는데, 이 운동에 기초해 소비와 생산의 공동 조직과 민족의 자작자급을 모색하였다. 설태희는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됨으로써 이윤 추구의 자본주의 경제 제도를 극복하는 협동 생산을 모색하였다. 즉 협동조합주의가 단순히 조선인 공업에 의한 조선인 산품을 애용하자는 그리하여 조선인 자본의 생산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논리에 머물 수 있었던 ‘토산장려’론을 자본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생산기반의 구축이라는 문제로 한발 더 나아가게끔 했던 것이다.⁵⁹⁾ 이와 같이 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자급자족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체 내부에서 재생산 구조를 이루려고 했던 것은 권력과 자본에 포획되지 않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1운동 이후 조선인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1910년대에는 식민권력이

55) 오미일, 『경제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69~74쪽.

56) 박찬승, 앞의 책, 191~194쪽.

57) 金容燮, 「古阜 金氏家の 地主經營과 資本轉換」, 『韓國近現代農業史研究』, 一潮閣, 1992, 232~248쪽.

58) 오미일, 「제8장 1920년대 초의 산업정책론」, 『한국근대자본가연구』, 한울, 2002 참조.

59) 조형열, 「薛泰熙의 協同組合主義와 ‘文化運動論」, 『한국사연구』 130, 2005, 243~247쪽.

부과한 의무만을 수행해야 하는 수동적 입장이 강요되었다면, 운동 이후에는 조선인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찾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움직임 속에는 참정권 운동으로 대표되는 친일 운동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식민지기에 빈번히 개최되었던 각종 ‘시민대회’, ‘면민·군민·부민대회’에서는 각종 편의시설 설치나 개선 요구 등 마땅히 누려야 되나 그렇지 못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민족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런 전환은 제한적이거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허용됨으로써 조선인들이 자신들을 요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3·1운동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 공간을 주체적으로 개척하고 확장한 것은 전적으로 조선인의 노력 때문이었고, 조선인들은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였다. 일제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제약성을 최대한 강화하려고 했고, 이는 1910년대와는 그 양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통치 권력의 정책 전환을 강제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조선인들 자신도 식민 권력에 대한 저항의 기억으로부터 운동의 동력을 얻고 또 지속해 나갈 수 있었다. 그것이 굳이 국외 민족운동이나 국내 비밀결사 등 적극적인 민족해방운동이 아니더라도 각종 생활이나 직업, 생업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경제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었고,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1910년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식민권력으로서도 조선인을 협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한계는 명백하다. 각종 시민대회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이 관철되는 경우는 사실 매우 드물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인은 이 간극을 파고 들어가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다. 식민지 하에서도 삶은, 일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생존을 도모해야만 했다는 단순히 사실에 입각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3·1운동 이후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역설하고 있었다. 이것을 두고서 단순히 지배 체제를 용인했다는 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민족 차별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의 문제점과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조선인은 조선인을 본위로 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으로서의 조선과 민족으로서의 조선인을 구분하고 ‘조선인’이 조선의 주체임을 선언한 것이다.

맺음말

강점 이후 조선총독부의 통치 정책은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식민지를 안정화시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동원된 방식이 폭력에 기반한 강압이었다. 이러한 폭력을 정당화한 논리는 다름 아닌 ‘민도의 차이’, 즉 조선인의 열등성이었다. 식민권력이 그들의 통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었던 것이 바로 ‘민도’였다. 조선인은 열등하기 때문에 차별적 대우와 수탈을 받는 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조선인의 문제로, 즉 ‘민도의 차이’로 합리화했다. 이러한 논리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과 저항이 3·1운동이었다.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조선 땅에 살고 있으면서 참고 견뎌야만 했던 수모와 고통, 조선인은 멸시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라는 모멸감을 깨트리기 위한 외침이었다.

1910년대 일제의 사회경제 정책은 조선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던 방향을 거스르는 것이었다. 종래 공동체에 기반한 삶은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식민지화 이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 지표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근대, 문명, 자본, 합리성의 이름으로 조선인에게 가해진 폭력과 이로 인한 기존 공동체적 삶의 해체라는 관점에서 접

근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강제된 각종 규율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을 동원함으로써 조선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어 권력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였다. 종래 공동체나 관습에 따르면 전혀 처벌받지 않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력 주체가 변함에 따라 일방적으로 부과되고 지켜야만 하는 규율들에 대해 조선인들의 이의제기나 의견 제시도 허용되지 않았다.

1910년대 식민권력이 주조하고자 한 조선인은 정치적, 인간적 욕망을 거세당한 채 권력의 요구에 순응해야만 하는 개인이었다. 이는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주체적인 개인이 아니라 기존 공동체에서 탈각된, 사회로부터 고립된, 통치 권력의 직접 지배하에 순응하는 존재로서의 개인이었다. 식민권력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철저히 부정당한 조선인은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고 싶었고,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그 수많은 조선인들이 운동에 참여한 직접적인 계기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운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획득하기 위한 주장에 다름 아니었다. 3.1운동 이후 조선인은 정치적 측면에서도 또한 일상적 측면에서도 집합적 주체로서의 목소리를 냈다. 1920년대 무수히 결성된 결사의 존재는 일제에 의해 강제된 무력화된 개인이 아니라 권리를 옹호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한 각종 시민대회의 분출은 그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집단적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공동의 목소리였다.

본 발표문에서 기존 관습이나 공동체, 일상생활 등을 자주 거론한 이유는 ‘근대’, ‘성장’, ‘문명’의 이름으로 파괴되어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였다. 이러한 폭력적 과정을 겪고서도 어쨌든 인간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나간다. 폐허 속에서도 희망 속에서도 환멸 속에서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은 일순간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에서 겪었던 피해와 고통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 시간을 감당해야 했던 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역사학의 임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였다.

제 6 발표 토론문

조명근, 「식민지 자본주의의 전개와 3·1운동」

조 형 열 (연세대)

조명근 선생님의 발표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20세기 초 세계사의 굴절과 3·1운동’이라는 전체 주제의 의미를 한국사 영역에서 살리기 위해, 보편으로서 세계 자본주의에 대한 특수 형태인 ‘식민지 자본주의’의 진화확장 가운데 3·1운동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기초발제를 제외한 6편의 발표 가운데 유일한 한국사 분야 논문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례들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발표자 스스로도 많이 고민했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발표가 머리말에서 밝힌 것처럼 그동안 좀처럼 눈에 띄지 않던 3·1운동에 대한 경제사적 접근이라는 점입니다. 1989년 70주년 기념 학술회의 이후 3·1운동의 경제적 배경을 취급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기가 토대-상부구조 등 역사유물론적 이해가 유행하던 때였기 때문일 텐데, 오히려 최근에는 경제사 연구가 지나치게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던 차에 그동안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1910년대 경제사회적 토대를 재구성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3·1운동을 접근한 의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몇 가지 어색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토론이 다 그렇듯 의의를 높이 사는 만큼 한계를 나열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게 토론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세 가지 점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고 간단히 제 소감을 적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국 질서 신구축에 따른 변화와 제국일본 정책의 상관관계 이해 필요성

발표자가 1910년대를 바라보는 관점은 식민권력에 의해 조선의 경제사회 현실이 좌우되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1장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일본 자본주의의 순환 체계 내에 편입’되었다는 것으로 대표될 수 있으며, 이는 본국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 조선이 걸어진 공동체적·자치적 길이 좌절되는 한편 효율성을 위한 정책적 획일화가 요구되고, 조선은 언제든지 본국과의 관계에서 포기될 수 있는 존재였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석에 거의 동의합니다.

그러나 특히 이 학술회의가 ‘세계사의 굴절’을 다루고 있는 만큼 일본의 정책은 일국적 입장보다 제국적 행동으로 확장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제1차 세계대전일 것이고, 발표자께서도 물론 이런 관점을 유지하는 대목이 미가 폭등에 대한 설명에서 일부 확인되기도 합니다만, 전후 경제변동의 여파가 어떻게 조선 경제정책에 이르게 되는지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의문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3·1운동의 발발 배경과도 연결되는데, 발표자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전체적 주장은 일제의 강제적 경제운용에 의한 저항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권보드래 교수의 최근 저작에서 조선의 농민들이 베르사유 체제와 긴밀히 얽혀있는 상황이 상세히 묘사되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3·1운동의 출발점은 국제정세의 변동을 활용한 외교독립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사적 설명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3·1운동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구조 변동의 영향을 받은 피식민지 일반에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각 제국주의 국가들이 벌인 식민지 억압의 정도 차이(즉 제국적 행동의 차이)에 따라 나타난 개별적인 것인지 이해하는 단초가 이 문제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동체의 해체 상황과 개인-집합 주체로 변동 이해의 적절성

발표자는 식민지 자본주의의 도입으로 인한 중요한 변화가 전통적 관습과 공동체 해체 현상, 일상에 대한 지배 등이라고 설명하면서, 3·1운동이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식민지 자본주의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1910년대에는 경제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개인을, 3·1운동 이후에는 집합적 주체를 불러오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과 같은 것이 후자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었습니다. 경제사적 분석으로부터 일종의 경제운동·경제사상사적 전환이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계속해서 증명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뒤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점만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연 사회나 민족의 발전이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인가? 오히려 조선인들에게는 공동체적 생활 등으로 인해 근대전환기 이후에도 개인에 대한 관념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집합적 주체에 대한 사고가 강했던 것이 아닐까? 2) 1910년대 식민지 지배당국이 생활에 안착된 개인을 주조하려고 한 것에 비해 노익근과 같은 유학생은 개인의 자각을 통해 경제현실을 돌파하려고 했다고 보았는데, 이와 같은 일종의 ‘개인책임론’이 1910년대의 시대적 특징일까? 오히려 서양 근대 경제사상의 한 조류를 반영하고 있는 일반적 주장은 아닌가? 3) 협동조합 등 새로운 움직임을 3·1운동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전통적 삶의 체계에 대한 회구가 한 측면(조선 契와 鄉約의 부활)을 구성하고, 또한 러시아혁명 이후 집산화의 경향에 대한 대응전략의 성격이 짙게 깔린 것은 아닐까?

이 문제들에 대해 솔직히 저는 충분히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발표자에게도 부담을 드리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는 3·1운동이 식민지 자본주의 아래 살아가는 조선인의 일상 가운데 무엇을 바꾸었는지 그 점을 포착해서 풀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발표자는 3·1운동이라는 집합적 경험이 자본적 지배에 대한 경계의식과 조선인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개연성 있는 설명이지만, 집합의식의 성장과정도 민족이라는 상상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등의 ‘메가 이벤트’와 연관성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발표문에서 사례로 들고 있는 조선 지식인의 경제사상은 사상이라는 게 그렇듯이 다른 어떤 요소보다 복합적 계기로부터 영향을 막으므로 세밀한 주의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범박하게 다시 정리해서 질문한다면, 발표자가 생각하는 3·1운동의 영향/변화는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문화정치의 성격-조선인 주체성과 일제 통치의 효율성 사이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둘째와도 연결됩니다. 발표자는 3·1운동 이후 문화정치라는 열린 공간의 의미를 “식민권력으로서도 조선인을 협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우리 역사를 주체적으로 본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저 역시도 늘 이와 같이 씁니다만, 문화정치의 열린 공간은 일제 지배 아래 조선인의 불만, 저항이 무르익기도 전에

공개되는,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의 시기로 진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문화정치는 통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성공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1운동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문화정치 안에 ‘다시’ 갇혀버리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3·1운동과 문화정치 공간을 어떠한 상관관계 가운데 사고하시는지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접근을 필요로 하는 글에 대해서 토론하다보니, 저도 충분히 숙고한 의견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3·1운동 100주년에 출간된 여러 훌륭한 저작과 학술회의, 그리고 조명근 선생님의 발표를 읽으며 들었던 소감을 간략히 적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조명근 선생님도 서두에서도면회 교수의 글을 인용해서 여러 층위의 원인이 복합·내재할 수 밖에 없는 게 3·1운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 두 진영으로의 세계의 분열, 일제 통치정책의 변화 등등이 3·1운동의 앞과 뒤에 복잡하게 배치됩니다. 자의식의 과잉 상황에서는 이 모든 변화의 추동력이 3·1운동에 맞춰졌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이 문제들은 정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층위들을 연동시킬 것인가, 즉 일본제국의 권역을 중요하게 볼 것인가, 아니면 이념 분열을 더 크게 볼 것인가, 지식인의 동향과 민중세계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등등 아직도 고민해봐야 할 과제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8월 8일에 있었던 한 학술대회에서 베이징대학 중문학과 첸핑위원(陳平原) 교수가 5·4운동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하던 중에, 3·1운동의 긍정적 측면 외에 부정성에 대해서 탐구해본 적이 있는냐는 반문을 했던 게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5·4운동 100년의 역사성을 계속해서 고민해온 학자로서 할 수 있었던 질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제 나름대로 오늘 주제에 맞춰 생각해보면, 3·1운동이 바꾼 것도 중요하지만 바꾸지 못한 것을 연구하는 것도 앞으로의 숙제일 수 있겠습니다. 식민지 자본주의도 그 영역이 아닐까, 오히려 조선인들도 점차 그것을 내면화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쓸쓸한 문제의식 같은 것 말입니다. 두서없는 토론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역사학회 학술대회

20세기 초 세계사의 굴절과 3·1운동

사단 법인 歷 史 學 會

(03169)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96 파크뷰타워 504호
02) 739-0036

historykor@naver.com / editorkha@gmail.com (편집실)

www.kha.re.kr / <https://kha.jams.or.kr/co/main/jmMain.kci>

edited by. 김화니